第4代 高敞郡議會

議 政 白 書

(2002. 7. 1 ~ 2006. 6. 30)

高 敞 郡 議 會

高敞郡議會 議員 倫理綱領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의 뜻을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주민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양심적이고 봉사적인 의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공사활동에 신뢰를 받는다.
1.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부단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회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대변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 공선사후 일념으로 공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소신있는 의원상을 실현한다.

2002년 7월 11일



발간사

지방자치 발전의 동량이 되기를

고창군의회의장 **장 세 영**

21세기 지방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된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앞당겨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제4대 고창군의회의 활동상을 담은 제4대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어느때 보다 뜻깊고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날 지방자치의 경험이 생소하고 그 역사 또한 일천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선배 · 동료 의원여러분께 지면으로 나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의사결정에는 군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늘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하에 중앙정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지방의회 역할 또한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우리 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가장 모범적이며 가장 튼튼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우리의회가 군민을 위해 흘린 땀과 열정을 가감없이 실은 제4대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지난 4대 의회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그 어떠한 자료보다도 사실적이며 소중한 사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군민이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자료수집등 백서 발간을 위해 애를 써주신 의회 사무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 백서가 후대의 지침서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한 획을 긋는 역사서로서 오래도록 보존되고 많은 이로부터 읽혀지고 회자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간 사

의정활동의 소중한 역사서가 되기를

고창군수 **이 강 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고창군의회 의정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창군은 복분자 특구와 경관농업 특구로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05년말 우리군에 내린 사상초유의 폭설로 군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민생 현장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는 고창복분자 공동브랜드 개발, 방문관광객 연500만명 돌파, 골프클러스터 유치확정, 행정실적 104개 분야 시상금 39억원 수상, 예산규모 3천억 돌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군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백서가 단순한 의정자료라기보다 지나온 발자취로서 모든 의정활동을 담은 소중한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4대 고창군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고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7월 일



축간사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기를

국회의원 **김 춘 진** (고창 · 부안)

자유, 평등과 정의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이념을 구현하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1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4대 의회에 걸친 의정 활동은 값진 결실과 많은 성과를 배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과 과도기를 거쳐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정활동상과 정보를 알리고자 의정백서의 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의회"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 상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 기대하지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창의 주인은 군민 여러분이기에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조정으로 그 발전은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환경의 변화는 농업분야도 하이퍼농업(hyper-agriculture)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부의 미래」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은 생존과 발전에는 유리하나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농업과 같은 산업분야는 곧바로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단순히 지방자치 기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에 유기적인 노력이 있다면 농업 구조도 변화시켜 경쟁력 있는 체질로 개선 할 수 있고, 지역 발전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4대 고창군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2002. 7. 1~2004. 6. 30)



의 장 **성 호 익**



부의장 **김 상 필**



운영위원장 **심 재 규**



자치행정위원장 **최 인 규**



산업건설위원장 **전 춘 식**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2004. 7. 1~2006. 6. 30)



의 장 **최 석 기**



부의장 **최 인 규**



운영위원장 **김 남 규**



자치행정위원장 **전 춘 식**



산업건설위원장 **박 병 옥**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 프로필



金 相 弼
(1942. 3. 16)

선거구	고 창 읍
주 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
경 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새고창 로타리클럽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장 역임 – 고창고등학교육성회장 역임 – 고창여자고등학교육성회장 역임 – 고창군 임오회 회장 역임 – 고창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역임 – 고창군 구시포 종합개발위원회 위원장 역임 – 민주당 고창. 부안지구당 부위원장 역임 – 제 2대 고창군의회 의원 역임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5. 5. 26



丁 鍾 熅
(1960. 3. 25)

선거구	고 수 면
주 소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119
경 력	– 고창고등학교졸업 – 고창군 농민회 사무국장 역임 – 고수농업협동조합 이사 – 고창경찰서 행정자문위원 – 고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고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고창군 재향군인회 감사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위원 – (현) 전주지방법원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 위원 – 제13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成 鎬 益
(1955. 4. 3)

선거구	아 산 면
주 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건양A 나동 101호
경 력	– 고창중 고등학교졸업 – 전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창경찰서 선진질서위원회 위원장 역임 – 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 고창중 . 고 25 / 36 협의회 회장 – 고창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초대, 2대, 3대 고창군의회 의원, 3대 전반기 부의장 역임 – 민주당 고창 / 부안지구당 정책실장 – 재향군인회 고창군 부회장 역임 – (현)자유총연맹 고창군지회장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재임기간	1998. 7. 1 ~ 2006. 3. 27



金 南 奎
(1952. 5. 7)

선거구	무 장 면
주 소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59-2
경 력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 무장 애향회 초대, 2대 회장 – 무장의용소방대장 역임 – 영선 중 고등학교 육성회장 – 고창군 체육회 이사 – (현)영선 중 고 유도부 후원회장 – (현)무장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현)새천년민주당 고창 · 부안 지구당 자문위원 – 제4대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제1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崔 錫 基
(1947. 3. 10)

선거구	공 음 면
주 소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558-6 번지
경 력	– 법성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창군 공음면 의용소방대장 – 공음중학교 육성회장 – 공음농협 감사(3대) – 고창경찰서 지도위원 역임 – 전주법원 정읍지원 조정위원 – 새천년민주당 고창 · 부안지구당 원내총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8,9,10,11기 회장 역임 – 초대, 2대, 3대 고창군의회 의원. 2대 후반기 의장 – 고창군의회 초대, 2대 내무위원장 – 고창군의회 예결위원장(13회 역임) –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全 春 植
(1952. 11. 2)

선거구	상 하 면
주 소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985-7 번지
경 력	– 전북대학교 2년수료 – 전북대경영대학원 수료 –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상하면 새마을지도자 – 상하면 청년회장 – 상하면 농어민후계자 회장 – (현)영광군성산리 쓰레기처리장 설치반대 투쟁위원장 – (현)고창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 –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제3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 제1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朴 炫 圭
(1958. 8. 13)

선거구	해 리 면
주 소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532번지
경 력	– 고창JC 상임부회장 역임 – 제2대 해리면청년회장 – 제1,2대 해리면체육회장 – 해리중학교 제1,2기 운영위원장 – (현)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 회장 – (현)해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고창군 체육회 이사 – (현)고창군 장애인 후원회 이사 – (현)아모스요엘원(무장 소청원 고아원)감사 – 해리면 지역개발 번영회 전무이사 – (현)동호 대하양어장 대표 – 제8회, 제9회, 제10회 수산물축제위원장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 제111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沈 載 圭
(1944.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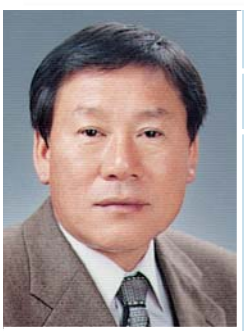
선거구	성 송 면
주 소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산27 번지
경 력	– 평화민주당 성송면 면책 – 성송 학천초등학교 협의회장 – 성송 학천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고창남중학교 육성회장 – 성송농협 이사 – (현)전주지방법원 범죄예방 고창지구협의회 위원 – (현)성송면 구황산 농악회 회장 – (현)성송초등학교 지역위원 – (현)고창군 재향군인회 회장 –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제3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116회정례회, 제129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3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鄭 元 煥
(1957. 1. 23)

선거구	대 산 면
주 소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51번지
경 력	– 고창중학교, 광주고등학교 졸업 – 대산면 연청 부회장 – 전라북도 선도양축농가 선정 – (현)고창군 양돈협회 부회장 – (현)고창군 대산면 정유회 회장 – (현)대산양돈(유)대표이사 – (현)고창국화축제 제전위원회 회장 – (현)미당시문학관 이사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朴 秉 鈺
(1946. 5. 19)

선거구	심 원 면
주 소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744-2
경 력	–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28년 7개월 근무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심원농업인 상담소장 – 농촌진흥원장상, 농촌진흥청장상, 국무총리상 수상 – 제20회 고창군민의장 산업장 수상(2004년 복분자개발) – (현) 심원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장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崔 仁 圭
(1953. 5. 23)

선거구	흥 덕 면
주 소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38-7 번지
경 력	–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흥덕면청년회 자문위원 – 흥덕중학교 운영위원장 – 고창북고등학교 육성회 감사 – (현)새천년 민주당 자문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위원 – 3대 고창군의회 의원. 3대후반기 운영위원장 –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재임기간	1998. 7. 1 ~ 2006. 6. 30



李 載 丁
(1957. 12. 3)

선거구	성 내 면
주 소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205-7
경 력	– 고창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역임 – 성내면 면민의날 초대위원장(체육회장) 역임 – (현) 고창군 수산경영인연합회 고문 – (현) 고창군 수산조정위원 – (현) 고창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 (현) 한국해양수산부 신지식인 중앙연합회장 – (현)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유통가공분과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 기획운영위원장 –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저서 “내수면양식 기술과 경영”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고창군민의장 산업장 수상(1997년) – 대한민국 산업포장수상(2001년)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李 貴 燮
(1956. 1. 26)

선거구	신 림 면
주 소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416번지
경 력	– 신림중학교 지역위원 역임 – 신림면 농업경영인 회장 역임 – 고창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역임 – 고창군 농업경영인연합회 감사 역임 – 신림면 농촌지도자 회장 역임 – 신림 농협이사 역임 – 신림면 체육회 부회장 역임 – 새천년민주당 신림면 협의회장 역임 – 새천년민주당 농어촌 특별위원 – (현) 부패방지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위원 – 제1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朴 永 求
(1952. 3. 16)

선거구	부 안 면
주 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76-2
경 력	– 정읍고등학교 졸업 – 부안단위농협 입사 – 농협 과장 승진 – 농민봉사상 수상 – 농협중앙회 공로상 수상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 제133회임시회, 제134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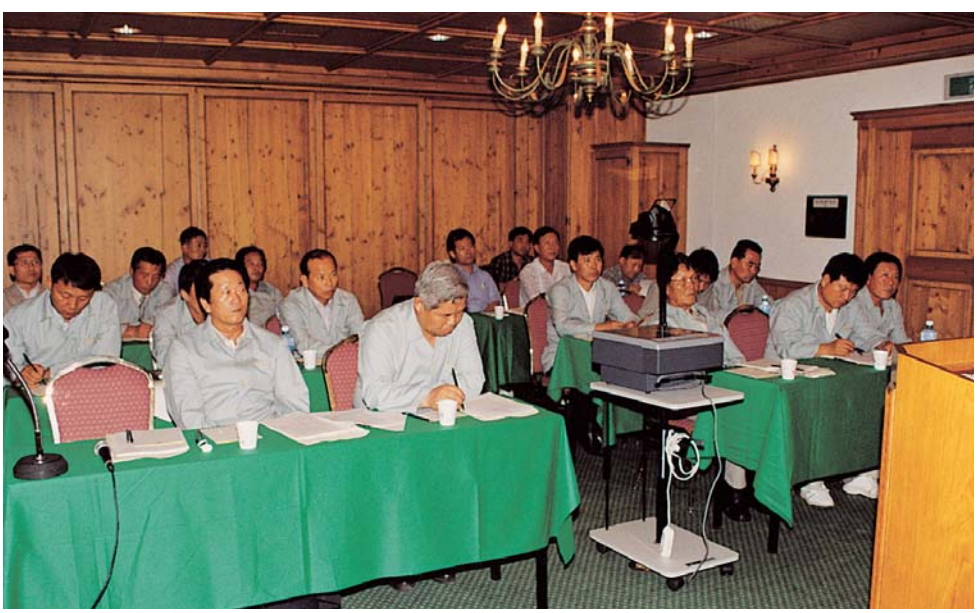
제4대 고창군의회 개원(2002.7.11)



제4대 고창군의회 개원(2002.7.11)



제106회 임시회



의원연수(2002. 8. 27)



제109회 정례회 태풍 “루사” 피해현장 방문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제85차 전라북도 시 ·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2002.9.26)



의원간담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의원해외연수(일본, 2002. 11. 21~26)



제111회 정례회



제1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산시의회 고창방문



제116회 정례회



제121회 임시회(2004.2.27)



제122회 임시회 현장방문



제122회 임시회 현장방문



제122회 임시회 현장방문



제122회 임시회 현장방문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2004.5.21)

제1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땅으로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1793에 간행된 高敞邑誌에는 牟伊部曲이라고 기록)에 속했으며 삼국(三國)시대에는 백제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 : 지금의 고창 고수 안산), 송미지현(松彌知縣 : 지금의 성송 대산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로현(上老縣 : 상하 해리 심원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칠현(上漆縣 : 지금의 흥덕 신림 성내 부안 일부)의 4개현에 속하던 지역으로 757년(경덕왕 16년)에 모량부리현을 고창현(高敞縣), 송미지현을 무송현(茂松縣), 상노현을 장사현(長沙縣), 상칠현을 상질현(尙質縣)으로 개칭하였으며 보릿고을을 상징하는 모양부리의 속명(俗名) 모양(牟陽)이 고창과 함께 불리어 왔다.

행정의 체제는 고창 무송 장사의 3개현은 무령군(武靈郡 : 지금의 靈光郡)의 영현(嶺縣)이 되었고 상칠현은 고부군(古阜郡)의 속현으로 떨어져 있었다.

(註) :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 唐에 의해 688년 (新羅 文武王 8년)에 설치된 安東都護府 시절에 高敞縣은 無割縣, 上老縣은 佐魯縣으로 불렀었다.(참고문헌:三國史記)

고창현은 고려시대 초기에는 고부군에 속했거나 갈려서 상질현의 감무(監務)가 상칠과 겸하여 다시리게 되었고, 장사현은 영광군에 속하였고, 무송현도 초기에는 영광군에 속하였고, 후에 장사 감무가 무송을 겸해서 다스렸다. 상질현은 고부군에 속했다가 그 명칭을 장덕(章德) 또는 창덕(昌德)으로 고쳐 감무를 두었고 고창을 겸임하였다. 1308년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자 왕명(王名)을 피해 장덕을 다시 흥덕(興德)으로 고쳤다.

조선(朝鮮)시대에 들어서는 고창현은 1401년(太宗 1년)에 감무를 두게 되어 흥덕의 겸임에서 풀려났으며 1455년 (世祖 1년) 지방 방위 조직의 개편에 따라 나주진관(羅州鎭管)의 속읍(屬邑)이 되어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고 속오군(束伍軍)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후기에는 방리(坊里)가 8個面 (川北,川南,古沙,水谷,五東,五西,大雅,山內)에 1982가구(1759년)가 되었다. 1895년(高宗 32년) 5월 26일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勅令(98號)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06년 (光武 10년)에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 무송과 장사현은 1417년(太宗 17년)에 두 고을을 합병하여 무장현(茂長縣)으로 고치고 진(鎭)을 두어 병마사(兵馬使)가 고을 일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1423년(世宗 5년)에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었다가 1482년(成宗 14년)에 현감으로 고쳤고 1455년에 나주진관의 속읍이 되었다. 후기에는 방리가 16면(面: 一東, 二東, 白石, 托谷, 瓦孔, 冬音峙, 大梯, 大寺, 蔣子山,星洞, 元松, 靑海, 心元, 上龍伏, 下龍伏), 6817가구(1759년도)가 되었다.

1836년(憲宗 2년)에 승격하여 군(郡)이 되었고 1895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에 의해 전주부(全州府)에 소속되었다가 1896년 다시 전라남도에 편입되어 2등군으로서 군세가 막강하였으며 1906년에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 흥덕현은 1392년(太祖 1년)에 겸임하던 고창과 갈라서게 되었고 1455년에 전주진관의 속읍이 되었으나 속오군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다. 후기에는 방리가 8면(縣內, 北, 一東, 二東, 一南, 二南, 一西, 二西), 2762호(戶 : 1759년도)가 되었다. 1895년에 군으로 승격하였고 1906년에 고부군(古阜郡)의 부외(富外) 부내(富內) 두면을 병합하여 부안면(富安面)으로 개칭하였다.

일제(日帝)시대에는 1914년 3월 1일 부군(府郡) 폐합령에 따라 무장군과 흥덕군을 병합하였고 비능률적인 행적단위를 통 · 폐합하여 천북 · 천남면과 오동 · 산내, 고사면의 일부를 합하여 고창면(高敞面)으로, 고사 · 수곡면을 합하여 고수면(古水面)으로, 오동 · 오서면을 합하여 오산면(五山面)으로, 대아 · 산내면을 합하여 아산면(雅山面)으로, 일동 · 이동면을 합하여 무장면(茂長面)으로, 와공 · 동음치를 합하여 공음면(孔音面)으로, 대사 · 장자산면과 대제면의 일부를 합하여 대산면(大山面), 성동 · 원송면과 대제면 일부를 합쳐 성송면(星松面)으로, 청해 · 오리동면을 합하여 해리면(海里面)으로, 심원은 심원면(心元面) 그대로, 상용복 · 하용복을 합하여 상하면(上下面)으로, 그리고 흥덕고을은 현내 · 북면을 합하여 흥덕면(興德面)으로, 일동 · 이동면을 합하여 성내면(星內面)으로, 일남 · 이남면을 합하여 신림면(新林面)으로, 일서 · 이서면을 합하여 벽사면(碧沙面)으로, 그리고 부안면을 합하여 17개면으로 줄었다.

건국후에는 1955년 7월 1일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3개면이 되고 1968년 4월 23일 180개 이동(里洞)으로 개정되었다가 1971년에 다시 489개 분리동을 나뉘었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림면 제하리(堤下里)가 흥덕면에 편입되었으며, 1987~1988 兩年에 성송면 상금리가 대산면으로, 신림

면 송암리가 흥덕면으로, 성내면 일부가 정읍군 입안, 소성면으로 각각 편입되었고, 해리 · 상하 · 무장면 등 3개면의 분리가 조정되는 등 2002년 현재 고창군의 행정조직은 1읍 13면 189개의 법정리, 541개의 행정리에 911개의 자연부락과 1,303개의 반조직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61년 10월 1일 당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읍면의 지방자치는 폐지되었고 1991년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역여건

본 군 동남은 노령산맥이 중첩하여 관내 방등산(742.8m), 방장산(640m), 문수산(620.5m), 고산(526m) 등의 높은 산세를 보이며 해발 500m이상의 준봉이 연하였고, 고찰로 유명한 조계종 24교구의 본산인 선운사가 있으며, 그 외 고수면의 문수사, 부안면의 소요사,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크고 작은 암자들이 산재해 있다.

선운사 옆을 흐르는 주진천의 본류는 모든 산맥에서 발원하여 본 군의 중앙을 관류하여 서해에 유입하는 관계로 지세는 자연히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가 낮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하천 유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지로서 천연부유의 양질의 땅이며 해안선은 전북 부안군계에서 본 군 5개면(흥덕, 부안, 심원, 해리, 상하)과 접하고 있으며, 그 연장이 73.7㎞로서 5개소의 포구(후포, 사포, 상포, 동호, 구시포)마을이 있고 굴곡이 많으며 해상은 무진장한 해산물이 있어 수산 발전이 크게 기대되며 해안일대는 남한 유일의 대규모로 뻗쳐있는 군소 염전들이 산재하고 있어 국내 천일염 생산의 주산지였으나 현재는 천일염이 사양길에 있어 폐염전을 농경지화하고 있음.

본 군 지형상의 표고는 40m이며 그 중 평야가 전체면적의 52.6%인 318.972㎢이며, 임야가 44.8%인 272.171㎢이고, 기타가 2.6%인 15.730㎢로서 총 606.873㎢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이다.

3. 지역특성

미곡위주의 전통적 농촌으로 미곡을 연간 52만여석 이상과 맥류 4만여석을 생산하며 또한 전국 최대의 야산이 개발되어 과수원예와 특수작물(수박,무,땅콩 등) 재배지로 발전하고 있고 이후에도 UR 대체작물 개발 잠재력이 큰 고장임,

○ 관광자원으로는 2000.11.29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국민관광휴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내의 선운사 사찰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재의 보존군임. 여름 한철의 휴식처로서의 구시포 및 동호해수욕장이 서해의 휴양 명승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지역개발 면으로 서해연안의 간척, 양식어업의 적지이며, 대단위 야산개발로 당도높은 수박, 양질의 땅콩, 무 등의 생산이 전국제일의 주산단지임을 자부하는 고장임.
○ 조선조 단종원년(1453년)에 축성된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원형이 보존된 전국유일의 자연석 성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관광객의 계속 증가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탐방 교육장과 안보교육의 장이기도 함.
○ 한편, 인물의 고장으로 金性洙(전 부통령), 白寬洙(독립운동가), 申在孝(판소리 창시자), 陳懿鍾(전 국무총리), 金相浹(전 국무총리), 金素姬(국악인:인간문화재)등의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함.

4. 고창의 위치

본 군은 전라북도의 서남단의 위치한 군으로서 위도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극동(極東) : 신림면 가평리 동경 126°46′
○ 극서(極西) : 상하면 자룡리 동경 126°25′
○ 극남(極南) : 대산면 지석리 북위 35°18′
○ 극북(極北) : 부안면 봉암리 죽도 북위 35°34′에 달하며 그 연장이 동서 31.0㎞이고 남북이 31.5㎞인데다 군 전체면적은 606.873㎢(도 전체면적의 7.5%)이며, 동북은 본군과 인접된 정읍시 소성면과 입암면, 부안군 줄포면이 위치하였고 동남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삼계면과 영광군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대마면과 인접하고 있다. 서북부 일대는 73.7㎞에 달하는 서해안에 연장을 이루고 있다.

본 군에서는 주요지역간의 거리를 보면 전주가 고속도로편으로 69㎞인데 정읍시(28㎞)를 거쳐서 가야 되며, 광주 48㎞거리에 장성(24㎞)을 경유해야 하고 영광까지는 30㎞의 거리를 두고 있다. 본 군 관내 구시포해수욕장이 39㎞, 동호해수욕장이 29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부안군이 4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국립공원 및 정읍시의 내장산 국립공원과 본 군의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읍성, 석정온천, 구시포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등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위치에 있다.

5. 행정구역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면적 (km²)	구성비 (%)	읍	면	리 동		반	자연부락
					법정	행정		
2000	606.894	100	1	13	189	539	1,293	911
2001	606.874	100	1	13	189	541	1,293	911
2002	606.854	100	1	13	189	555	1,344	911
2003	606.822	100	1	13	189	555	1,344	911
2004	606.822	100	1	13	189	557	1,345	911
2005	606.833	100	1	13	189	557	1,345	911
2006	606.833	100	1	13	189	557	1,345	911
고창읍	42.505	7.0	1	-	18	85	224	81
고수면	45.578	7.5	-	1	14	36	79	59
아산면	74.741	12.3	-	1	16	33	85	67
무장면	43.777	7.2	-	1	16	39	95	79
공음면	50.048	8.3	-	1	12	45	88	82
상하면	32.955	5.4	-	1	9	36	90	58
해리면	39.496	6.5	-	1	12	46	102	76
성송면	36.250	6.0	-	1	11	34	66	56
대산면	43.842	7.2	-	1	15	43	113	69
심원면	39.232	6.5	-	1	10	26	71	43
흥덕면	33.361	5.5	-	1	16	41	95	72
성내면	30.855	5.1	-	1	13	30	81	64
신림면	40.898	6.7	-	1	13	26	70	50
부안면	53.295	8.8	-	1	14	37	86	55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구분 / 연도및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세대당 인구
2001	26,708	74,413	36,386	38,027	2.8
2002	26,361	69,816	34,287	35,529	2.6
2003	26,277	69,878	34,082	35,796	2.7
2004	26,016	65,449	32,190	33,259	2.5
2005	26,258	63,676	31,362	32.314	2.4
2006	26,199	62,030	30,488	31,542	2.4
고창읍	6,910	20,340	10,018	10,322	
고수면	1,268	3,180	1,566	1,614	
아산면	1,546	3,562	1,809	1,753	
무장면	1,682	3,984	1,989	1,995	
공음면	1,485	3,471	1,741	1,730	
상하면	1,360	3,145	1,484	1,661	
해리면	1,680	3,926	1,871	2,055	
성송면	1,093	2,459	1,214	1,245	
대산면	2,073	4,942	2,495	2,447	
심원면	1,353	3,452	1,697	1,755	
흥덕면	1,716	4,418	2,004	2,144	
성내면	1,144	2,618	1,289	1,329	
신림면	1,191	2,845	1,392	1,453	
부안면	1,515	3,377	1,621	1,756	

7.재정규모

2006년도 고창군의 예산규모는 총 251,787,08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36,445,451천원으로 93.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15,341,630천원으로 6.1%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 지방세 9,582,328천원, 세외수입 31,000,984천원, 지방교부세 115,356,019천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0,000천원, 보조금 93,847,75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37,868,292천원 경상적경비 26,431,234천원, 사업예산 173,595,820천원, 채무상환 0원, 예비비 및 기타 13,891,735천원으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세출 예산내력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251,787,081	236,445,451	15,341,630
세입	지 방 세		9,582,328	9,582,328	
	세 외 수 입		31,000,984	15,765,354	15,235,630
		경상적세외수입	7,270,321	4,363,334	2,906,987
		임시적세외수입	23,730,663	11,402,020	12,328,643
	지 방 교 부 세		115,356,019	115,356,01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0,000	2,000,000	
	보 조 금		93,847,750	93,741,750	106,000
		국고보조금등	78,796,260	78,796,260	
		시 · 도비보조금등	15,051,490	14,945,490	106,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출	경 상 예 산		64,299,526	59,782,433	4,517,093
		인 건 비	37,868,292	36,436,057	1,432,235
		경상적경비	26,431,234	23,346,376	3,084,858
	사 업 예 산		173,595,820	162,794,052	10,801,768
		보조사업	123,530,250	123,456,150	74,100
		자체사업	50,065,570	39,337,902	10,727,66
	채 무 상 환				
		지방채 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예비비등		13,891,735	13,868,966	22,769
		예비비	3,525,956	3,525,956	
		기 타	10,365,779	10,343,010	22,769

8. 역대 고창군수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嚴 柱 完	1945. 3 ~ 1947. 4 (25개월)
2	許 洪 錫	1947. 4 ~ 1948. 3 (11개월)
3	安 晋 吉	1948. 3 ~ 1948.12 (9개월)
4	吳 毅 均	1948.12 ~ 1950. 2 (14개월)
5	柳 煥 朝	1950. 2 ~ 1950. 5 (3개월)
6	嚴 秉 鮮	1950. 5 ~ 1950.12 (7개월)
7	白 南 祺	1950.12 ~ 1952. 4 (16개월)
8	高 在 烈	1952. 4 ~ 1953.12 (20개월)
9	金 倫 柏	1953.12 ~ 1956.12 (36개월)
10	金 仁 德	1956.12 ~ 1959. 1 (25개월)
11	金 永 信	1959. 1 ~ 1959. 8 (7개월)
12	任 栽 桓	1959. 8 ~ 1960. 1 (5개월)
13	金 寬 默	1960. 1 ~ 1960. 5 (4개월)
14	梁 昌 鉉	1960. 5 ~ 1960.10 (5개월)
15	柳 南 起	1960.11 ~ 1961. 6 (7개월)
16	柳 龍 圭	1961. 7 ~ 1961.12 (5개월)
17	李 廷 相	1961.12 ~ 1962.11 (11개월)
18	申 祥 雨	1962.11 ~ 1965. 3 (28개월)
19	柳 凡 秀	1965. 3 ~ 1966.12 (21개월)
20	崔 完 相	1967. 1 ~ 1967.11 (10개월)
21	崔 琫 彩	1967. 1 ~ 1970. 3 (38개월)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22	李 吉 衍	1970. 3 ~ 1971. 8 (17개월)
23	李 錫 在	1971. 8 ~ 1973. 6 (22개월)
24	權 承 周	1973. 6 ~ 1974.12 (18개월)
25	金 準 洙	1974.12 ~ 1975. 6 (6개월)
26	曺 相 勳	1975. 6 ~ 1977. 2 (20개월)
27	金 年 喆	1977. 2 ~ 1979. 5 (27개월)
28	柳 完 淳	1979. 5 ~ 1980. 7 (14개월)
29	宋 載 久	1980. 8 ~ 1981. 7 (11개월)
30	柳 秀 澤	1981. 7 ~ 1982.11 (16개월)
31	柳 萬 永	1982.11 ~ 1983. 4 (5개월)
32	高 光 淳	1983. 4 ~ 1985. 3 (23개월)
33	李 允 甲	1985. 3 ~ 1988. 2 (35개월)
34	朱 尤 哲	1988. 2 ~ 1988.12 (10개월)
35	金 完 柱	1989. 1 ~ 1991. 1 (24개월)
36	朴 丙 植	1991. 1 ~ 1991.12 (11개월)
37	崔 忠 一	1991.12 ~ 1992. 7 (7개월)
38	張 鉉 燉	1992. 7 ~ 1994. 1 (18개월)
39	梁 圭 章	1994. 1 ~ 1994.12 (12개월)
40	元 鍾 泰	1995. 1 ~ 1995. 6 (6개월)
41	李 昊 鍾	1995. 7 ~ 1998. 6 (36개월)
42	李 昊 鍾	1998. 7 ~ 2002. 6 (48개월)
43	李 康 洙	2002. 7 ~ 2006. 6 (48개월)
44	李 康 洙	2006. 7 ~ 현재

9. 역대 의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기 간	비 고
1	반 기 진	성송면	56	초선	제1대 전반기	
2	김 동 훈	고창읍	56	초선	제1대 후반기	
3	이 돈 우	무장면	61	재선	제2대 전반기	
4	최 석 기	공음면	50	재선	제2대 후반기	
5	진 남 표	고창읍	51	3선	제3대 전반기	
6	진 남 표	〃	53	3선	제3대 후반기	
7	성 호 익	아산면	47	4선	제4대 전반기	
8	최 석 기	공음면	58	4선	제4대 후반기	
9	장 세 영	부안면	58	재선	제5대 전반기	

10. 역대 부의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기 간	비 고
1	김 동 훈	고창읍	54	초선	제1대 전반기	
2	류 길 규	신림면	64	초선	제1대 후반기	
3	김 기 채	대산면	49	재선	제2대 전반기	
4	고 병 윤	성내면	57	재선	제2대 후반기	
5	성 호 익	아산면	43	3선	제3대 전반기	
6	이 만 우	해리면	46	재선	제3대 후반기	
7	김 상 필	고창읍	60	재선	제4대 전반기	
8	최 인 규	흥덕면	52	재선	제4대 후반기	
9	이 재 정	성내면	50	재선	제5대 전반기	

11. 역대 상임위원장

□ 운영위원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상임위원회명	재임기간	비 고
1	고병윤	성내면	51	초선	운영위원회	1대 전반기	
2	김기채	대산면	44	초선	〃	1대 후반기	
3	성호익	아산면	40	재선	〃	2대 전반기	
4	원병희	흥덕면	61	초선	〃	2대 후반기	
5	유길승	고수면	43	재선	〃	3대 전반기	
6	최인규	흥덕면	47	초선	〃	3대 후반기	
7	심재규	성송면	58	재선	〃	4대 전반기	
8	김남규	무장면	53	초선	〃	4대 후반기	
9	박래환	고창읍	48	초선	〃	5대 전반기	

□ 자치행정위원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상임위원회명	재임기간	비고
1	김양진	상하면	43	초선	내무위원회	1대 전반기	
2	최석기	공음면	46	초선	〃	1대 후반기	
3	최석기	〃	48	재선	〃	2대 전반기	
4	이종위	성송면	42	초선	〃	2대 후반기	
5	이만우	해리면	44	재선	자치행정위원회	3대 전반기	
6	이맹근	성내면	62	초선	〃	3대 후반기	
7	최인규	흥덕면	49	재선	〃	4대 전반기	
8	전춘식	상하면	53	재선	〃	4대 후반기	
9	박현규	해리면	49	재선	〃	5대 전반기	

□ 산업건설위원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상임위원회명	재임기간	비고
1	전종열	심원면	45	초선	산업건설위원회	1대 전반기	
2	이돈우	무장면	59	초선	〃	1대 후반기	
3	고병윤	성내면	55	재선	〃	2대 전반기	
4	유종윤	신림면	56	초선	〃	2대 후반기	
5	전재준	부안면	66	재선	〃	3대 전반기	
6	유길승	고수면	45	재선	〃	3대 후반기	
7	전춘식	상하면	50	재선	〃	4대 전반기	
6	박병옥	심원면	59	초선	〃	4대 후반기	
7	김갑성	대산면	65	초선	〃	5대 전반기	

12. 역대 의회사무과장

연번	성 명	취임당시 직 급	취임당시 연 령	재 임 기 간	비 고
1	홍종섭	행정 5급	53	1991. 4.15 ~ 1993. 7.28	
2	표희종	행정 5급	57	1993. 7.29 ~ 1994. 4.14	
3	양규태	행정 5급	54	1994. 4.15 ~ 1994.12.23	
4	정창진	행정 5급	59	1994.12.23 ~ 1996.12.31	
5	안재식	행정 5급	54	1997. 1. 3 ~ 1998.11. 4	
6	김준희	행정 5급	47	1998.11. 5 ~ 2001. 2.11	
7	염규용	행정 5급	53	2001. 2.12 ~ 2001. 4. 2	
8	김용관	행정 5급	52	2001. 4. 3 ~ 2003. 1.10	
9	박채주	행정 5급	56	2003. 1.11 ~ 2004. 7.30	
10	김영관	행정 5급	54	2004. 7.31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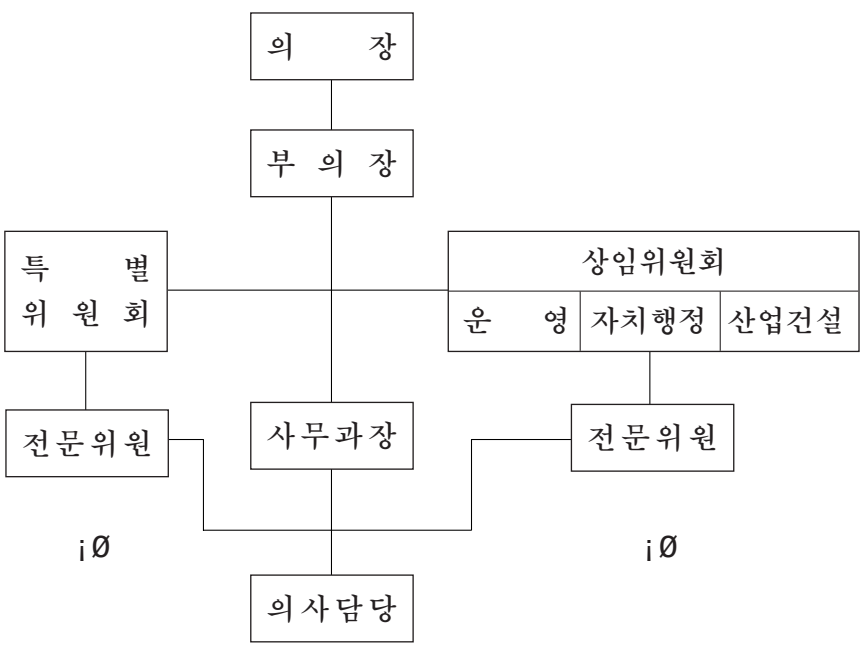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의결기관인 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 운영을 보좌한다.

고창군의회 기구는 다음과 같다.

의회기구표



2. 의회 현황

□ 제1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면에서 각 1명씩이다. 초대 전반기 의장은 성송면 선거구의 반기진 의원이며, 부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 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1. 4. 15~1993. 4. 14일로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 의원이고 부의장은 신림면 선거구의 류길규 의원으로 임기는 1993. 4. 15~1995. 6. 30일까지이다. 김동훈 의장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1995년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부의장 류길규 의원이 1995. 3. 30~6. 30일까지 의장직무대리를 하였다. 고창군의회 제1대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金東勳	37.11.2	고창읍 읍내리 268-5	고 졸	
부의장	柳吉圭	29.12.18	신림면 무림리 139	대학원졸업	
의 원	陳南杓	47.2.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204호	대학원수료	
〃	李鍾云	46.5.10	고수면 상평리 636	고 졸	
〃	崔亨植	52.11.8	아산면 중월리 335	고 졸	93.7.15 퇴직
〃	成鎬益	55.4.3	아산면 목동리 272	대학원수료	93.11.19 의원당선
〃	李敦禹	34.1.17	무장면 강남리 198	국 졸	
〃	崔錫基	47.3.10	공음면 칠암리 558	고 졸	
〃	金亮鎭	48.11.4	상하면 검산리 433	고 졸	94.5.7 사망
〃	吳均鎬	45.12.16	해리면 하련리 208	대학원수료	
〃	潘琪鎭	35.1.20	성송면 향산리 79	고 졸	
〃	金起采	49.2.17	대산면 매산리 1079	대 퇴	
〃	全鍾烈	46.9.26	심원면 월산리 629	고 졸	
〃	愼世宰	43.6.13	흥덕면 사천리 53	대 졸	93.1.26 퇴직
〃	金白洙	40.3.30	흥덕면 오호리 151	대 졸	93.3.26 의원당선
〃	高炳允	40.5.12	성내면 옥제리 543	고 졸	
〃	全在準	32.8.5	부안면 중흥리 146	고 졸	92.2.29 퇴직
〃	金俊衡	48.10.4	부안면 중흥리 128	대 졸	92.8.26 의원당선

□ 제2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 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제2대 전반기 의장은 무장면 선거구의 이돈우 의원이며 부의장은 대산면 선거구의 김기채 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5. 7. 1~1996. 12. 31일로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공음면 선거구의 최석기 의원이고 부의장은 성내면 선거구의 고병윤 의원으로 임기는 1997. 1. 1~1998.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하였다.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崔錫基	47.3.10	공음면 칠암리 558	고 졸	
부의장	高炳允	40.5.12	성내면 옥제리 543	고 졸	
의 원	陳南杓	47.2.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 204호	대학원수료	
〃	金相弼	42.3.16	고창읍 읍내리 590-1	국 졸	
〃	柳佶承	55.3.25	고수면 황산리 문화마을 1-4	대 졸	
〃	成鎬益	55.4.3	고창읍 읍내리 건양A 나동101	대학원수료	
〃	李敦禹	34.1.7	무장면 강남리 198	국 졸	전반기 의장
〃	魯炳烈	43.1.20	상하면 장호리 505	국 졸	
〃	李晩雨	54.12.29	해리면 하련리156	방 통 대 재	
〃	李鍾慰	55.3.27	성송면 계당리 79	중 퇴	
〃	金起采	49.2.17	대산면 매산리1079	대 퇴	전반기 부의장
〃	全鍾烈	46.9.26	심원면 월산리 629	고 졸	
〃	元丙喜	36.7.25	흥덕면 신송리 215	대 졸	
〃	柳鍾潤	41.2.10	신림면 무림리 103	중 졸	
〃	金俊衡	48.10.4	부안면 중흥리 128	대 졸	

□ 제3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14명이며 14개 읍 · 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제3대 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진남표 의원이며 부의장은 아산면 선거구의 성호익 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8. 7. 1~2000. 6. 3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진남표 의원이고 부의장은 해리면 선거구의 이만우 의원으로 임기는 2000. 7. 1~2002.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陳南杓	47.2.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 204호	대학원수료	전반기 의
부의장	李晩雨	54.12.29	해리면 하련리156	대 퇴	
의 원	柳佶承	55.3.25	고수면 황산리 문화마을 1-4	대 졸	
〃	成鎬益	55.4.3	고창읍 읍내리 건양A 나동101	대학원수료	전반기부의장
〃	鄭基杓	47.9.8	무장면 덕림리 332	대학원수료	
〃	崔錫基	47.3.10	공음면 칠암리 558-6	대학원수료	
〃	全春植	52.11.2	상하면 하장리 985-7	대학원수료	
〃	沈載圭	44.11.16	성송면 사내리 산27	중 퇴	
〃	金起采	49.2.17	대산면 매산리 1079	대학원수료	
〃	韓東洙	37.8.13	심원면 월산리 747	고 졸	2002.4.17 사망
〃	崔仁圭	53.5.23	흥덕면 흥덕리 238-7	대학원수료	
〃	李孟根	38.12.12	성내면 양계리 210	고 졸	
〃	柳吉圭	29.12.18	신림면 무림리 139	대학원졸업	2002.1.6 사망
〃	全在準	32.8.5	부안면 중흥리 146	고 퇴	2000.6.6 사망
〃	張世泳	49.8.29	부안면 검산리 71	고 졸	2000.10.26 당선

□ 제4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14명이며 14개 읍 · 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제4대 전반기 의장은 아산면 선거구의 성호익 의원이며, 부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상필 의원으로 그 임기는 2002. 7. 1~2004. 6. 3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공음면 선거구의 최석기 의원이고 부의장은 흥덕면 선거구의 최인규 의원으로 임기는 2004. 7. 1~2006.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崔錫基	47.3.10	공음면 칠암리 558-6	고 졸	
부의장	崔仁圭	53.5.23	흥덕면 흥덕리 238-7	고 졸	
의 원	金相弼	42.3.16	고창읍 읍내리 590	독 학	전반기 부의장 2005.5.26사망
〃	丁鍾熙	60.3.25	고수면 와촌리 119	고 졸	
〃	成鎬益	55.4.3	아산면 목동리 272	대 졸	전반기 의장
〃	金南奎	52.5.7	무장면 무장리 59-2	초 졸	
〃	全春植	52.11.2	상하면 하장리 985-7	대 졸	
〃	朴炫圭	58.8.13	해리면 동호리 532	고 졸	
〃	沈載圭	44.11.16	성송면 사내리 산27	초 졸	
〃	鄭元煥	57.1.23	대산면 성남리 51	고 졸	
〃	朴秉鈺	46.5.16	심원면 월산리 744-2	고 졸	
〃	李載丁	57.12.3	성내면 양계리 205-7	독 학	
〃	李貴燮	56.1.26	신림면 도림리 416	중 졸	
〃	朴永求	52.3.16	부안면 중흥리 176-2	고 졸	

3. 사무과 현황

고창군의회의 사무과는 전문위원과 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으로 사무과장 1명, 전문위원 3명, 의사담당 1명, 정규직원 8명과 청원경찰 1명, 사무보조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의회사무과 직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 영 관	
〃	전문위원	이 윤 희	
〃	〃	나 승 환	
〃	〃	오 동 근	
〃	의사담당	김 용 운	
〃	직 원	전 애 중	
〃	〃	고 옥 규	
〃	〃	정 국 진	
〃	〃	김 영 환	
〃	〃	조 현 주	
〃	〃	박 해 근	
〃	〃	박 경 운	
〃	〃	박 지 연	
〃	청원경찰	김 남 종	
〃	사무보조	정 은 희	
〃	〃	박 선 미	
〃	〃	김 범 석	

제3절 고창군 선거 현황



1. 전국 선거

가. 국회의원 선거

1) 제헌의원 선거

1948년 2월 UN소총회에서는 "가능지역내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UN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한국위원단은 바로 가능지역인 남한 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미군정당국이 선거준비와 집행을 맡았다.

군정당국은 먼저 1947년 9월에 공포된 남조선과도 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立法議員選擧法)'을 골자로 해서 잠정적인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를 제정하였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반민족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에 구별 없이 국민으로 만 21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 한다' 라고 되어 있다.

② 피선거권은 '각 선거구마다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선거구의 확정은 부(府), 군(郡) 및 서울시의 구(區)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에서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에서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에서 45만 미만의 부(府)는 4개구로 하되 동법(同法) 부표(附表) 제1호에 의하여 총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하되 법정선거구획정주의(法定選擧區劃定主義)를따랐다.

③ 피선거구는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면 누구에게나 부여하였다.

④ 비밀투표를 보장하였으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하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총 20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치안관계로 인하여 북제주 갑구와 을구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좌익계와 남북협상파(南北協商派)가 불참하고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선거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무려 49개의 정당들이 참여함으로써 난립하게 되었다. 선거인의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투표결과를 보면 총 의석의 27.5%인 55

석을 차지한 대한독촉국민회(大韓獨促國民會)가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선거전에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한민당(韓民黨)은 당 중진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이 대게 탈락하고 91명의 후보 중에서 29명만이 당선되어 총 의석의 14.5%에 머물고 말았다. 그 외에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등의 군소정당(群小政黨)이 3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었고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하여 총 의석의 42.5%를 얻었다. 이는 원내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였다.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거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었다. 갑구에는 고창을 비롯하여 고수면, 성송면, 무장면, 대산면, 공음면, 상하면이 그리고 을구에는 아산면,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이 포함되었다.

갑구에는 무소속의 金永東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27.3%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을구에서는 한민당(韓民黨)소속의 白寬洙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7.5%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金永東은 조선전업사원의 경력을 가진 노동자 출신으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급진적인 노선을 추종한 세력들이 지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가 출생한 무장면은 그 당시에 고창군 인민위원장이 그곳에서 나올 만큼 진보성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을구에서 당선된 白寬洙는 일본 명치(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장을 역임한 당시의 인물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해방이 되자 그는 1946년에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여 민주입법의원의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백관수는 초대 법사위원장과 헌법기초의원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건국 초기의 각종 법률 제정에 참여하여 건국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 · 25가 발발하자 그는 그이 자택에서 공산군에 의해 납북 당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62세였다.

제헌의회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특표수	비고
林芳郁	남	43	고창읍 읍내리	농업	대졸 · 농업	한국민주당	6,963	
李逢春	〃	59	〃	〃	대졸 · 농업	대한독촉농민총맹	2,091	
吳毅均	〃	66	〃	〃	한수10년.군수2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88	
金基采	〃	41	〃	회사원	대졸. 산업사4년	무 소 속	6,499	
金永東	〃	42	무장면 무장리	실 업	중졸.조선전업사업	〃	8,317	당선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특표수	비고
白寬洙	남	60	성내면 덕산리	입법의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 사장	한국민주당	19,787	당선
朴洪根	〃	47	흥덕면 흥덕리	농업	보전졸 · 면장5년	무 소 속	4,448	
愼鋪載	〃	44	〃	〃	대중퇴, 국민회장	대한독립조선국민회	5,062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나면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위해 국회는 1950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제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선거법이 시한적(時限的) 이었던 것으로 미군정(美軍政)과 함께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새 선거법은 미군정(美軍政)하에서 제정되었던 제헌의회의원 선거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단지 달라진 사항이라면 선거구를 200개에서 210개로 늘린 것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항을 일부 변경시킨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선거권 중에서 달라진 내용을 보면 이 때에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거의 만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해제하였으며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원(審計員), 감찰원, 경찰관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 외에는 보통 · 평등 · 비밀 · 직접 선거의 원칙, 소선거구와 다수 대표제, 그리고 행정구역 및 인구에 의한 선거구 법정획정주의(法定劃定主義)등 선거제도상의 중요사항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제2대 총선거는 남북협상파를 포함하여 제헌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선거결과 대통령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소속(無所屬)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지지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도록 만들었다.

1952년 1월 정부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大統領直選制改憲案)을 내놓았으나 국회는 이를 찬성 19표, 반대 14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부결시켰다.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이승만은 직접 경찰력을 동원하고 원외자유당(院外自由黨)을 앞세워 개헌안 부결반대(否決反對)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운동(召還運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야당은 오히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를 한 사람 넘는 123명의 연서(連署)로 의원내각제안(議員內閣制案)을 제출하여 그에 맞섬으로써 두 세력간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직선제개헌안을 제출하여 야당의 의원내각제에 맞서는 한편, 직선제개헌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와 계엄령(戒嚴令)이었다.

서둘러서 시행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의 사람들이 당선됨으로써 국회에 대항할 기반을 구축하고, 공비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선포한 계엄령은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킬 의도였다. 계엄령 하에서 의원내각제개헌을 주장한 의원들을 검거하는 등 일대 혼란을 일으킨 후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연금한 상태에서 모든 법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기립표결(起立票決)로서 대통령직선제(大統領直選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찬성 163표, 기권3표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釜山政治波動)이다.

고창군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林芳郁	남	43	무장면 무장리	국회 의원	중 졸 1대국회의원	국민당	2,373	
金秀學	〃	54	고창읍 읍내리	회사 중역	경도제대졸 상공부차관	무소속	10,999	당선
鄭泰煥	〃	49	성송면 하고리	농 업	한문수학 고창중학이사	〃	7,532	
嚴柱昇	〃	56	고창읍 읍내리	무 직	중졸·공무원	〃	895	
金永守	〃	30	고수면 와촌리	상 업	명치대학상과졸 회 사 원	〃	사퇴	
姜 無	〃	53	대산면 지석리	실 업	일본동양대학졸 면 장 만주이민개척단장	〃	3,125	
吳毅均	〃	67	고창읍 읍내리	농 업	한문수학·군수	국민당	1,146	
金基采	〃	42	고창읍 읍내리	회사 사원	대졸·회사원	무소속	4,860	
林暢郁	〃	38	고창읍 읍내리	농 업	대졸·인쇄업	〃	3,941	
鄭淳默	〃	40	성송면 계당리	광 업	국졸·면서기	〃	사퇴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朴洪根	남	48	흥덕면 사천리	농 업	국졸 · 면장	무소속	5,678	
徐廷天	〃	43	심원면 월산리	수리조합 도지부장	수원농고졸 도농지개량과장	〃	1,326	
元成容	〃	44	흥덕면 신송리	회사원	대졸 · 토건업	〃	2,500	
金奉洙	〃	56	고창읍 읍내리	인쇄업	중졸 · 인쇄업	국민당	1,022	
白寬洙	〃	61	성내면 덕산리	국 회 의 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민국당	6,098	
愼龍頊	〃	48	흥덕면 사천리	항 공 산 업	동경항공전문대졸 대한항공사장	무소속	6,360	당선
李龍雨	〃	59	해리면 성 문	농 업	한문수학	〃	1,150	
朴柱璜	〃	29	흥덕면 흥덕리	농 업	대졸 · 교원	〃	2,700	
洪淳熙	〃	37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대졸 · 공무원	〃	4,821	
姜錫東	〃	41	해리면 금평리	농 업	전문대졸. 농장농감	〃	2,750	
金宇成	〃	25	부안면 수남리	농 업	고대예과3년 재학 전국고학생연맹장	〃	879	

갑 · 을구 다같이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갑구의 경우 10명이, 을구의 경우는 11명이 각기 경합을 벌여 국회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헌국회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 당시의 열망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더라도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학벌의 경우 한문수학에서 대졸자까지 다양하였고 직업에 있어서도 농업을 위시로 해서 고급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심대함을 알 수 있다.

선거결과 갑구에서는 일본에서 경도대학을 졸업하고 상공부차관을 지낸 무소속의 金秀學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37%를 얻음으로써 당선되었다.

한편 을구의 경우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곳의 선거전은 제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전국적 인물의 국민당의 백관수 후보와 재력이 튼튼한 무소속의 愼鏞頊후보로 좁혀졌으며 이들간의 선거전은 치열해졌다. 당시 이승만의 후광을 업은 신용욱은 튼튼한 재력을 바탕으로 백관수 후보진영을 공략하여 262표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국가적 인물인 백관수의 탈락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고창 사람들은 세간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한다.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에 의해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과 같은 국내외의 혼란된 정세로 인하여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1954년에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도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민의원 의원선거만이 개성시를 포함한 휴전선 이북지역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헌법상으로는 양원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1950년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유당(自由黨)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이 각각 공천자를 내어 우리의 선거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는 소위 정당정치(政黨政治)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전체투표의 36.8%를 얻은 자유당(自由黨)이 114석을 차지한 반면 전체 투표의 47.9%를 얻은 무소속이 67석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선거구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후보자의 득표 차이에는 관계없이 최다득표자를 뽑음으로써 소수지지에 의한 다수당(多數黨)이 출연하기 쉽다는 단점이 드러난 것이다.

고창군의 경우 갑구에서는 7인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반면 을구에서는 3인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

갑구의 경우 자유당의 공천은 받은 陳懿鍾후보와 무소속의 鄭世煥후보의 싸움이었다. 젊은 지식인으로서 집권당의 공천을 받은 진의종 후보는 젊은층에 파고들어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갔으나 대산, 무장 등 갑구지역에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정세환 후보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진의종 후보는 10,458표를 얻었고, 정세환 후보는 10,713표를 획득함으로써 정세환 후보가 25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진의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갑구의 선거는 혈연관계가 투표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는 자유당의 현역의원인 愼鏞頊후보와 무소속의 洪淳熙 후보간의 경쟁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 소문날만큼 이승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신용욱은 탄탄한 재력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6,977표차로 홍순희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陣懿鍾	남	32	무장면 무장리	변호사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부장	자유당	10,458	
徐炯南	〃	48	고창읍 읍내리	의 사	세브란스의전졸 의 학 박 사	국민당	1,443	
鄭世煥	〃	38	대산면 율촌리	농 업	일본정치대학졸 가 사 에 종 사	무소속	10,713	당선
金永久	〃	53	무장면 성내리	회사원	동 양 대 학 졸 대한날염공사장	〃	2,789	
姜 無	〃	57	대산면 지석리	농 업	일본동양대학졸 면 장 5 년	〃	1,155	
林暢郁	〃	42	고창읍 읍내리	〃	조 도 전 대 학 졸 금 융 조 합 장	〃	4,563	
愼三勳	〃	47	고창읍 읍내리	〃	국졸 · 대한노총 고 창 군 연 맹 장	대한노총	1,079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愼鏞頊	남	52	서울 종로구 청운동	민의원 의 원	대 졸 민 의 원 의 원	자유당	16,103	당선
洪淳熙	〃	41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일본명치대졸 홍해산업(주)전무	무소속	9,126	
閔晶植	〃	55	서울 종로구 4가	〃	조 도 전 대 졸 동양맥주감사역	〃	3,801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집권세력과 야당은 다같이 1958년에 실시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른 선거법개정이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1952년 발췌개헌 이후의 헌법은 국회의 구성을 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50년에 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은 단원제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의원 선

거를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 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두 개정안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을 둘러싼 파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80여 차례나 협상을 벌여 단일안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 의원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 을 공포하였다.

1958년의 민의원 선거법과 1950년의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교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의 확정 · 설치방법 및 당선인 결정, 투표방식 등 투표제도상의 기본골격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에 의해 투표참관인(投票參觀人)의 권한 확대, 각급 선거위원회의 의원 중 일정수의 정당에 의한 추천 등이 보완 또는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여당의 주장에 의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제(寄託金制)와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었다.

참의원 의원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와 도(道)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의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선거는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하여 3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도 30개 선거구가 늘어난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90.6%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선거 후에 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이 105건에 달했고 여론에 못이긴 자유당이 당선된 1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만큼 행정력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였다.

선거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자유당이 126석을, 민주당이 79석, 통일당이 1석을, 그리고 무소속이 27석을 차지함으로써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둘째, 1956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나타난 여촌야도(餘村野都)의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당이 126석을 차지하긴 하나 이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26개 시지역에서 당선된 의석은 13석에 불과하였고, 민주당의 79석 중에서 43석은 도시지역에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3대 선거에서와 같이 제1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이점을 이용하여 자유당은 득표율 42.1%에 의석수는 54.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민주당과 무소속은 34.2%와 21.5%의 득표를 하였으나 실제의 의석수는 33.9%와 11.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현상 즉 '여촌야도(餘村野都)'가 들어맞지 않았다는데 있다.

갑구의 경우에는 무소속의 정세환 후보가 재선되었고, 을구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홍순희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갑구의 후보가 무소속이면서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정씨문중(鄭氏門中)의 지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본다. 정씨 자신이 소탈하여 인심을 잃지 않고 아직도 혈연이 투표행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풍토에서 그의 당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에는 재력이 약한 민주당의 홍순희 후보가 재력이 강한 여당의 신용욱 후보를 누를 수 있었는데 이은 홍순희에 대한 동정과 민의원으로서의 신용욱 후보가 보여준 실적에 유권자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을 쥔 신용욱의 권력남용은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하여 그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陳懿鍾	남	36	무장면 무장리 260	변호사	대졸 · 회사원	자유당 공천	10,296	당선
李 範	〃	54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28-4	회사원	상고졸 · 정당인	민주당 공천	2,985	
曺秉厚	〃	36	고창읍 월산리 482-5	농 업	고려대졸 · 대한상무회 전북지회장	무 소 속	9,673	
鄭世煥	〃	42	대산면 율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졸 · 민의원	무 소 속	10,946	당선

※ 金秀學은 제4대 국회의원선거의 고창군 갑선거구에 후보등록 하였다가 사퇴함.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愼鏞頊	남	56	서울 종로구 청운동 51-21	민의원	비행전문졸업 민 의 원	자유당 공천	14,543	
洪淳熙	〃	45	고창읍 읍내리 87	회사원	대졸 · 정당인	민주당 공천	15,321	당선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4 · 19의거로 이승만이 사임함으로서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 수

립을 위한 개헌 작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의원 가운데 208대 3이라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법이 마련되었다는데 헌법과 선거법 모두 선거부정을 막고, 자유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강하였다. 우선 헌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가 처음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민의원은 선거위원회법(選擧委員會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거관리기구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통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법도 자유 · 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4대 민의원선거에 적용되었던 협상선거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① 입후보 등록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장제도(推薦狀制度)를 폐지하였다.

② 선거권을 더욱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는 매년 1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기본선거명부(基本選擧名簿)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구역 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보통선거명부(普通選擧名簿)를 병용토록 하였다.

③ 부재자(不在者)의 현지투표(특히 軍에 있어서의)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재자투표제도(不在者投票制度)를 채택하였다.

④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참관인제도(投票參觀人制度)를 강화하고 릴레이식 투표방지를 위한 투표용지 일련번호삽입제(一連番號揷入制) 채택하였다.

자유 ·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제외하면 선거제도상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4 · 19의거가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층의 힘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참의원 피선거권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각각 내렸다.

제5대 민의원선거는 7월 29일에 전국 233개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에서의 선거와는 달리 경찰과 관권의 개입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매표매수행위(買票買收行爲)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하였는데 민주당은 총의석의 75.1%인 175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유당은 2석 밖에 얻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와해되었고, 그 외에 사대당(私大黨)이 4명, 한민당(韓民黨)과 통일당(統一黨)이 각 1명씩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은 전체 의석의 21.1%인 49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

가 있었고, 또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가 강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 있다고 보여 진다. 민주당은 총 투표의 41.7%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총 의석의 75.1%를 얻었고, 무소속의 경우는 총 투표의 46.8%를 얻었으나 의석에 있어서는 21.1%를 얻는데 그쳤다. 또한 사대당(事大黨)은 총 투표의 6%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1.7%를 얻었고, 자유당은 2.7%의 득표에 0.9%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경우 갑구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柳 津후보가 당선되었고,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金相欽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고창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갑구에서 당선된 유진 후보는 서울대 영문학 교수로 그 당시 그의 저서인 구문론이 대학입시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민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4 · 19이후의 제2공화국 주체가 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대학교수로서의 신선한 이미지와 적지 않은 유씨 종친들의 지지가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이나 근소한 표 차이로 정세환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진의종 후보는 이번에는 유진 후보에게 2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또 다시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불리한 자유당의 소속으로 출마한 정세환 후보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4,998표라고 하는 상당수의 득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때까지도 혈연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鄭世煥	남	44	대산면 율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학전문부졸 민 의 원	자유당	4,998	
金宇霆	〃	50	서울 마포구 아현동 463-28	회사장	민주일보사장 대한행정신문사장	무소속	2,707	
金亭石	〃	35	성송면 향산리 415	회사원	해양대학졸 해양대학조교수	〃	2,899	
裵祥基	〃	38	고창읍 읍내리 185	양조업	성균관대정경대수료 도의회의장	〃	5,668	
陳懿鍾	〃	38	나주군 나주읍 교동리	회사 취정역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무국장	〃	8,775	
柳 津	〃	54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37	출판업	연희전문졸 경도동지사대학 영문학부졸 서울대교수	민주당	8,800	당선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元永喜	남	31	전주시 풍남동	농 업	고려대학졸 삼남일보편집위원	무소속	2,016	
金孝南	〃	37	흥덕면 후포리 495	〃	단국대학1년중퇴	〃	6,792	
李炯淵	〃	26	서울시 종로구 화동 90	기 자		민주당	4,736	
洪淳熙	〃	47	고창읍 읍내리 77	민의원		무소속	4,636	
愼鏞頊	〃	58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2-21	회사장		〃	5,907	
金相欽	〃	39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25	회사원		〃	7,648	당선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흠 후보가 민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 김성수의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성수는 2대 부통령을 역임하였고,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고창이 배출한 전국적 인물이었다.

김상흠 외에 그 당시 부친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예로는 조병옥의 아들인 조윤형과 신익희의 아들인 신하균을 들 수 있다. 당시에 정계의 '삼총사'라고 불리운 김상흠, 조윤형, 신하균은 큰 기대를 모았었다.

김상흠은 그 자신은 고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치문화를 반영한 일단으로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후대가 거두어들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그의 자식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5 · 16군사정부(軍事政府)는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후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을 제정하여 1963년 1월 16일 공포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 8월에 제1차 개정을 거쳐 11월 26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했다.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회복기간을 연기하고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에 대해

서 형의 집행완료 내지는 면제된 후 7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② 선거구(選擧區)를 지역구(地域區)와 전국구의 2종으로 하고 지역구는 과거의 233개의 선거구를 변경하여 131개구로 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 1인 44석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기로 하였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운영에 있어 각 정당이 후보를 미리 서열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는 엄정구속명부제(嚴正拘束名簿制)를 실시하였다.

③ 후보자의 정당추천제(政黨推薦制)를 실시하였다.

④ 선거운동은 정당 본위로 하고 개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였으며, 공영선거운동(公營選擧運動)을 확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구제하고 전국적인 인물이나 직능대표(職能代表)를 선출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비례대표제는 양당정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제1당과 제2당에게 유리한 배분방식(配分方式)을 가지고 있었다. 제1당은 득표비율(得票比率)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배분 받으며, 득표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정받게 되었다. 제2당은 제3당 이하 정당들이 득표한 총득표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제1당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득표비율에 관계없이 잔여의석의 3분의 2를 배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은 득표비율에 따라 제3당 이하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봉쇄조항(封鎖條項)을 두어 지역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전국구 의석배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1963년 11월 26일 전국 131개 지역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2년 7개월 동안의 군정기간(軍政期間)동안 혁명정부를 책임진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민정당의 尹潽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은 유리한 조건에서 난립한 야당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총선거인의 72.1%가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33.5%, 민정당 20.1%, 구민주당계(舊民主黨係)의 민주당(民主黨)은 13.6%, 국민당은 8.8%, 자유민주당은 8.1%, 그리고 이외의 7개의 군소정당들이 도합 13.9%의 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소선구 다수대표제의 특징이 나타나 공화당은 득표율보다 훨

씬 높은 전국의석의 68%에 해당하는 88석을 차지하였다. 민정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의 20.6%인 27석을 얻어 득표비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정당에 있어서는 의석 점유율이 득표비율이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공화당(共和黨)은 전국구 의석에서도 유리하게 배분받았다. 33.5%의 득표율로 44석의 총의석 중에서 절반인 22석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제2당인 민정당(民政黨)은 20.1%의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의 31.8%인 14석을 배정 받았다. 그 외에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5석과 3석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당선자 3명과 득표비율 5%의 조건에 미달되어 전국구 의석이 돌아가지 않았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8	183,385	89,827	64,084	1,903	65,987 (2,467)	23,840	73.5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자유민주당	金 水 學	고창읍 읍내리 202	대 졸	2대국회의원	3,241	당선
신 흥 당	孫 明 燮	고창군 심원면 302	정읍농고졸	육군특수대근무	1,524	
국민의당	李 炯 淵	서울 서대문구 292-450	대 졸	언 론 인	9,382	
보 수 당	陳 斗 銀	흥덕면 흥덕리 352	고 졸	흥덕중학원장	2,181	
민 주 당	姜 澤 秀	서울서대문구 현저동 7의558	대 졸	초대참의원	7,357	
민 정 당	金 相 欽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35	연 전 졸	제5대민의원	16,680	당선
추 풍 회	安 判 童	흥덕면 흥덕리 560	독 학	9지구당조직책	1,361	
민주공화당	成 正 基	서울 신당동 372-444	대 졸	삼양교역주식회사 상 무 이 사	16,531	

고창군의 경우에는 선거구에 있어서 종전에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선거법의 개정으로 1인만을 선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73.5%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무효투표는 선거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여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 중에 무학자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촌야도'의 현상이 아니라 야당인 민정당 김상흠 후보가 민주공화당의 성정기 후보를 149표차로 힘겹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상흠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 국회가 5 · 16으로 말미암아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동정여론과 인촌 김성수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주 아깝게 패배한 성정기 호보는 1963년 12월 5일 개표(開票) 및 계표부정(計票不正)을 들어 선관위원장 정진홍(鄭鎭洪)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64년 12월 10일에 원고의 소취하로 간주되어 재판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김상흠 후보의 당선은 유효하게 되었다.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는 1963년에 실시된 선거법에 여러 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개원 초부터 지적하여 오다가 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이전 선거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다만 몇가지 운용상의 문제점만을 시정하였다.

첫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의 신설

둘째,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일부 완화

셋째, 투표통지표의 교부제도 변경

넷째,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구역표를 새로 정립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선거법에 의하여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참여율은 76.1%였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은 선거직전 통합야당(統合野黨)으로 출발한 신민당(新民黨)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공화당은 50.6%의 득표율로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을 차지하였고, 신민당은 32.7%의 득표율로 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외에 9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총합계 16.7%의 표를 얻었으나 전국구 배분방식에 따라 대중당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양당제가 아닌 1.5의 정당체제가 확립되어

거대여당의 독주가 예견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2.6%로 전국 투표율의 76.1%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효투표도 투표율의 증가와 더불어 많아졌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우에는 1,903표였으나 7대에 이르러서는 3,419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집권당이 과열하게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킨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모르는 무학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킴으로써 무효표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고창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공화당의 愼鏞南후보는 5대, 6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상흠 후보와 12,151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孫明燮후보는 당선된 신용남 후보의 부위원장인 丁奎潤을 걸어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모든 경찰력과 행정조직 그리고 공화당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이고, 또한 부정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당선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가 제시한 소장에 기록된 부정사실을 몇가지만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같은 해 5월 3일에 치러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의 총수는 부재자신고인 223명을 포함하여 86,311명이었던 것이 6월 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때에 이르러서는 불과 1개월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부재자신고인 3,910인을 포함하여 10,024인이나 급증한 96,335인으로 사전에 결탁하여 격지자로서 투표가 불가능한 자는 물론이고 그 중세에 혹은 5년 내지는 10년 전에 사망한 유령자까지 유권자로 조작하여 6 · 8국회의원선거 명부에 등재된 부재자신고인 3,910명을 제외한 순증가분 7,337매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 통지표와 5 · 3대통령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령유권자 약 6,000명의 통지표를 합한 약 13,000여표 가운데 약 8,000표의 통지표를 면직원 각리의 참사 및 공화당원 등으로 하여금 미리 확보케 하여 이들 모두 사위(대리)투표케 함으로써 당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신용남 후보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케 하여 당선될 수 있었다.

② 공화당 조직은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전유권자(全有權者)의 성분을 분석하고 조사케 하고 신민당의 공천을 받은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통지표 8,000매를 매당 100원 내지 200원씩 매수하여 고의로 기권하게 함으로써 김상흠 후보가 득표할 8,000표를 사전 득표방해를 하였다.

③ 각 면장, 부면장등은 면직원과 리참사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시부터 투표통지표 교부시까지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 약 2,000인에게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누락케 하였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치 않음으로써 신민당 공천자인 김상흠 후보의 득표 2,000여표를 사전에 방해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④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나타난 총 3,910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2,000인의 거소를 각기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 · 면장들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케 하여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지역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일괄 회수해서 그중 거소가 전혀 다른 투표용지 2,000통 가운데 500통은 다시 반송되어 오도록 하고 잔여 1,500통은 당시 공화당의 공천자인 신용남 후보에 기표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함으로써 선거관리상의 부정을 감행하였고, 따라서 피고 신용남은 1,500표를 부정득표하였다.

⑤ 흥덕면 제1투표구 동사리 죽정부락 선거인 120인에게 일금 3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키로 약속하고 공화당에서 이들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흥덕면 제3투표구, 해리면 제1 · 2투표구 등 도합 약 2,120인의 선거인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하는 불법 · 부정을 감행하였다.

⑥ 해리면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신민당의 공천자인 김상흠 후보를 선거인에게 위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배부함으로써 원고가 투표할 100표를 무효표가 되게 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이 같은 내용들 이외에도 많은 부정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당선무효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의 ①항에서 지적한 부정사실 가운데 신용남이 관의 협조아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사위(대리)투표를 함으로써 부정득표한 ①항의 8,000여표와 ②항의 원고가 득표할 8,000여표의 투표용지를 매수함으로써 고의로 기권케 하여 피고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본 8,000표, 그리고 ③항의 원고가 득표할 2,000표를 투표통지표를 교부치 않았거나 또는 선거인 명부에 아예 누락시킴으로써 역시 피고 신용남 후보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보게된 2,000표, 또한 ④항의 1,500표의 부재자신고인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피고 신용남 후보란에 기표해서 우송하여 부정득표한 1,500표, 그리고 ⑤항의 원고가 득표할 표를 무효표가 되게 한 100표 등 이를 종합해 보면 총 19,600표를 피고 신용남 후보가 부정득표를 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득표할 표를 감소시킴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차점자인 원고와 표차 12,151표를 감한 7,449표차로 도리어 피고 신용남 후보가 낙선할 것이 분명하므로 당시 공화당의 신용남 후보의 당선결정공고가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선거 전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 보궐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궐선거는 1968년 9월 24일에 실시되었는데 후보자가 지난 선거보다 2인이 늘어나서 모두 7명이 경합을 벌였다. 투표율은 82.6%에서 75.1%로 낮아졌으나, 무효표는 3,419표에서 4,933표로 증가하였다. 후보등록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정세환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손명섭 후보가 재출마하지 않고 들어갔으며 정의당의 林均錫후보, 자민당의 孫一權후보, 통일사회당의 兪永峯후보, 그리고 서울에서 3 · 4대 민의원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낙선한 통일당의 吳在泳후보가 가세하였다.

선거결과 대중당으로 나온 신용남 후보가 32,563표를 얻어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를 3,519표 차로 누르고 재승리하였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6.10.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335	76,131	3,419	79,550 (3,236)	16,785	82.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자 유 당	鄭世煥	대산면 174	대졸	제3·4대 국회의원	1,269	
민 중 당	陳斗銀	흥덕면 흥덕리	고졸	흥덕중학원장	891	
신 민 당	金相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35	대졸	국 회 의 원	27,804	
민주공화당	愼鏞南	흥덕면 사천리 69	대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9,955	당선
통일사회당	孫明燮	심원면 302	고졸	통사당중앙당임위원	570	

제7대의원 보궐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505 (5,172)	67,485	4,933	72,418 (4,166)	24,087	75.1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신 민 당	金相欽	읍내리 196	연전졸	제5·6대국회의원	29,044	
정 의 당	林均錫	부안면 433	대 졸	정의당·중앙당당위원	1,832	
대 중 당	愼鏞南	흥덕면 사천리 69	대 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2,563	당선
자 민 당	孫一權	극성면 신기리 306	대 졸		969	
민 중 당	陳斗銀	흥덕면 353	고 졸	63·67년국회의원입후보	292	
통일사회당	兪永峯	영등포구 봉천동 46	중 졸	통일당당무위원		사퇴 9.21
통 한 당	吳在泳	서울 마포동 195-2	보통교4년 중 퇴	3·4대 민의원	2,785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압승으로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들로 말미암아 선거 후 쉽게 정상화될 수 없었다. 야당은 선거가 모두 부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부만을 인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여야는 제3차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안에 합의하였다.

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관권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투·개표의 부정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거법의 주요개정내용은 지역구 15개구가 증설되는 것을 제외하면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운동의 방법, 투표용지의 형식·인쇄·배부방식, 개표 참관과 무효표의 기준 등 선거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선거제도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제3차 개정을 거친 선거법은 1969년 10월 17일의 소위 삼선개헌안(三選改憲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고 난 다음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국민투표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문제로 여 · 야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막후 접촉에서 다시 선거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었다. 제4차 개정선거법은 1970년 12월 22일 공포되었는데 역시 관권의 개입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개정의 목적이었다.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사의 기공식(起工式), 단합대회, 야유회, 종친회 등의 금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 외의 출장금지 등의 규제조항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선거구가 다시 7개구 증설되고 전국구 의석배분(議席配分)요건 중 종래의 지역구 3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개정하여 배분기준을 높였다.

제7대 국회에서 2번이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73.2%이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은 관권의 개입이 제7대 선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금력선거(金力選擧)라고 불리울 만큼 돈에 의한 매수가 극심하였다.

선거결과는 제1당의 신민당(新民黨)이 42.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역구에서 65석과 전국구 24석을 각각 얻어 지역구 153석과 전국구 51석 총 204석의 43.6%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집권당인 공화당은 48.9%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86석, 전국구에서 27석을 얻어 총 의석의 55.4%인 113석만 얻음으로써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양당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여당에 버금가는 야당의 부상은 박정희 정권에 새로운 정치적 위협이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79.9%로 전국의 수준인 73.2% 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무효투효는 3,161표로 아직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공화당의 신용남 현역의원과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安鐘燁후보가 출마하여 결국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진의종 후보는 유효투효 66,805표 중에서 40,765표를 얻어 61.0%를 차지함으로써 여유있게 당선될 수 있었다. 이로써 진의종 후보는 제3대 국회의원에 3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출마하여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이어 제4대와 제5대에 재도전하였으나 역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제8대에는 야당의 공천을 얻어 실로 오랜만에 선량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국회의원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단행된 유신(維新)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해산되어 국회의원직을 내 놓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56	188,803	87,612 (3,552)	66,805	3,161	69,966 (3,359)	17,646	79.9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愼鏞南	흥덕면 사천리 69	대 졸	제7대국회의원	23,012	34.4%
신 민 당	陳懿鍾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대 졸	상 공 부 차 관	40,765	61.0%
민 중 당	安鐘燁	대산면 산정리 467	고 졸	신민당10지구당 선 전 부 장	1,435	2.1%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이 실시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따라서 모든 정당활동이 중지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그 기능과 권한은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로 넘어갔다.

대통령선출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축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대통령의 추천에 의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헌정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접선거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사례를 남겼던 것이다.

간접선거제도의 도입 외에도 유신초기의 선거제도는 그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유신헌법이 확정·공포된 직후 제정된 6년 임기의 지역구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새로운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공영제 선거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국구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3개 선거구로 하여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지역구의 기준인 인구수 조항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역구를 나누었으나 유신 체제하에서는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획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인구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못되었다.

③ 제3공화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유신체제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④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개별적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벽보의 첨부, 선거공보의 발행, 후보자가 참가하는 합동연설회에서만 하도록 하였다.

⑤ 정당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유신체제하의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의 채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거제도는 대정당(大政黨)에게만 유리한 1구 1인의 소선거구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반선거' 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여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과 직결됨으로써 공천권을 가진 정당간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역민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준 인구수의 색채는 선거구간의 대소(大小)의 격차를 크게 벌림으로써 자칫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멋대로 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 선거구인 서울 성북구의 선거인수는 532,514명으로서의 최소 선거구인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선거인수인 107,266명보다 다섯배나 많은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온 대도시의 선거구가 큰 선거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수의 삭제는 여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72.9%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전체 38.7%의 득표율로 73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32.5%의 득표율로 52명, 민주통일당은 1.4%의 득표율로 2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19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고창군의 경우는 선거법에 의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지리적으로나 교통편 및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고창군과 정읍군이 같은 선거구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비슷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수를 보면 고창군은 81,133명이고 부안군은 75,426명으로 고창군이 8,707명이 더 많다. 이와 같이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

이 같은 선거구가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 혁명주체세력으로 실세이었던 김제출신의 장경순과 부안군의 이병옥이 김제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로 될 경우 집권당의 공천을 받을 때 둘 중의 하나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김제군과 정읍군을 같은 선거구로 묶고 고창군과 부안군을 한 선거구로 묶게 된 내력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투표율을 보면 고창군 77.5%이고 부안군은 71.7%로써 고창군의 투표율이 다소 높았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동반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부안군에서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李炳玉후보가, 고창군에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의 金相欽후보가 출마하였고, 무소속으로는 부안군 출신의 金正基후보와 고창군 출신의 陳懿鍾후보가 연고지의 표를 의식하고 출마하였다. 그러나 집권당과 제1야당의 '동반당선'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김상흠 후보는 제일 저조한 득표를 기록하여 낙선하고 말았다. 그가 낙선하고 진의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와 제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흠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만큼 알았다는 인식과 평상시에는 지역의 관리에 소홀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중앙에서 공천을 얻어 내려오는 낙하산식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식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진의종 후보는 제3 · 4 · 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표차로 계속 낙선했다가 제8대에 들어 제1야당인 신민당의 공천을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나 의원직 1년여만에 유신의 대변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해야 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정이 그를 당선되게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진의종은 한국전력이나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고창군 출신들을 등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평소에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72.9.3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6	339,458	159,559 (4,849)	116,548	2,790	119,338 (4,078)	40,221	74.8
고창군	14	78	181,262	84,133 (2,476)	63,588	1,657	65,245 (4,678)	18,888	77.5
부안군	11	68	158,196	75,526 (2,373)	52,960	1,133	54,093	21,333	7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李炳玉	부안군 부안읍 소외리 105	대 졸	6·7·8대국회의원	39,684	당선
신 민 당	金相欽	서울 종로구 가회동 27-1	대 졸	5·6대국회의원	23,664	
무 소 속	金正基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56-1	동경고등학교 운전기과졸	교 원	24,655	
무 소 속	陳懿鍾	서울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성제국대졸	제8대 국회의원	28,545	당선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놓고 제9대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선거법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지엽적인 것들만 개정되었다. 즉 선거구의 증설, 합동연설회 횟수의 증가, 투·개표 참관인의 범위 및 선정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유신체제에 관한 논쟁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1978년 12월 12일 치러졌다. 지역구도 제9대 때보다 4개가 증설되어 총 77개구였다. 선거결과 공화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4.2%인 68석을 차지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39.6%인 61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1.9%인 3석에 머물었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민당이 32.8%로서 공화당의 31.7%보다 1.1%를 앞서게 되었다.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에 있어서 앞선 것은 총선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이는 국민의식의 성장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78.10.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8	313,324	154,494 (4,980)	128,055	2,157	130,212 (4,845)	24,282	84.3
고창군	14	78	164,386	79,266 (2,359)	63,977	1,215	70,192 (4,845)	9,074	88.6
부안군	11	70	148,938	75,228 (2,261)	59,078	942	60,020	15,208	79.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李昊鍾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436	고대상과졸	은성산업(주) 대표이사	36,478	당선
신 민 당	陳懿鍾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성대 법과졸	제8. 9대 국회의원	34,831	
민주통일당	金一凡	부안군 부안읍 151-1	원광대졸	전북제6지구당 위원장	5,748	
무 소 속	金鍾洙	부안군 부안읍 263	전북법정대 정치외교과졸	신민당·중앙당 경리부장	7,346	
무 소 속	朴龍基	부안군 부안읍 431-3	남원농고졸	전 북 곡 물 협 회 장	36,941	당선
무 소 속	鄭均桓	고창군 대산면 광대리 439	성 균 관 대 정치외교과졸	無	6,675	

고창군의 경우 제9대 선거처럼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이 부안군과 한 선거구가 되어 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율은 고창군이 88.6%로서 부안군의 79.8%보다 8.8%가 높았다. 무효투표 역시 고창군과 부안군이 거의 비슷하게 1,000여 표를 기록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고창군 출신의 李昊鍾을 추천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 역시 고창군 출신의 진의종 현역의원을 추천하였다. 또한 무소속으로 鄭均桓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부안군 출신으로는 재력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무소속의 朴龍基와 역시 무소속인 金鍾洙, 그리고 민주통일당의 金一凡이 출마하여 고창군 출신이 3인, 그리고 부안군 출신이 3인으로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집권당과 제1야당이 맞붙는 결전장이어서 두 후보에 표가 고르게 분산되었으나 부안군의 경우는 박용기 후보가 부안 출신의 타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많은 득표를 할 수가 있었다.

투표결과 무소속의 박용기 후보가 36,941표를 얻어 최고 득표자로 당선되었으며 고창출신의 이호종 후보는 36,478표를 얻어 같은 고창군 출신의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보다 1,637표를 더 얻어 차점자로 당선되었다.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에 따라 12월 6일 유신헌법의 절차

에 따라 崔圭夏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출범 즉시 '위기관리정부(危機管理政府)'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 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5·17광주항쟁(光州抗爭)이라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하고 다시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계엄당국을 책임지고 있던 全斗煥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후에 10월 26일 이를 공포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가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1981년 1월 29일 공포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유신헌법에서와 같이 지역구의 기준인구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즉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②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병용하며 전국구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 2분의 1로 한다.
③ 지역구는 92개를 두되 1개 지역구에 의원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한다.
④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 수에 있어 제2당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 순으로 배분한다.
⑤ 전국구에서의 당선은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기재된 순위에 의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선거법이 지니는 특징은 선거구의 획정문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된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당선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준인구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유신체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선거구와 작은 선거구간의 크기에 있어 많은 격차가 생겼다. 예를 들면 서울의 최대 선거구인 동대문구의 인구는 511,208명인데 반하여 최소 선거구인 전북의 진안(鎭安), 무주(茂朱), 장수(長水)는 불과 100,544명으로써 동대문구의 선거구 5분의 1에 불과한 많은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대도시에 야당의 세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당이 매우 유리하도록 짜여

졌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국구 비례대표제(全國區比例代表制)라고 할 수 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제3공화국에서도 채택된 바 있으나 제5공화국에서 채택한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로 배정되었으나, 제5공화국에서는 2분의 1을 배정하여 전국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둘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제1야당에게 전체 전국구의석의 최소 50%에서 최다 3분의 2까지를 배정하고 제2당에게는 제1당이 차지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의석의 최소 3분의 2까지를 배정하여 제1당과 제2당에게 프레미엄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는 양당정치를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치 아래 제1당에게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의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나누도록 하였다. 즉 제1당에게만은 높은 프레미엄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셋째,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의석의 배정을 각 정당의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제5공화국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되었다. 많은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이 묶인 상태에서 1개의 정당이 후보를 냈으며 또한 10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참여율은 78.4%였으며, 선거 결과 집권당인 민주정의당(民主定義黨)이 35.8%의 득표율로 90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이 21.6%의 득표율로 57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이 10.3%로 7석을 얻었다. 전국구 의석은 민주정의당이 전국구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61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각각 24석과 7석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제1당인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로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전체의석의 54.7%를 차지함으로써 국회내에서의 안정세를 확보하였다.

고창군의 경우 선거구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부안군과 한 선거구로 되어 있었으나,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정읍군과 묶여 한 선거구로 되었다.

정읍군 인구수와 고창군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정읍군의 인구수는 232,741명으로 고창군의 인구수 149,080명보다 83,661명이 더 많다. 선거인 수에 있어서도 정읍군의 경우 117,898명으로 고창군의 76,411명에 비하여 41,487명이 더 많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31	189	381,821	194,309 (6,437)	156,374	1,854	158,228 (6,096)	36,081	81.4
고창군	14	78	149,080	76,411 (23,586)	61,105	684	61,789	14,622	80.9
정읍군	17	111	232,741	117,898 (4,079)	95,269	1,170	96,439 (6,096)	21,459	81.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사회당	曺秉厚	고창읍 월산리 528-2	대 졸	육군대령예편	9,473	
민주정의당	陳懿鍾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60	대 졸	제8.9대국회의원	61,443	당선
신 정 당	申正宰	서울 마포구 공덕동 29-5	대 졸	광일기업대표	3,699	
한국국민당	李昊鍾	성내면 신성리 436	대 졸	제10대국회의원	20,316	
원일민립당	李景泰	정읍군 고부면 백운리 442	장로교성서연구과졸	대한청소년신문논설위원	3,374	
민주한국당	金元基	정읍 정주읍 수성리 643-19	대 졸	제10대국회의원	41,789	당선
무 소 속	魯棟采	고창 부안면 송현리 187	대 졸	새교육신문사장	16,280	

투표참여율은 고창군이 80.9%, 정읍군이 81.8%로 비교적 비슷하다. 무효표의 경우 선거를 치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제는 1,000표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를 보면 민주정의당의 陳懿鍾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金元基 후보, 그리고 민주사회당의 曺秉厚, 신정당의 申正宰, 한국국민당의 李昊鍾, 원일민립당의 李景泰, 그리고 무소속의 魯棟采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지역별로 후보자를 살펴보면 고창군 출신으로 진의종, 조병후, 신정재, 이호종, 노동채 후보이고 정읍군 출신으로는 김원기와 이경태 후보 2인 뿐이었다.

선거결과는 민주정의당의 진의종 후보가 61,443표를 차지하여 1등으로 당선되었고 민한당의 김원기 후보가 41,789를 차지하여 2등으로 당선되었다. 후보들 중에 10,000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국민당의 이호종 후보가 20,316표를, 무소속의 노동채 후보가 16,280표를 얻었다. 이는 고창군 지역의 투표가 열전이었음을 의미한다.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11대 국회는 제12대 국회위원선거를 앞둔 1984년 7월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 주로 선거운동의 규제와 투 · 개표 참관인 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선거제도의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 직전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풀린 구야당계(舊野黨系)의 정치인들이 새롭게 조직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중심으로 하여 대거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이 35.3%의 득표율로 87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제1당의 자리를 계속 지켰고 신당인 신한민주당이 29.3%의 득표율로 50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 외에 민한당과 국민당이 19.7%와 9.2%를 각각 얻어 26석과 15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국구 의석은 이러한 지역구의 의석 수에 따라 민주정의당이 61석을, 신한민주당이 17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의 각각 9석과 5석을 배정받았다. 이 선거에서도 제1당인 민정당은 35.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이 53.6%를 차지함으로써 원내에서의 안정세를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1981년 7월 1일에 시로 승격한 정주시(井州市)를 포함하여 기존의 정읍군과 묶어 한 선거구로 되었다.

고창군의 투표율은 8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효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때 1,174표로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경합을 살펴보면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를 비롯하여 신한민주당의 이원배 후보, 그리고 제10 ·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기 후보가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정정법(政淨法)에 묶여 제11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없었던 柳甲鍾은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신민주당(新民主黨)을 창당하여 출마하였다.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년여의 의원직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에 유신으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전력과 감옥생활을 했다는 과거의 경력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서 고창의 전종천 후보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될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는 정읍과 고창에서 골고루 지지표가 나와 68,248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놓고 이원배와 김원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원배에게 낙점되자 김원기는 민주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이원배 후보가 26,314표, 김원기 후보가 26,449표를 얻음으로써 거의 대등한 지지표를 획득하였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이밖에도 한국국민당으로 출마한 유종기 후보가 있으나 그의 득표는 2,212표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종천 후보만이 고창군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정주시와 정읍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기 자신들의 지역표를 놓고 경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주시와 정읍군의 표는 분산된 반면 고창군의 표는 전종천 후보에게 몰림으로써 다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85.1.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78	135,843	75,120 (3,011)	60,185	1,174	61,357	13,761	8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한국국민당	柳鍾基	정주시 상동 498-3	대졸	동학사상연구소장	2,212	
신민주당	柳甲鍾	정주시 상동 18	〃	제8대 국회의원	37,688	당선
민주정의당	金鍾千	정주시 시기2동 170-17	〃	치안본부치안감	68,248	당선
신한민주당	李元湃	정읍군 입암면 봉양리 472	〃	정 치 인	26,314	
민주한국당	金元基	정주시 수성동 450-14	〃	제10·11대국회의원	26,449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출범한 제5공화국은 경제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87년에 들어서서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한편으로 제5공화국은 88년도에 시행하는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한다는 4 · 13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폭발하자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권후보자인 노태우는 민주화를 위한 6 · 29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에 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헌법 편재상 제5공화국의 헌법이 '정부'를 '국회'보다 앞에 놓아 두고 있으나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서는 그 반대로 '국회'를 '정부' 앞에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제5공화국에서는 7,0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 제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으로 하였으나 새 헌법에서는 5년 단임으로 하였다. 넷째, 구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의 권한을 삭제하였다. 다섯째,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구헌법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정기국회의 회기에 대해서 구헌법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새 개정헌법에서는 1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선거법에 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제5공화국 헌법이 지역구에 대하여 92개를 두고 1지역구에 의원 2인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지역구를 224개로 늘리고 1구에 1인 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전국구의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 선거법이 지역구의 2분의 1로 하였으나 개정선거법에서는 3분의 1로 감축하였다.

③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구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이 된 정당이 지역구 총의석의 50% 미만일 때는 전국구 총의석의 2분의 1을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의 정당에 그 지역구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전국구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5석 이상의 지역구를 얻은 정당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 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평균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당별로 득표상황을 보면 민주정의당이 33.96%를, 평화민주당이 19.26%를, 통일민주당 23.83%를, 신민주당이 15.59%를,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1.25%를 각각 얻었으나 나머지 정당들, 즉 민주한국당, 한국 국민당, 기독성민당, 민중의당, 사회민주당, 우리정의당, 제3세대당, 한국의통일 한국당 등은 1%미만에 머물렀

다. 그러나 무소속은 4.75%를 획득했다.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를 보면 민정당이 총 224석 중에서 87석을, 평화민주당이 54석을, 통일민주당이 46석을, 신민주공화당이 27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9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민주정의당에 38석, 평화민주당에 16석, 통일민주당에 13석, 신민주공화당에 8석이 각각 배분되었다. 결과적으로 총의석 299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125석,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야당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의석들을 확보하여 이른 바 4당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득표율에서는 통일 민주당에 4% 이상 뒤진 평화민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통일민주당을 8석이나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번 13대 선거가 이른바 지역감정에 의하여 지역성을 크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정의당은 경북 · 강원 · 충북 및 경기에서 득세한 반면, 평화민주당은 전남 · 북과 서울에서, 통일민주당은 부산과 경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은 충남과 충북 일부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평민당이 다소 우위를 차지한 반면, 민정당 · 민주당 · 공화당이 각축전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1.6%로 전국 평균의 75.8%를 상회하고 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평화민주당의 정균환 후보가 31,188표를 차지하여 총 유효투표의 54.3%를 얻음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정균환 후보가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 바 '황색바람'이라고 하는 평화민주당의 바람이 고창지역에도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이다. 전라 남 · 북도의 어느 선거구에서도 평화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유권자수가 많은 정씨 문중의 지지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9	121,679	71,420 (2,887)	57,425	856	58,281	13,139	81.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정의당	1	李昊鍾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13,159(22.9%)	
통일민주당	2	鄭在吉	〃	전 북 대 교 수	2,421(4.2%)	
평화민주당	3	鄭均桓	〃	평화당조직4국장	31,188(54.3%)	당선
무 소 속	4	魯棟采	〃	언 론 인	10,657(18.5%)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년 3월 24일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수는 지역구1,052명, 전국구 154명 등 총 1,206명으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는 총 유권자수 29,003,828명중 20,843,482명이 참여 71.9%의 투표율을 보여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민주자유당 116명, 민주당 75명, 통일국민당 2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당선되었으며, 전국구는 지역구의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자유당에 33명 민주당에 22명, 통일국민당에 7명이 배분되어 국회의원 총 당선자는 민주자유당 149명, 민주당 97명, 통일국민당 31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되었다. 그러나 공명민주당, 민중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 등록하였으나 당선된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92년 3월 30일 정당법 제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공명선거정당협의회개최 등 정당 · 후보자 · 선거운동관계자 등의 선거법준수 및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운동유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처, 그리고 언론기관, 각종사회단체, 직능단체, 학교 등의 협조 · 연계를 통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범국민적인 전개 등 공명선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평온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4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64,004명중 49,669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7.6%이며 전국 평균 (71.9%)을 5.7% 상회하고 있으며 기호 1번 민주자유당의 이호종 후보와 기호 2번인 민주당의 정균환 후보, 기호 3번 통일국민당의 노동채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규환 후보가 26,061표로 총 유효투표수의 53.2%를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제13대에 이어

황색바람의 열풍과 정균환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8	95,858	64,004	48,963	706	49,669	14,335	77.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자유당	1	이호종	대 졸	제10대국회의원	17,868(36.5%)	
민 주 당	2	정균환	〃	제13대국회의원	26,061(53.2%)	당선
통일국민당	3	노동채	〃	언 론 인	5,034(10.3%)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96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후보자 등록 수는 전국구 161명, 지역구 1,389명 총 1,550명이며, 지역구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5.5:1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4.4:1(제13대국선시 4.7:1)보다 높았으며, 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는 총 유권자수 31,488,294명(남자 15,490,279, 여자 15,998,015)으로 인구수 45,928,048('96. 3. 20 현재)의 68.6%였으며,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보면 2,484,466명(6.8%)증가 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신한국당 121명, 새정치국민회의 66명, 통합민주당 9명, 자유민주연합 41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선거법에서 포괄적 제한,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적 제한, 금지규정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따라서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연설회 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보다는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대면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 개별적인 선거운동방법이 널리 활용되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안정되고, 질서 있고 공명하게 치러졌다. 제15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59,723명중 43,236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2.39%이며, 기호1번 신한국당 김주섭, 기호2번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균환 후보가 27,575표로 총 유효 투표자수의 67%을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정균환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52	84,559	59,723	40,968	2,268	43,236	16,487	72.4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신 한 국 당	1	김주섭	대 졸	신한국당위원장	13,393	
새정치국민회의	2	정균환	대 졸	제14대국회의원	27,575	당선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0년 4월 13일(목)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정수가 26석이 감소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 기간중에 구·시·군 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하는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으며 고창,부안 선거구가 통합되어 1개 선거구로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수는 전국구 139명, 지역구 1,040명 총 1,179명이며, 지역구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4.6:1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5.5:1보다 낮았다.

투표는 총유권자수 33,482,387명(남자 16,436,931명, 여자 17,045,456명)으로 인구수 47,424,300(2000.3.22현재)의 70.6%였으며, 지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보면 1,994,093명(6.3%)증가 하였다.

개표결과는 한나라당 133명, 새천년민주당 115명, 자유민주연합 17명, 민주국민당 2명, 희망의 한국신당 1명, 무소속 5명이 당선되었다.

제16대 고창 · 부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114,266명중 73,491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64.3%이며, 기호 2번 새천년민주당의 정균환 후보가 50,873표로 총 유효투표자수의 70.6%을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고창 · 부안 선거구 투표상황

위원회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고창군	33	75,789	56,673	36,851	830	37,681	18,992	66.5
부안군	40	76,992	57,593	35,175	635	35,810	21,783	62.2
계	73	152,781	114,266	72,026	1,465	73,491	40,775	64.3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한나라당	1	이 백 용	36.10.19	초 졸	평통고창군위원장	2,288	
새 천 년 민 주 당	2	정 균 환	43. 7.23	대학원졸	국민회의 사무총장 김대중총재특보단장	50,873	당선
자유민주연 합	3	김 손	47.12.18	대 졸	김종필명예총재특보	2,878	
무 소 속	4	김 경 민	54. 6.18	대 졸	새 정 치 국 민 회 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8,241	
무 소 속	5	김 종 엽	43. 3.17	미 기 재	재경부안군향우회장 신일금속센터(주)대표	5,897	
무 소 속	6	오 인 석	52. 5.25	미 기 재	김대중대통령후보 수행비서 및 보좌역	1,849	

17)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목)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정수가 26석

이 증가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종전의 후보자등록 시점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 서로 먼저 등록을 하려던 진풍경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제16대에 이어 고창 · 부안 선거구가 통합되어 1개 선거구로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수는 전국구 190명, 지역구 1,175명이며,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4.8:1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4.6:1과 비슷했다.

투표는 총선거인수 35,596,497명(남자 17,490,343명, 여자 18,106,154명)중 총투표자수 21,581,550로 60.6%이었으며, 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시의 선거인수 33,482,387명 보다 2,114,110명(5.9%)이 많은 수이다.

개표결과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되었고, 최초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힘입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입성하였으며,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211명이 초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3~40대 의원비율이 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 비율도 13%(39명)로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17대 고창 · 부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106,145명중 65,607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61.8%이며, 우리당의 김춘진 후보가 23,328표로 총 유효투표자수의 35.6%을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고창 · 부안 선거구 투표상황

위원회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고창군	33	66,775	52,471	32,904	597	33,501	18,970	63.8
부안군	40	68,004	53,674	31,427	679	32,106	21,568	59.8
계	73	134,779	106,145	64,331	1,276	65,607	40,538	61.8

□ 후보자별 득표상황

가) 정당별 득표상황

위원회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공화당	민주노동당	그외	계		
고창군	52,471	33,503	985	8,651	17,029	326	403	963	2,979	1,262	32,598	905	18,968
부안군	53,674	32,106	1,351	7,776	13,070	431	1,721	150	5,373	1,227	31,099	1,007	21,568
계	106,145	65,609	2,336	16,427	30,099	757	2,124	1,113	8,352	2,489	63,697	1,912	40,536

나)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한나라당	1	김 준	42.06.05	대학원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한나라당 위원장	1,221	
민주당	2	정균환	43.07.23	대학원졸	국민회의 사무총장 김대중총재특보단장	19,204	
열린우리당	3	김춘진	53.01.24	대학원 박사	전 대통령 의료자문의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23,328 (36.26%)	당선
자민련	4	김영두	37.04.17	중학 중퇴	1998,2002 도의원입후보 새만금완공범전북 도민총연대공동대표	563	
무소속	5	김경민	54.06.18	대 졸	새정치국민회의정책 위원회 부의장	10,575	
무소속	6	김옥현	42.02.05	대학원 수료	사)밀알중앙회 부총재 밀알중앙회전북지구회장	1,091	
무소속	7	김주섭	10.10.01	대학원 석사	국무총리정무수석 비서관 한국담배인삼공사초대감사	7,787	
무소속	8	조민구	47.02.07	대학원 졸업	15대 국회의원 출마 한국정치·정보학회 위원	562	

□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현황(고창군)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합 계	52,471	33,501	413	11,068	11,667	192	1,572	891	6,908	193	32,904	597	18,970
부재자	1,709	1,495	2	603	487	29	86	11	228	5	1,451	44	214
고창읍1	3,226	2,044	16	656	788	5	102	43	406	7	2,023	21	1,182
고창읍2	1,685	1,046	12	325	395	7	66	24	204	1	1,034	12	639
고창읍3	1,406	865	2	272	353	3	30	41	153	5	859	6	541
고창읍4	1,958	1,232	6	459	441	3	55	31	223	2	1,220	12	726
고창읍5	1,601	984	18	308	359	2	55	34	189	6	971	13	617
고창읍6	1,944	1,260	9	380	463	5	87	98	199	6	1,247	13	684
고창읍7	1,893	1,227	11	405	501	6	51	27	209	2	1,212	15	666
소 계	15,422	10,153	76	3,408	3,787	60	532	309	1,811	34	10,017	136	5,269
고수면1	1,068	680	11	180	265	5	54	32	106	8	661	19	388
고수면2	1,434	927	14	268	350	6	60	38	168	7	911	16	507
소 계	2,502	1,607	25	448	615	11	114	70	274	15	1,572	35	895
아산면1	2,020	1,289	16	393	445	7	49	30	309	11	1,260	29	731
아산면2	963	576	11	212	199	2	13	28	90	11	566	10	387
소 계	2,983	1,865	27	605	644	9	62	58	399	22	1,826	39	1,118
무장면1	1,499	896	8	326	283	6	20	20	207	7	877	19	603
무장면2	1,702	1,037	14	415	292	4	31	26	225	7	1,014	23	665
소 계	3,201	1,933	22	741	575	10	51	46	432	14	1,891	42	1,268
공음면1	1,660	1,046	16	371	392	2	24	27	193	4	1,029	17	614
공음면2	1,237	776	7	334	231	2	25	14	153	6	772	4	461
소 계	2,897	1,822	23	705	623	4	49	41	346	10	1,801	21	1,075
상하면1	1,063	672	9	194	235	1	50	13	148	6	656	16	391
상하면2	1,501	872	13	274	238	6	120	15	169	11	846	26	629
소 계	2,564	1,544	22	468	473	7	170	28	317	17	1,505	42	1,020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해리면1	1,904	1,191	23	399	404	5	56	42	231	4	1,164	27	713
해리면2	1,333	785	19	316	241	4	29	9	156	4	778	7	548
소계	3,237	1,979	42	715	645	9	85	51	387	8	1,942	34	1,261
성송면1	1,291	851	9	343	274	10	36	30	125	4	831	20	440
성송면2	826	542	7	241	151	1	17	12	102	3	534	8	284
소계	2,117	1,393	16	584	425	11	53	42	227	7	1,365	28	724
대산면1	2,221	1,458	17	650	470	10	65	36	184	6	1,438	20	763
대산면2	1,767	1,111	17	321	475	8	38	23	199	13	1,094	17	656
소계	3,988	2,569	34	971	945	18	103	59	383	19	2,532	37	1,419
심원면1	1,411	930	16	460	260	9	38	16	100	7	906	24	481
심원면2	1,352	842	10	430	232	3	35	22	92	5	829	13	510
소계	2,763	1,772	26	890	492	12	73	38	192	12	1,735	37	991
흥덕면1	1,739	1,128	16	269	360	6	53	9	378	6	1,097	31	611
흥덕면2	1,536	901	11	170	362	7	34	12	285	4	885	16	635
소계	3,275	2,029	27	439	722	13	87	21	663	10	1,982	47	1,246
성내면1	1,383	933	6	100	281	5	31	15	469	3	910	23	450
성내면2	863	541	11	50	162	2	24	7	267	5	528	13	322
소계	2,246	1,474	17	150	443	7	55	22	736	8	1,438	36	772
신림면1	1,401	882	11	259	318	4	19	23	226	8	868	14	519
신림면2	1,008	653	12	192	246	2	13	21	157	2	645	8	355
소계	2,409	1,535	23	451	564	6	32	44	383	10	1,513	22	874
부안면1	1,644	1,093	20	297	444	8	79	34	185	4	1,071	22	551
부안면2	1,223	718	13	190	260	7	26	28	172	3	699	19	505
소계	2,867	1,811	33	487	704	15	105	62	357	7	1,770	41	1,056
잘못투입된투표지	0	18	0	6	10	0	1	0	1	0	18	0	-18

□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현황(부안군)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합계	53,674	32,106	808	8,136	11,661	371	9,003	200	879	369	31,427	679	21,568
부재자	1,637	1,354	23	248	591	35	291	5	58	18	1,269	85	283
부안읍1	2,132	1,210	44	304	475	7	306	12	39	8	1,195	15	922
부안읍2	1,775	1,034	58	314	313	14	283	6	25	8	1,021	13	741
부안읍3	1,911	1,109	35	325	390	5	298	5	24	11	1,093	16	802
부안읍4	2,383	1,359	40	329	518	5	387	41	37	9	1,329	30	1,024
부안읍5	2,286	1,359	26	386	448	18	416	5	25	16	1,340	19	927
부안읍6	3,097	1,843	29	480	637	11	612	5	45	11	1,830	13	1,254
부안읍7	1,428	814	19	203	343	5	200	5	16	7	798	16	614
소계	16,649	10,082	274	2,589	3,715	100	2,793	47	269	88	9,875	207	6,567
주산면1	1,115	665	28	101	284	11	204	4	13	7	652	13	450
주산면2	1,272	807	31	143	297	5	274	7	18	9	784	23	465
소계	2,387	1,472	59	244	581	16	478	11	31	16	1,436	36	915
동진면1	1,696	991	36	271	415	8	210	2	16	10	968	23	705
동진면2	853	544	16	149	228	4	100	3	28	4	532	12	309
동진면3	1,280	754	23	169	293	5	225	5	16	9	745	9	526
소계	3,829	2,289	75	589	936	17	535	10	60	23	2,245	44	1,540
행안면1	1,179	722	13	212	228	3	235	4	12	7	714	8	457
행안면2	1,205	694	25	159	228	5	240	1	17	10	685	9	511
소계	2,384	1,416	38	371	456	8	475	5	29	17	1,399	17	968
계화면1	1,503	812	13	188	254	8	319	8	5	5	800	12	691
계화면2	1,277	712	14	153	233	8	263	5	17	5	698	14	565
계화면3	1,196	600	6	53	285	4	213	2	19	5	587	13	596
계화면4	790	434	8	77	152	5	163	1	13	3	422	12	356
소계	4,766	2,558	41	471	924	25	958	16	54	18	2,507	51	2,208
보안면1	810	508	14	179	157	1	118	4	13	11	497	11	302
보안면2	963	599	20	199	160	10	139	7	43	5	583	16	364
보안면3	1,205	775	17	231	244	7	205	8	44	5	761	14	430
소계	2,978	1,882	51	609	561	18	462	19	100	21	1,841	41	1,096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변산면1	1,665	910	23	404	211	6	214	2	17	7	884	26	755
변산면2	866	494	16	207	96	9	133	5	8	4	478	16	372
변산면3	1,750	998	27	494	111	29	278	6	18	11	974	24	752
소계	4,281	2,402	66	1,105	418	44	625	13	43	22	2,336	66	1,879
진서면1	1,664	948	17	290	232	16	321	7	40	8	931	17	716
진서면2	465	288	10	86	86	4	80	2	15	2	285	3	177
진서면3	415	255	7	63	84	5	75	3	12	1	250	5	160
소 계	2,544	1,491	34	439	402	25	476	12	67	11	1,466	25	1,053
백산면1	1,828	1,170	18	268	519	7	271	11	22	27	1,143	27	658
백산면2	1,142	732	25	162	258	6	168	6	11	76	712	20	410
백산면3	416	298	1	92	128	2	58	1	4	8	294	4	118
소 계	3,386	2,200	44	522	905	15	497	18	37	111	2,149	51	1,186
상서면1	1,630	1,048	17	145	302	18	494	7	30	5	1,018	30	582
상서면2	824	531	8	155	181	6	166	1	7	1	525	6	293
소 계	2,454	1,579	25	300	483	24	660	8	37	6	1,543	36	875
하서면1	1,326	807	21	144	286	11	306	5	15	8	796	11	519
하서면2	1,027	558	12	122	164	9	220	4	8	6	545	13	469
하서면3	951	502	11	92	184	38	150	1	13	3	492	10	449
소 계	3,304	1,867	44	358	634	58	676	10	36	17	1,833	34	1,437
줄포면1	2,118	1,242	30	315	536	9	248	14	57	5	1,214	28	876
줄포면2	495	296	10	58	160	1	40	1	17	3	290	6	199
줄포면3	556	342	11	54	201	3	45	2	12	3	331	11	214
소 계	3,169	1,880	51	427	897	13	333	17	86	11	1,835	45	1,289
위도면1	1,270	758	6	97	562	6	27	14	21	8	741	17	512
위도면2	273	196	0	2	179	1	1	0	7	0	190	6	77
소 계	1,543	954	6	99	741	7	28	14	28	8	931	23	589
잘못투입된투표지		34	0	13	8	1	7	0	2	0	31	3	- 34

□ 역대 국회의원 선거일

역대별	공 고 일		선 거 일		선거기간(일)	임기(년)	선거구수	의원정수(명)	비 고(해 산)
	년월일	요일	년월일	요일					
초대(제헌)	48. 8.30	화	48. 5.10	월	42	2	200	200	
제 2 대	50. 4.12	수	50. 5.30	화	49	4	210	210	
제 3 대	54. 4. 7	수	54. 5.20	목	44	4	203	203	
제 4 대	58. 3.31	월	58. 5. 2	금	33	4	233	233	60.6.23
제 5 대	60. 6.27	월	60. 7.29	금	33	4	233	233	61.5.16
제 6 대	63.10.26	토	63.11.26	화	32	4	131	175	
제 7 대	67. 5. 8	월	67. 6. 8	목	32	4	131	175	
제 8 대	71. 5. 1	토	71. 5.25	화	25	4	153	204	72.10.17
제 9 대	73. 2. 9	금	73. 2.27	화	19	6	73	219	
제 10대	78.11.24	금	78.12.12	화	19	6	77	231	80.10.27
제 11대	81. 3. 5	목	81. 3.25	수	21	4	92	276	
제 12대	85. 1.23	수	85. 2.12	화	21	4	92	276	
제 13대	88. 4. 8	금	88. 4.26	화	19	4	224	299	
제 14대	92. 3. 7	토	92. 3.24	화	18	4	237	299	
제 15대	법정화		96. 4.11	목	17	4	253	299	
제 16대	법정화		2000.4.13	목	17	4	227	273	
제 17대	법정화		2004.4.15	목	14	4	243	299	

나. 참의원 선거

1952년 발췌개헌(拔萃改憲)이후 헌법은 국회를 양원(兩院)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여 오던 국회는 1958년에 치르게 될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당은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 등록절차의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두 개의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의 상정과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80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양안을 절충한 단일협상안을 작성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 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을 공포하였다.

참의원 의원 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 도(道) 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에 선거에 관한 일반사항은 민의원선거법을 준용(準用)토록 하였고 법 공포 후 1년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1960년 4 · 19를 맞이하게 되었다. 4 · 19이후 제2공화국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조항도 수정되었는데, 1958년에 마련된 참의원 선거법과 비교하여 볼 때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선거구를 서울특별시와 도(道)단위로 하고 의원정수를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인 내지 8인으로 하였으나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당별 당선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자가 해당선거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制限連記投票制)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일에 전국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제5대 민의원선거와 더불어 초대 참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대선거구제 실시로 후보자는 최저 7인에서 최고 34인까지 출마하였으며, 정치의식과 수준이 낮은 관계로 서울을 제외한 그밖의 9개의 도에서 기호 1번이 전부 당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총의석의 53.4%인 31석을 차지하였고 자유당은 겨우 4석만을 얻었다. 그 외에 사회당, 한국사회당 등이 각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무소속의 당선자는 전체의 34.5%인 20명이었다.

대선거구제와 제한연기투표제에 의하여 민주당은 39.0%의 득표로 53.4%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에 무소속은 49.3%의 득표율로 총의석의 34.5%만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전역을 2부로 나누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은 85.5%로서 전국 평균인 84.1%와 거의 비슷한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선거결과 6명

의 참의원 정원 가운데 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고창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창 출신의 강택수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얻어 참의원 부의장으로 피선된 소선규 의원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 초대 참의원선거 현황

후보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정당및 단체명	득표수	비고
계			16인			1,878,900	
梁春根	남	36	무 직	청주대졸, 육군 대령	무소속	163,181	당선 2부
姜澤秀	〃	53	〃	일본동양대졸, 전주사범교장	민주당	197,071	당선 1부
柳壽福	〃	45	〃	전주고보졸, 도의원	〃	133,392	
嚴敏永	〃	45	변호사	일본구주상대졸, 미시카고 대학원졸, 경희대법대학장	〃	133,459	당선 2부
李承穆	〃	59	무 직	明大전문부졸	무소속	53,734	
宋邦鏞	〃	47	이 사	연전졸, 제2·3대 민의원	〃	165,206	당선 1부
閔晶植	〃	61	무 직	와세다 대졸 민주당중앙상임위원	민주당		사퇴
申奎植	〃	53	민의원	와세다 대졸 제3 · 4대 민의원	자유당	93,573	
朴東根	〃	47	광 업	상고졸, 도의회 의장	무소속	53,740	
李愚植	〃	58	변호사	경성법전 졸, 대법관	〃	91,748	
金基玉	〃	45	변호사	변호사 시험합격	민주당	124,514	
李要漢	〃	61	농 업	佛專 2년 졸 제헌의원 · 전북지사	자유당	79,984	
盧兢湜	〃	56	문교재 단이사	고려대 졸, 서울시상공국장	무소속	46,668	
嚴秉學	〃	42	농 업	전주고보 4년 수료 제2대 민의원	민주당	139,983	당선 2부
蘇宣奎	〃	56	정치인	福島高 상졸 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	264,695	당선 1부
金秀學	〃	64	회 사 중 역	京都帝大 졸, 제2대 민의원	자유당	67,259	
金奉斗	〃	54	농 업	일본 明大 졸, 제헌의원	무소속	70,883	
金大容	〃	47	변호사	九州帝大 졸, 판사	〃		사퇴

□ 초대 참의원 정당별 당선 상황

구분 \ 정당별	민주당	자유당	무소속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한국독립당	기타단체	합계
후보자수	60	11	115	7	2	1	5	201
당선자수	31	4	20	1	1	–	1	58

2. 지방 선거

□ 광역 단체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결과 전라북도지사는 민주당의 유종근씨가 623,295표 득표율 67.2%를 획득하여 민주자유당의 강현욱씨를 제치고 초대 민선도지사에 당선되었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선거 역시 새정치국민회의 유종근 도지사가 단독출마 758,14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가. 도의원(광역의회 의원) 선거

1) 제1대 도의원 선거

제헌헌법은 제96조와 제97조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포함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제헌국회는 이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분권화(分權化)에 따르는 집권의 불안을 고려하여 법률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하자는 李承晩측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초대 지방자치법은 다시 동년 12월 제1차 개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시와 도 및 시 · 읍 · 면으로 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견제케 한다.
③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한다.
④ 집행기관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장, 도에는 도지사, 그리고 시 · 읍 · 면에는 각각 시 · 읍 · 면장을 두며 이들 중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 · 읍 · 면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간접 선출된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1950년 12월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韓國動亂)이 발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는 갑자기 1952년 4월 임시수도를 부산에 두고 있는 전쟁의 와중 속에서 지방의회선거를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위해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의도를 지닌 이승만의 책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의 간선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선개헌을 시도하였는데 원외자유당의 세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하여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발

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지방의회선거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쟁 중에 선거가 치루어진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자치장 선출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에 관한 조항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와 같이 선거권 연령은 만21세 이상이며, 금치산자(禁治産者)나 형집행(刑執行)중에 있는 자 등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내 동일자치단체(同一自治團體)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이면 모두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주어지며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선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 · 군 · 구의 구역으로 한다.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시.읍.면 의회 의원의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는 도규칙(道規則)으로 정하되 이 역시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④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에 의하고 후보자가 의원정수에 미달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

시군명	의원정수	자유당	민주당	한 청	국민회	무소속
계	32	16	1	6	1	8
전주시	2	1				1
군산시	2	1	1			
이리시	1	1				
진안군	2					2
금산군	2	2				
무주군	1	1				
장수군	1			1		
임실군	2	2				
고창군	4	3		1		
부안군	3	1				2
김제군	5	2		2	1	
옥구군	3	1		1		1
익산군	4	1		1		2

□ 도의원 당선 상황표

의원정수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4	64,659	54,518	51,586	3,322

□ 제1대 도의원 선거현황

후보자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정 당	득 표	비고
安基南	1914. 2.14	대산면 매산리	농 업	중졸	면 장	자유당	11,129	당선
朴東鎔	1903. 7. 5	고창읍 읍내리	〃	대졸	중학교장	〃	7,516	〃
裵祥基	1923. 2.25	고창읍 읍내리	〃	전졸	한청군부단장	한 청	7,046	〃
朴聖烈	1916. 1.12	무장면 무장리	〃	중졸	면 장	자유당	6,413	〃
鄭淳默	1906. 6.14	성송면 계당리	광 업	〃	회사사장	〃	5,021	차점
鞠勳燁	1913. 5.14	흥덕면 흥덕리	농 업	국졸	〃	무소속	3,775	
李昇淵	1916. 3.20	정주시 수성동	기 자	중졸	학 원 장	〃	4,035	
李昌奎	1906. 2. 2	심원면 연화리	농 업	〃	면 장	〃	3,496	
金在沃	1916. 1.10	전주시 전동 121	변호사	대졸	판 사	〃	3,155	

이러한 선거규정에 의하여 전선(戰線)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와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전국 도의회 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81%가 투표에 참가하여 30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4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친 반면 여당인 자유당은 의원 총수의 48%인 147석으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한청(韓靑), 노총(勞總), 국민당(國民黨)등의 친여세력을 합하면 여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에서 보는 것처럼 4인의 정수에서 자유당이 3석, 한청(韓靑)이 1석씩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원 4석을 놓고서 9인의 후보가 경쟁하여 2.3대 1의 경쟁력을 보였다.

2) 제2대 도의원 선거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선거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 간접 선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로

바뀐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이 폐지된 것이다.

이밖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선거권에 있어서 주소 요건을 6개월에서 90일로 완화하였고 둘째,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후 3년까지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는 것과 셋째, 선거구에 있어 서울특별시 · 도의회 의원선거구는 민의원 의원선거구를 분할 · 확정하여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는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투표현상이 나타났다. 도시성이 약한 충청북도에서는 의원정수 30석 중에서 1석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 전 의석을 차지하였고, 강원도의 경우도 총25석 중에서 2석을 제외한 23석을 자유당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의원정수 47명 중 자유당은 단 1석을 차지하였을 뿐이고 민주당이 40석, 무소속이 5석, 그리고 농민회가 1석을 차지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19석 중에서 4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을 뿐이고 무소속이 10석, 국민회가 3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대구의 경우 총 9석 중에서 2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고, 민주당이 6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얻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원 44석 중에서 자유당이 16석, 민주당이 6석, 그리고 나머지 22석을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제2대 도의원 선거 현황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裵祥基	남	35	고창군 고창읍 85	양조	대 졸	도의원	자유	12,139	당선
金仁錫	〃	38	고창 대산 중산리	농업	중 졸	수리조합장	자유	9,126	차점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鞠勳燁	남	43	고창 흥덕 흥덕리	농업	중 졸	회사사장	자유	5,945	당선
李昇淵	〃	40	고창 부안 오산 183	〃	정치학교졸	당 원	민주	5,256	차점
金永春	〃	41	고창 신림 법지 205	〃	경학원졸	면 장	무	1,595	
柳烈碩	〃	53	고창 신림 외화리	〃	중 졸	면의원	자유	3,130	
金利洙	〃	35	고창 부안 용산 490	〃	전문졸	교 원	무	2,073	
尹炯重	〃	43	고창 부안 사창리	〃	중 졸	면의원	〃	860	
柳濟煥	〃	36	고창 아산 목동리	〃	〃	면 장	〃	3,146	

□ 제3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朴聖烈	남	40	고창 무장 무장 64	농업	중 졸	도의원	자유	8,869	당선
金轍洙	〃	26	고창 해리 방축리	〃	대 재	〃	무	7,195	차점
李柱浹	〃	31	고창 해리 사반 187	〃	중 졸	면서기	〃	2,106	
李鍾涉	〃	44	고창 해리 라성 100	〃	대 졸	교 원	〃	3,171	

고창군의 경우 정원수에 있어서 제1대 때에는 4인이었으나 이번에는 3인으로 조정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대 때에는 고창군 전체에서 4인을 득표순으로 뽑는 중선거구제였으나 제2대 때에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창군의 선거구는 3지구로 분할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이 포함되었고, 제2선거구는 성내면, 흥덕면, 신림면, 부안면, 아산면을, 그리고 제3선거구는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공음면, 무장면을 포함하였다.

당선자들은 모두가 자유당이었다. 제1선거구에서 당선한 배상기 의원은 제1대 때에도 도의원에 당선된 관록을 가진 재선의원으로, 제2대 전라북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피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훈엽 의원은 제1대 때에는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기어코 당선을 차지하여 초선의원이 되었다.

제3선거구에서 당선한 박성열 의원은 제1대에 이어 또다시 당선되는 재선의원이 되었다. 각 후보별 득표현황은 위와 같다.

3) 제3대 도의원 선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1958년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장(長)의 선거에도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자유당은 시 · 읍 · 면장의 주민직선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1958년 12월 24일 소위 2 · 4파동시 자유당 의원들만에 의해 신국가보안법(新國家保安法)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은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 · 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1960년 8월에야 있을 예

정이기 때문에 법은 사용되지 못한 채 4 · 19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도 바꾸어짐으로써 지방자치법은 또 한차례의 손질을 요구하였다. 7 · 29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는 곧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선거관계 조항을 이전의 지방자치법의 관계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완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헌법에 규정된 시 · 읍 · 면장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② 선거권의 연령을 민의원(民議院) 및 참의원(參議院) 선거에서와 같이 만2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피선거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및 시 · 읍 · 면장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만25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경우는 만30세 이상으로 하였다.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하는 자 서식(自書式) 투표제도를 채택하였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선거에서와 같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였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선거구와 당선자 결정은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를, 시 · 읍 · 면에 있어서는 1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제3대 도의원선거가 1960년 12월 12일에 치러졌다. 선거 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투표참여율이 1차와 2차 선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1차 도의원선거의 투표율은 81%, 제2차 선거의 투표율은 86%였으나 제3차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61.4%에 머물렀다. 둘째,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전체 의석 중 민주당과 신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무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유권자 1,096,308명의 71.8%인 787,62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투표율은 제1회의 83%, 제2회의 90%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조한 것으로 점차 도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내 도의원 정수 48명에 대해 178명이 입후보하여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당선자를 당적별로 보면 민주당이 26명, 무소속이 17명, 신민당이 5명으로 되어 있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3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고창지구 출신은 鄭基洙, 朴用奭, 李仁圭, 李昇淵 등 4명이었다.

4) 제4대 도의원 선거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소야

대(與小野大)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지금까지 그 실시를 미루어 온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재연되었다.

야당의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는 제12대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를 의결하였고 이듬해인 19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 · 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 · 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 · 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 시 · 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 졌는데, 제1선거구에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등이 포함되고, 제2선거구에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3선거구에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등이 포함되었다.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의 선거결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그대로 판을 쳐 이 지역에서는 평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북도의 경우 평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정치판도를 그대로 재연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3인의 당선자 모두가 평민당원이었다.

각 선거구의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卓 正 淵	민주자유당	2,825	
崔 百 圭	평 민 당	9,606	당 선
鄭 厚 泳	무 소 속	3,915	

□ 제2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 成 宇	민주자유당	3,878	
崔 康 善	평 민 당	6,742	당 선
金 榮 埈	무 소 속	1,264	
李 相 振	무 소 속	3,250	

□ 제3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 炳 燁	민주자유당	2,625	
金 容 元	평 민 당	9,140	당 선

5) 제5대 도의원 선거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이 '94. 3. 16 제정 공포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95. 6. 27일 실시하였다.

시 · 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 · 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 · 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는 시 · 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이 허용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졌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제2선거구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제3선거구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 포함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수가 많고 선거운동의 다양화에 따라 종전의 단일선거보다 복잡, 과다한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고창군 광역의회 선거는 제3선거구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새 선거법의 정신과 깨끗한 선거운동 실천으로 평온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실천함으로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각 선거구별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金永錫	남	48	고창읍 읍내리 덕산 진흥하이츠 308	상 업	대건신학 대수료	신협이사·고창 여고육성회장	민 주 자유당	8,435	
崔百圭	〃	54	고창읍 교촌리 214	정당인	전북대	제4대 의원	민주당	9,953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奉丙大	남	56	공음면 용수리	무	전북대	새마을운동고창지부장 민주평통군협의회장	민 주 자유당	5,199	
崔康善	〃	55	상하면 하장리 934-4	상업	법 성 상 고	새마을금고이사장 민주당고창부위원장	민주당	8,527	당선

□ 제3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林東圭	남	51	신림면 가평리 431	상업	전북대	새마을운동고창지부장 국 제 농 기 계 대 표	민 주 자유당	6,198	
金容元	〃	63	흥덕면 흥덕리 357-2	수의사	전북대	농협중앙회자문위원 전북대수의대부회장	민주당	6,859	당선

6) 제6대 도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고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3개 선거구에서 2개의 선거구로 조정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 1선거구로 조정되고, 제2선거구는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으로 조정되었다.

제6대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결과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2명이 당선되었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득표율)	비고
李相福	남	46.5.13	고창읍 읍내리292	정당인	경희대 행정학과 4년중퇴	새정치국민회의상근부위원장 고창군행정자문위원	새정치 국민회의	10,698 (46.2)	당선
金永錫	〃	47.2.4	고창읍 성두리 464-2	주유소 경 영	광주대건 신학대 3년중퇴	고창신용협동조합이사 고창군문화원운영위원	무소속	6,065 (26.2)	
金容元	〃	32.9.19	흥덕면 흥덕리357-2	수의사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전라북도의회산업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무소속	6,396 (27.6)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鄭吉鎭	남	41.1.11	고창읍 교촌리 282	정당인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창남중학교교장 새정치국민회의고창군 지구당 부위원장	새정치 국민회의	11,670 (66.6)	당선
崔康善	〃	40.2.25	상하면 하장리 943-4	상 업	법성상고 졸업	전라북도의회 4,5대의원 새정치국민회의고창군 지구당 부위원장	무소속	5,858 (33.4)	

7) 제7대 도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종전의 지방선거와는 상당히 변화된 환경에서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간 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가 지구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실시되었고, 제도적으로도 시 · 도의원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역선거구의 후보자 중심에서 벗어나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 · 정책에 대한 정당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비례대표 시 · 도 의원선거에서 후보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고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제2회 때와 마찬가지로 2개의 선거구로서 제7대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결과 민주당과 무소속 각1명이 당선되었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庾炳千	남	52.11.06	고창읍 교촌리 244	축산업	영선고등 학교졸업	고창중학교축구부후원회장 고창중고16,46동창회장	민주당	9,814 (42.2)	
孫映勳	남	64.06.27	심원면 연화리 709-2	자영업	전주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졸업	해군장교(중위) 전역	무소속	1,972 (8.5)	
梁大雄	남	71.12.03	고창읍 읍내리 324-56	시민 운동가	한국외국어 대학교 졸업	한국청년연합회 지방자치센터부소장 환경운동연합녹색후보	무소속	1,045 (4.5)	
鄭吉鎭	남	41.01.11	고창읍 교촌리 285	전라북도의회 의원	고려대학교 졸업	새천년민주당고창군 부안군지구당부위원장 (현)전라북도의회 의원	무소속	10,443 (44.9)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高錫源	남	47.01.10	무장면 무장리283-1	영선중 고등학교 이사장	동국 대학교 졸업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장 (현)고창신협이사장	민주당	8,713 (51.5)	당선
宋瑩老	남	31.10.22	고창읍 읍내리654-4	무	원광 대학교 졸업	전주대일신협이사장 한국예총고창지부 제2대3대회장	무소속	2,097 (12.4)	
吳敎滿	남	55.03.24	대산면 갈마리 195	농업	영 광 고 교 졸 업	농민운동 15년	무소속	6,093 (36.0)	

나. 군의원 선거

1) 제1대 군의원 선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1990년 12월 31일 전문개정이 이루어지고, 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으로써 동년 3월 26일에 자치구 시 · 군을 포함하는 기초의원 의원선거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자치구 시 · 군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읍 · 면 · 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 · 면 · 동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매 2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구 · 시 · 군의 정수는 5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각 면 단위로 1인씩 13명과 고창읍 2인을 합쳐 15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초단체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특색은 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 지방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정당이 관여하는 선거가 되었다. 후보들은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물에 당적표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암암리에 이용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야당인 평민당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1	金相弼	남	1942. 3. 16	고창읍읍내리 590-1	상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수료	고창고 육성회장 구시포종합개발위원장	
	2	金蒼勇	〃	1933. 12. 11	고창읍읍내리 256-12	상업	고 졸	평민당 부위원장	
	3	陳南杓	〃	1947. 2. 10	고창읍교촌리 85-10	사업	전주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4	金東勳	〃	1937. 11. 2	고창읍읍내리 268-5	상업	고 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당선
고수면	1	金沃鉉	〃	1932. 5. 23	고수면장두리 139	농업	고 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2	李鍾云	〃	1946. 5. 10	고수면상평리 636	농업	고 졸	평민당고수면책	당선
	3	柳佶承	〃	1955. 3. 25	고수면남산리 439	농업	인천체육대 졸	고수면체육회부회장 고수면청년회장	
아산면	1	柳顯泰	〃	1931. 2. 1	아산면목동리 158	농업	중 졸	아산농협조합장16년역임 아산중학교육성회장	
	2	崔亨植	〃	1952. 11.18	아산면중월리 335	상업	고 졸	정읍농고학생회장 고창자동차공업사대표	당선
	3	成鎬益	〃	1955. 4. 3	아산면목동리 272	농업	대학원수료	고창군애향청년회이사 (유)대부관광사장	
무장면	1	李敦禹	〃	1934. 1.17	무장면강남리 178	농업	성균관유도회 본부경학원 수료	무장향교전교 고창군삼향지부편찬위원장 정읍검찰청청소년선도위원	당선
	2	金南圭	〃	1952. 5. 7	무장면무장리 59-2	상업	국 졸	영선중학교육성회장 체육회 부회장	
	3	鄭基杓	〃	1947. 9. 8	무장면덕림리 332	건설	고 졸	민주평통위원	
	4	林炳吉	〃	1934. 11.20	무장면송현리 295	농업	고 졸	고창군정자문위원	
	5	朴鎭洙	〃	1954. 4. 8	무장면무장리 345-2	농업	고 졸	무장면체육회총무 평민당민연청지회장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공음면	1	崔錫基	남	1947. 3.10	공음면칠암리 558-3	상업	고 졸	공음농협감사 평민당공음면조직책	당선
	2	羅佶柱	〃	1943. 10.11	공음면칠암리 588-3	사업	고 퇴	신영석재이사	
	3	金潤哲	〃	1949. 10. 3	공음면장곡리 365	농업	전북농대 졸	새마을지도자	
상하면	1	李又衍	〃	1944. 12. 8	상하면자룡리 360	농업	고 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상하면새마을협의회장	
	2	金亮鎭	〃	1948. 11. 4	상하면검산리 432	농업	고 졸	평민당고창지구당 조직부장	당선
해리면	1	金漢炳	〃	1926. 2. 6	해리면하련리 110-6	농업	고 졸	정주지청선도위원회 고창군회장	
	2	韓沖昊	〃	1957. 12.7	해리면하련리 205-2	상업	고 졸	석산고총동창회장 한겨레신문지국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3	李晩雨	〃	1954. 12.29	해리면하련리 155	수산업	방통대재	고창J.C회장 평민당해리면운영위원장	
	4	吳均鎬	〃	1945. 12.16	해리면하련리 208-6	상업	건국대학교 대학원수료	해리초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당선
성송면	1	李鍾尉	남	1955. 3. 27	성송면계당리 571-2	상업	고 퇴	평민당성송면책 항공학교설립반투위원장	
	2	潘琪鎭	〃	1935. 1. 20	성송면향산리 79-1	농업	고 졸	전새마을군지회장 새마을협의회도부회장	당선
대산면	1	趙重賢	〃	1933. 11.13	대산면매산리 175-7	농업	대학원수료	전북부산물비료 협의회장	
	2	鄭奉洙	〃	1943. 11. 9	대산면광대리 589	농업	고 졸	대성고등학교이사	
	3	具貴會	〃	1943. 10. 5	대산면연동리 601	농업	고 졸	동아일보대산지국장	
	4	金正基	〃	1940. 5. 15	대산면중산리 927	농업	고 졸	대산농협이사	
	5	金起采	〃	1949. 2. 17	대산면매산리 1079	농업	대 퇴	민주당군선거대책위원 고창경찰서행정자문위원 평통정책자문위원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심원면	1	李在洙	남	1951. 8. 21	심원면연화리 723-3	수산업	중 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 대표	등록무효
	2	劉己奉	〃	1940. 3. 28	심원면두어리 327	농업	국 졸	고창군청군정자문위원 심원농협수석이사	
	3	全鍾烈	〃	1946. 9 .26	심원면월산리 629	수산업	고 졸	산림조합감사 청소년선도위원	당선
	4	李甲鏞	〃	1934. 5. 15	심원면주산리 667	농업	고등공민수 료	1970~1987년까지 심원면 야당면책역임	
흥덕면	1	愼世宰	〃	1943. 6. 13	흥덕면사천리 53	농업	대 졸	예비군 중대장 선거인 당선	당선
	2	李伯龍	〃	1936. 10. 19	흥덕면치룡리 596-5	도정업	전남대 행정대학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고창군위원장	
성내면	1	高炳允	〃	1940. 5. 12	성내면옥제리 543	농업	고 졸	성내단협 근무 성내면 농민회장	당선
	2	朴炳燁	〃	1936. 7. 27	성내면산림리 279	농업	고 졸	성내초등학교 육성회장	
신림면	1	申東夏	〃	1942. 1. 22	신림면벽송리 57	농업	중 졸	법률신문 고창보급소장	
	2	柳吉圭	〃	1929. 12.18	신림면무림리 139	농업	전 북 대 대학원졸	신림단협장 (주)한림공영이사 평민당고창지구당운영위원	당선
	3	柳煥永	〃	1938. 2. 8	신림면무림리 124	농업	국학대학 법률과졸	신림면새마을협의회장 고창군군정자문위원	
	4	李東範	〃	1948. 4. 29	신림면덕화리 287	농업	전북대학 원재학	신림단협이사 고창군농촌지도지부회장	
부안면	1	全在準	〃	1932. 8. 5	부안면중흥리 146	상업	고 퇴	중흥정미소 운영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
	2	金海東	〃	1937. 2. 24	부안면사창리 243	도정	국 졸	고창군군정자문위원 한국양곡가공협회고창지부장 삼계농협이사	
	3	張世泳	〃	1949. 8. 29	부안면검산리 71	상업	고 졸	정주지청상임 선도위원	

2) 제2대 군의원 선거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이 '94. 3. 16제정 공포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95. 6. 27 실시하였다.

제2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7명이 입후보하여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음면의 최석기 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재선되고, 8명의 의원이 군의원에 새로 입성하였다.

□ 제2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1	金東勳	남	1937. 11. 2	고창읍읍내리 268-5	상업	고 졸	제1대 의원 농협이사.감사	
	2	李連洙	〃	1935. 4. 20	고창읍읍내리 324	광업	중 졸	제일건설 대표 고창고육성회장	
	3	陳南杓	〃	1947. 2. 10	고창읍교촌리 85-10	사업	대학원 수료	제1대 의원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4	金相弼	〃	1942. 3. 16	고창읍읍내리 590-1	상업	대학원 수료	고창고육성회장 구시포개발위원장	당선
	5	朴泰洙	〃	1938. 8. 5	고창읍신월리 356	상업	고 졸	예비군중대장 재향군인회이사	
	6	金勝鉉	〃	1946. 7. 20	고창읍읍내리 364-3	회사원	대 졸	교보생명영업소장	
고수면	1	李相勇	〃	1939. 4. 14	고수면예지리 374	농업	대 졸	고수농협조합장	
	2	李鍾云	〃	1946. 5. 10	고수면상평리 636	농업	고 졸	제1대 의원 평민당고수면책	
	3	柳佶承	〃	1955. 3. 25	고수면황산리 1-4	농업	인천체대 졸	고수면청년회장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아산면	1	姜信校	〃	1948. 4. 28	아산면하갑리 67	농업	방통대졸	예비군중대장 농업신문지국장	
	2	成鎬益	〃	1955. 4. 3	아산면목동리 158	관광	대학원 수료	제1대 의원 경찰서질서위원장	당선
무장면	1	金南圭	〃	1952. 5. 7	무장면무장리 59-2	상업	국 졸	영선중육성회장 체육회 부회장	
	2	李敦禹	〃	1934. 1. 17	무장면강남리 178	농업	경학원 수료	제1대 의원 무장향교 전교	당선
공음	1	崔錫基	〃	1947. 3. 10	공음면칠암리 558-3	상업	고 졸	제1대 의원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상하면	1	全春植	〃	1952. 11 .2	상하면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상하청년회장 농업후계자회장	
	2	魯炳烈	〃	1943. 1.22	상하면장호리 505	농업	국 졸	상하중육성회장 경찰서방범자문위원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해리면	1	韓沖昊	남	1957. 12. 7	해리면하련리 205-2	상업	고 졸	석산고총동창회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2	吳均鎬	〃	1945. 12.16	해리면하련리 208-6	상업	대학원 수료	제1대 의원 해리초중고육성회장	
	3	李晩雨	〃	1954. 12.29	해리면하련리 156	농업	방통대 재학	고창 J · C회장 해리고동문회장	당선
성송면	1	金永浩	〃	1952. 2. 22	성송면괴치리 519	농업	국 졸	성송농민회장 민주동지회사무국장	
	2	沈載圭	〃	1944. 11.16	성송면사내리 산27	농업	중 퇴	성송농협이사	
	3	李永燁	〃	1947. 12. 7	성송면계당리 246	농업	고 졸	의용소방대장 농업후계자회장	
	4	李鍾尉	〃	1955. 3. 27	성송면계당리 79	농업	대학원 수료	평민당중앙대의원 고창 J.C회장	당선
대산면	1	吳通烈	〃	1948. 8. 25	대산면매산리 182-10	농업	대 졸	모양라이온스이사 작목회장	
	2	金起采	〃	1949. 2. 17	대산면매산리 1079	농업	대 중퇴	제1대 의원 민주당선거대책위원	당선
심원면	1	朴興烈	〃	1959. 4. 6	심원면주산리 37	양식업	방통대 재학	청년회장 민족통일위원	
	2	李在洙	〃	1951. 8. 21	심원면연화리 723-3	수산	중 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 대표	
	3	全鍾烈	〃	1946. 9. 26	심원면월산리 629	수산	고 졸	제1대 의원 정읍지청상임선도위원	당선
흥덕면	1	金白洙	〃	1940. 3. 30	흥덕면오호리 151	농업	대 졸	제1대의원 흥덕농협장	
	2	元丙喜	〃	1936. 7. 25	흥덕면신송리 215	농업	전북법대 졸	농협군지부신용부장 민주당흥덕협의회장	당선
	3	崔仁圭	〃	1953. 5. 23	흥덕면흥덕리 238-11	상업	고 졸	흥덕중동창회 총무	
성내면	1	李孟根	〃	1938. 12.12	성내면양계리 210	농업	고 졸	성내면장	
	2	高炳允	〃	1940. 5. 12	성내면옥제리 543	농업	고 졸	제1대 의원 민주당중앙대의원	당선
신림면	1	柳吉圭	〃	1929. 12.18	신림면무림리 139	농업	전북대학원졸	제1대 의원 평민당고창운영위원	
	2	柳鍾潤	〃	1941. 2. 10	신림면무림리 103	농업	경영자반 수료	신림농협장4대 신림중육성회장	당선
부안면	1	全在植	〃	1930. 2. 27	부안면송현리 537	농업	국 졸	부안농협장	
	2	金俊衡	〃	1948. 10. 4	부안면중흥리 128	농업	경희대졸	제1대 의원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3) 제3대 군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된 제3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고창읍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어 고창군의 총 의원 정수는 제2대 선거 때보다 1명이 줄어든 14명으로 조정되어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1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산면 선거구 성호익 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재입성하고 8명의 의원이 바뀌었다.

□ 제3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가	金勝鉉	남	1946. 7. 20	고창읍읍내리 518-5	회사원	대 졸	아파트연합회장 병술회회장	
	나	陳南杓	〃	1947. 2. 10	고창읍교촌리 81-4	사업	대학원 수료	제1,2대 군의원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다	金相弼	〃	1942. 3. 16	고창읍읍내리 590-1	상업	대학원 수료	제2대 군의원 새정치국민회의고창읍지방자치위원장	
고수면	가	李相勇	〃	1939. 4. 14	고수면예지리 394	농업	대 졸	고수농협조합장 새정치국민회의고수면지방자치위원장	
	나	柳佶承	〃	1955. 3. 25	고수면황산리 374	농업	인천체대졸	고수면청년회장 제2대 군의원	당선
아산면		成鎬益	〃	1955. 4. 3	아산면목동리 272	관광	대학원 수료	제1,2대 군의원	무투표 당선
무장면	가	鄭在鋼	〃	1952. 1. 24	무장면목우리 535-4	농업	고 졸	리장 5년역임 고창군농지개량조합 초대민선대의원	
	나	鄭基杓	〃	1947. 9. 8	무장면덕림리 332	건설	고 졸	새정치국민회의 무장면책	당선
공음면	가	金泰煥	〃	1958. 6. 8	공음면선동리 783	축산	고 졸	공음중학교동창회장 한전철탑고창군건립반대위원장	
	나	崔錫基	〃	1947. 3. 10	공음면칠암리 558-6	농업	고 졸	제2대후반기의장 새정치국민회의공음면지방자치위원장	당선
	다	全春鎬	〃	1947. 4. 2	공음면칠암리 565-5	농업	중 퇴	공음농협조합장	
상하면	가	魯炳烈	〃	1943. 1.22	상하면장호리 505	농업	초 졸	제2대 군의원	
	나	全春植	〃	1952. 11 .2	상하면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회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해리면	가	吳均鎬	남	1945. 12. 16	해리면하련리 208-6	축산	대학원 수료	제1대 군의원 해리초중고육성회장	
	나	李晩雨	〃	1954. 12. 29	해리면하련리 155	수산	방통대 중퇴	제2대 군의원 고창 J · C회장	당선
성송면	가	李鍾尉	〃	1955. 3. 27	성송면계당리 571-2	농업	대학원 수료	제2대 군의원	
	나	沈載圭	〃	1944. 11.16	성송면사내리 산27	농업	중 퇴	고창남중학교육성회장 성송농협이사	당선
대산면	가	金起采	〃	1949. 2. 17	대산면매산리 1079	농업	대 중퇴	제1대 의원 민주당선거대책위원	당선
	나	具貴會	〃	1943. 10. 5	대산면연동리 557	농업	초 졸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대산면이장단협의회장	
	다	鄭奉洙	〃	1943. 11. 9	대산면광대리 589	농업	고 졸	대산농협이사 대산신협이사	
심원면	가	韓東洙	〃	1937. 8. 13	심원면월산리 747	농업	고 졸	심원초등학교강사 심원면부면장	당선
	나	全鍾烈	〃	1946. 9. 26	심원면월산리 629	수산	고 졸	제1,2대 군의원	
흥덕면	가	崔仁圭	〃	1953. 5. 23	흥덕면흥덕리 238-7	상업	고 졸	새정치국민회의소비자보호특위위원장	당선
	나	金白洙	〃	1940. 3. 30	흥덕면오호리 151	농업	대 졸	흥덕농협조합장 제1대 군의원	
	다	吳德相	〃	1955. 10. 25	흥덕면흥덕리 35-2	상업	고 졸	새정치국민회의 선거대책위원장	
성내면	가	李光五	〃	1955. 3. 20	성내면옥제리 539	농업	초 졸	성내초등학교육성회장 성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나	李孟根	〃	1938. 12.12	성내면양계리 210	농업	고 졸	성내면장 성내면체육회장	당선
신림면	가	柳鍾潤	〃	1941. 2. 10	신림면무림리 103	농업	중 졸	신림농협장 제2대 군의원	
	나	柳吉圭	〃	1929. 12.18	신림면무림리 139	농업	대학원졸	제1대 의원 신림단위농협장	당선
부안면	가	全在準	〃	1932. 8. 5	부안면중흥리 146	농업	고 퇴	부안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나	金俊衡	〃	1948. 10. 4	부안면중흥리 128	농업	경희대졸	제1,2대 군의원 군정자문위원	
		張世泳	〃	1949. 08.29	부안면 검산리 71	상업	흥덕중 졸업	동학혁명기념사업회 고창군이사	보궐선거당선

4) 제4대 군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의 국내 개최 기간 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가 지구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실시되었다.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된 전국 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수는 3,459개소이고 전국 의원정수는 3,485명이었는데, 자치구 · 시 · 군의 의원정수는 읍 · 면 · 동마다 1인으로 하되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 · 면 · 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 선출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고창군의 총 의원 정수는 제3대 의회와 같은 14명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4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산면 선거구 성호익 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이 재입성하고 9명의 의원이 바뀌었다.

□ 제4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가	金相弼	남	1942.03.16	고창읍 읍내리 590-1	상업	독학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고창읍지방자치위원장	당선
	나	金鍾浩	남	1955.05.05	고창읍 월곡리 586	무	고창고교 졸업	고창,아산,신림 예비군지휘관 모양성제전회사무국장	
	다	金勝鉉	남	1946.07.20	고창읍 읍내리 518-5	무	전북대학교 졸업	교보생명바와이씨 생명보험소장	
고수면	가	李鍾雲	남	1946.05.10	고수면 은사리 923	농업	조선대부속중 졸업	고창고육성회부회장 고창군의회 의원	
	나	丁鍾熅	남	1960.03.25	고수면 와촌리 119	농업	고창고등학교 졸업	새천년민주당고수면협의회장 고수초등학교운영위원장	당선
	다	柳佶承	남	1955.03.25	고수면황산리 374	농업	인천체대 졸	고창군의회 제2대3대 군의원	
아산면		成鎬益	남	1955.04.03	아산면 목동리 272	의원	전주대학교 졸업	고창군의회의원 민주당고창군부안군지구당정책실장	무투표 당선
무장면	가	金南奎	남	1952.05.07	무장면 무장리 59-2	상업	무장초교 졸업	무장 애향회장 영선고육성회장 역임	당선
	나	鄭基杓	남	1947.09.08	무장면 덕림리 332	농업	전주상업고 졸업	고창군의회 의원	
공음면	가	崔錫基	남	1947.03.10	공음면 칠암리 558-6	의원	법성상업고 졸업	고창군의회제1·2·3대 의원 평화통일자문회의고창군협의회장	당선
	나	朴景淑	남	1939.06.21	공음면 선동리 929	무	법성상업고 졸업	고창군 공음면 부면장	
상하면	가	全春植	남	1952.11.02	상하면 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상하면청년회장	당선
	나	黃益性	남	1940.10.14	상하면 자룡리 434-2	수산업	죽산중 졸업	무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해리면	가	李晩雨	남	1954. 12.29	해리면 하련리 155	수산업	방통대 중퇴	고창J · C회장 고창군의회 부의장	
	나	朴炫圭	남	1958. 08.13	해리면 동호리 532	수산업	해리고교 졸업	해리면체육회장 해리면지역개발번영회이사	당선
성송면	가	鄭永燮	남	1957 10.12	성송면 산수리 15	자영업	고창고교 졸업	고창군형우회상임부회장 성송초교총동문회부회장	
	나	沈載圭	남	1944. 11.16	성송면 사내리 산27	농업	고창중 중퇴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다	金永哲	남	1945. 09.24	성송면 사내리 산27	무	광주공고 졸업	지방공무원31년 근무 성송초등총동문회부회장	
대산면	가	金起采	남	1949. 02.17	대산면 매산리 972	농업	조선대공업 전문대중퇴	제1·2·3대 고창군 의회 의원	
	나	具貴會	남	1943. 10.05	대산면 연동리 557	농업	대산초등 학교 졸업	동아일보대산지국장 대산면이장단협의회장	
	다	鄭元煥	남	1957. 01.23	대산면 성남리 51	축산업	광주고교 졸업	축산 15년	당선
심원면	가	玄相坤	남	1949. 05.17	심원면 월산리 801-20	상업	심원초등 학교 졸업	심원면체육회장 고창군교육발전연구 회사회교육위원	
	나	朴秉鈺	남	1946. 05.19	심원면 월산리744-2	농업	정읍농림 고교 졸업	농업기술센터심원상담소장 심원초등학교21회동창회장	당선
	다	全鍾烈	남	1946. 09.26	심원면 월산리281-2	수산업	서라벌고 교 졸업	제1,2대 군의원	
흥덕면	가	崔仁圭	남	1953. 05.23	흥덕면 흥덕리238-7	의원	정읍농림 고교 졸업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장	당선
	나	金貴煥	남	1942. 01.14	흥덕면 신송리 216	농업	건국대학교 중퇴	신송새마을지도자 7년 공무원 20년	
성내면	가	李孟根	남	1938. 12.12	성내면 양계리 210	농업	정읍농공 고교 졸업	성내면장 제3대 기초의회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나	李載丁	남	1957. 12.03	성내면 양계리 205-7	수산업	독학	성내농협이사 고창군수산조정위원	당선
신림면	가	申東夏	남	1942. 01.22	신림면 벽송리 57	농업	고창중 졸업	새마을전라북도 부협의회장	
	나	李東範	남	1948. 04.29	신림면 덕화리 287	농업	흥덕중 졸업	농촌지도자 고창군 연합회장	
	다	李貴燮	남	1956. 01.26	신림면 도림리 416	농업	흥덕중 졸업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부회장 새천년민주당신림면협의회장	당선
	라	전일행	남	1941. 10.25	신림면 벽송리 318	농업	고창고 졸업	신림면장 고창군청문화체육과장	
부안면	가	張世泳	남	1949. 08.29	부안면 검산리 71	상업	흥덕중 졸업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동학혁명기념사업회고창군이사	
	나	朴永求	남	1952. 03.16	부안면 중흥리 176-2	농업	정읍고 졸업	회원농업협동조합23년근무 농협중앙회장2을고시합격	당선

다. 읍 · 면의원 선거

1) 제1대 읍 · 면의원 선거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어, 그해 12월에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1차 시 · 읍 · 면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위하여 반국회운동(反國會運動)을 전개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실시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세력기반인 원외자유당 인사들이 지방의회를 장악케 함으로써 반대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선거결과 선거인 총수의 약 90%가 선거에 참여하여 378명의 시의원과 1,115명의 읍의원, 그리고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당이 25.3%, 자유당 기간단체가 31.3%를 차지함으로써 이승만은 그의 세력기반을 시 · 읍 · 면의원 선거에서 구축할 수 있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전체의석의 0.2%밖에 차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승만의 지방의회를 통한 반 국회투쟁의 의도는 적중한 셈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의 경우 면의원 179명중에서 자유당이 84석, 국민회가 5석, 한청이 2석, 그리고 무소속이 86석을 차지하였다.

제1대 면의원들의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면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 고창읍(高敞邑)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曺必承	45	농 업	한문수업	402	무소속
朴東英	41	약국상	소 졸	381	〃
徐東鉉	30	면서기 3년	〃	364	자유당
洪鍾升	53	경찰관 3년	〃	317	무소속
金一炳	38	면서기 3년	〃	270	자유당
申吉同	49	군서기 3년	〃	260	무소속
林柱成	27	무	중학중퇴	454	〃
趙澤承	42	농 업	한문수업	414	〃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林洪祚	57	농 업	소 졸	298	국민회
金在局	39	군서기 3년	중 졸	404	무소속
徐用鉉	34	〃	〃	402	〃
金在喆	42	이장 2년	소 졸	389	〃
柳泓錫	38	농 업	무	383	〃
柳翰錫	41	〃	한문수업	282	〃

□ 고수면(古水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安秉浩	55	농 업	한문수업	270	무소속
柳龍胎	35	〃	소 졸	259	자유당
徐致容	50	〃	한문수업	219	무소속
金在吉	48	〃	〃	199	〃
金圭烈	65	〃	〃	209	〃
朴暢休	40	〃	소 졸	195	〃
金鳳會	38	〃	한문수업	182	자유당
金四春	47	〃	〃	180	무소속
趙炳學	38	〃	〃	295	〃
安錫元	58	〃	〃	225	〃
金玉植	42	〃	〃	222	자유당
柳鳳錫	42	〃	〃	201	무소속

□ 성송면(星松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鄭 琪 煥	44	농 업	소 졸	407	무소속
姜 壽 遠	41	〃	한문수업	302	〃
鄭 休 燮	44	농 업	소 졸	400	무소속
鄭 休 成	50	〃	〃	296	〃
姜 汰 文	47	〃	한문수업	318	〃
朴 今 年	47	〃	〃	218	〃
金 四 錫	40	〃	〃	215	〃
鄭 碩 均	47	〃	〃	197	〃
李 基 天	37	〃	소 졸	268	〃
金 禎 源	41	〃	중 졸	193	자유당
權 赫 鎭	40	〃	소 졸	178	무소속
庾 鳳	40	〃	〃	163	〃
鄭 基 萬	41	〃	〃	160	〃

□ 아산면(雅山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柳 濟 煥	33	농 업	중 졸	366	자유당
朴 炳 元	40	면서기 3년	소 졸	324	〃
申 東 九	49	이 장 9년	〃	299	〃
姜 元	30	농 업	중 졸	257	〃
李 寬 載	42	경찰관 3년	소 졸	무투표당선	〃
鄭 四 得	52	이 장 8 년	〃	〃	〃
金 在 烈	33	이 장 5 년	〃	〃	〃
吳 福 煥	38	농 업	〃	〃	무소속
吳 碩 根	39	구 장 8 년	한문수업	〃	〃
趙 哲 振	41	농 업	〃	〃	〃
李 基 昊	55	〃	〃	〃	〃
金 判 根	45	이 장 3 년	소 졸	〃	〃

□ 상하면(上下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金在燁	38	면서기 3년	소 졸	280	무소속
金剛容	51	농 업	〃	221	〃
金鳳彩	30	철도국 3년	중 졸	181	자유당
全白龍	41	농 업	소 졸	133	〃
李永圭	44	〃	〃	118	〃
金謹浩	65	면회원 2년	한문수업	108	〃
朴永武	34	농 업	소 졸	167	무소속
金在坤	33	면서기 3년	〃	156	〃
黃致業	47	농 업	한문수업	142	자유당
吳太性	33	이장 3년	소 졸	146	〃
徐奎鉉	36	농 업	〃	128	〃
表尙天	45	〃	한문수업	115	〃

□ 해리면(海里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金堯哲	48	농 업	소 졸	325	자유당
朴炳旭	38	〃	〃	298	〃
金永泰	35	이장 3년	〃	291	〃
金大鎭	39	농 업	한문수업	281	〃
成夏錫	38	이장 3년	소 졸	265	〃
李鉉澤	45	농 업	〃	254	〃
金喆洙	54	이장 3년	한문수업	320	〃
金彩炯	61	농 업	〃	226	무소속
金湧泰	39	〃	〃	225	자유당
金一元	39	회사원 3년	소 졸	189	〃
이영래	43	이장 11년	한문수업	무투표당선	무소속
이성윤	49	이장 5년	〃	〃	〃
李權泳	45	이장 4년	〃	〃	〃

□ 부안면(富安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鄭寅洛	33	면서기 3년	중학중퇴	296	무소속
曺璟煥	53	면서기 10년	소 졸	276	〃
尹炯重	40	면서기 3년	중 졸	241	〃
愼在晟	52	농 업	한문수업	192	자유당
姜吉秀	33	〃	소 졸	152	무소속
金日來	54	〃	한문수업	181	자유당
李殷雨	41	면서기 8년	소 졸	312	무소속
鄭東學	35	농 업	〃	223	자유당
李銓雨	30	면서기 3년	중학중퇴	192	무소속
趙東煥	45	농 업	한문수업	158	〃
安昌憲	38	〃	소 졸	195	〃
田成燁	49	이장 4년	한문수업	152	〃
趙圭晟	30	농 업	중 졸	125	〃

□ 흥덕면(興德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金相會	30	우편국 3년	중학중퇴	215	자유당
愼鏞善	55	농 업	소 졸	173	〃
朴柱燦	46	상업 8년	중 졸	152	무소속
沈甲植	43	회사원 3년	소 졸	139	〃
陳洙成	52	구장 3년	소 졸	109	자유당
李鳳吉	38	회사원 3년	〃	108	〃
崔壬煥	58	이장 12년	〃	243	〃
邊禹燮	36	이장 4년	중 졸	183	〃
李采煥	39	면서기 3년	소 졸	175	〃
金一南	43	농 업	〃	238	무소속
朴奉基	37	〃	〃	206	〃
金鍾淑	46	〃	〃	193	자유당
金潤丙	46	운전수 10년	〃	156	무소속

□ 신림면(新林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金麟秀	30	농 업	소 졸	351	한 청
朴祿求	39	〃	한문수업	286	자유당
李春植	59	〃	〃	231	무소속
趙成彩	55	〃	소 졸	225	자유당
金長洙	27	〃	〃	235	무소속
高光泰	33	〃	〃	225	〃
奇奉錫	26	〃	중학중퇴	208	자유당
李儀權	60	이장 7년	한문수업	179	무소속
金正洙	26	교원 6년	대학2년 수료	376	자유당
高光南	33	면서기 3년	중 졸	347	〃
吳濟金	39	이장 4년	한문수업	274	무소속
柳熙碩	49	면서기 3년	중 졸	218	민국당
柳鍾泰	39	농 업	소 졸	212	무소속

□ 성내면(星內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李喆洙	31	회사원 9년	중 졸	275	자유당
鄭休善	28	농 업	소 졸	183	〃
李秉魯	47	국민회 2년	〃	225	〃
黃晶九	42	농 업	중 졸	248	〃
白南燮	31	경찰관 3년	소 졸	276	〃
李秉淵	40	회사원 1년	중 졸	232	〃
白南伊	55	면협의원 1년	한문수업	206	무소속
高判吉	51	이장 12년	소 졸	166	자유당
黃鳳翼	42	농 업	〃	216	〃
魯學鍾	37	이장 3년	〃	216	〃
李載範	49	농 업	〃	139	〃
張禧東	41	경찰관 3년	중학중퇴	214	〃

□ 대산면(大山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金在卜	39	면서기 3년	소 졸	무투표당선	자유당
金在輕	40	이장 3년	한문수업	〃	〃
姜智奎	39	〃	소 졸	〃	〃
金東洽	59	〃	한문수업	〃	〃
姜永秀	53	이장 5년	〃	〃	〃
李亨錫	46	농 업	전문3년 수료	〃	〃
安圭連	35	상 업	중 졸	〃	〃
鄭桂默	40	이장 3년	〃	〃	〃
吳應鍾	35	면장 3년	〃	〃	〃
辛斗碩	59	면장 2년	한문수업	〃	〃
吳晦根	36	무 직	소 졸	무투표당선	자유당
兪東植	45	농 업	한문수업	〃	〃
奇宇燮	52	〃	〃	〃	〃

□ 무장면(茂長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金源容	54	면서기 9년	한문수업	무투표당선	자유당
金方洙	47	회사원 9년	〃	〃	〃
金正彬	47	이장 9년	〃	〃	〃
金京洙	40	회사원 8년	〃	〃	〃
李應哲	45	이장 9년	〃	〃	〃
金孟圭	37	농 업	소 졸	〃	〃
鄭基柱	36	소방대장 1년	〃	〃	〃
魯棟立	36	이장 5년	〃	〃	무소속
鄭基柱	31	농 업	〃	〃	한 청
李康洙	53	〃	〃	〃	무소속
鄭休春	36	경찰관 3년	중 졸	〃	〃
鄭棋湜	31	회사원 3년	대 졸	〃	〃
金允成	43	농 업	한문수업	〃	〃

□ 공음면(孔音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朴 允 求	31	군인 3년	소 졸	무투표당선	무소속
蔡 弘 業	35	이장 3년	〃	〃	자유당
崔 判 吉	38	이장 2년	〃	〃	무소속
金 宋 會	35	소방대장	소 졸	무투표당선	자유당
金 瑢 燮	41	이장 8년	〃	〃	〃
裵 炯 燮	52	농 업	한문수업	〃	무소속
全 根 鎬	56	〃	〃	〃	〃
金 永 琪	25	군인 8년	소 졸	〃	〃
鄭 均 澤	25	군인 3년	〃	〃	자유당
文 昌 煥	33	경찰관 3년	중 졸	〃	〃
丁 景 日	56	농 업	한문수업	〃	무소속
金 洋 奎	33	경찰관 3년	중학중퇴	〃	자유당
李 泰 鎭	44	농 업	소 졸	〃	무소속

□ 심원면(心元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鄭 在 厚	50	이장 5년	한문수업	무투표당선	무소속
金 堯 聖	45	면서기 3년	소 졸	〃	국민회
陳 世 彦	48	이장 4년	〃	〃	무소속
朴 年 喆	38	이장 5년	한문수업	〃	국민회
金 炳 友	52	면서기 5년	소 졸	〃	무소속
李 寬 憲	35	이장 1년	〃	〃	〃
金 聖 烈	49	국민회장 8년	한문수업	〃	국민회
梁 珍 涉	58	이장 3년	〃	〃	무소속
金 在 丁	55	면서기 3년	〃	〃	〃
李 昌 洙	29	이장 5년	소 졸	〃	〃
金 昌 基	40	면서기 8년	〃	〃	자유당
孫 亮 協	52	이장 5년	한문수업	〃	〃

2) 제2대 읍·면의원 선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서 간선되던 것을 주민에 의한 직선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지방자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도 폐지시켰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변경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을 뽑는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은 제1대 지방의회 때보다 높은 안정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면의회도 갈수록 그러하였다.

고창군의 읍·면장 및 의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창읍(高敞邑)의회 읍장 : 曺秉鼓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裵宗璡	남	40	상 업	소 졸	상업 10년	무소속
徐東鉉	〃	33	농 업	〃	교 원	자유당
金一炳	〃	41	토목청부업	〃	〃	〃
曺珌升	〃	45	농 업	〃	면의원	무소속
朴東浣	〃	33	〃	〃	〃	자유당
崔萬基	〃	31	회사원	중 졸	회사원	무소속
曺甲承	〃	42	농 업	소 졸	면서기	〃
林柱成	〃	30	〃	대 졸	면의원	〃
朴南燮	〃	32	〃	소 졸		자유당
金在成	〃	43	〃	〃		〃
柳泰錫	〃	28	〃	〃		무소속
嚴京燮	〃	37	〃	〃		자유당
柳泓錫	〃	37	〃	〃		〃

□ 고수면(古水面)의회 면장 : 安秉一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丁成秀	남	49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安珍煥	남	46	농 업	한문수업		〃
李公雨	〃	27	〃	중 졸	제대군인	〃
金柄斗	〃	31	〃	고 졸		〃
李鍾厚	〃	39	〃	중 졸	순 경	〃
吳鍾悳	〃	27	〃	〃	제대군인	〃
朴宗均	〃	49	〃	한문수업	이 장	〃
金點童	〃	33	〃	소 졸	순 경	〃
柳鳳錫	〃	45	〃	한문수업	면의회의장	〃
金玉植	〃	43	〃	〃	면의원	〃
安錫煥	〃	35	〃	소 졸	면서기	〃

□ 아산면(雅山面)의회 면장 : 朴良默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姜天秀	남	34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崔翼相	〃	34	상 업	〃	〃	〃
羅弘燦	〃	37	농 업	중 졸	면의회의장	자유당
劉永三	〃	33	〃	중학중퇴	이 장	〃
李俊載	〃	42	〃	소 졸	〃	〃
吳永煥	〃	26	〃	중 졸	군 인	무소속
李寬載	〃	40	〃	소 졸	면의원	자유당
林東柱	〃	42	〃	〃	이 장	〃
李江煥	〃	40	〃	한문수업		〃
趙承勳	〃	27	〃	중학중퇴	군 인	〃
金源燮	〃	31	〃	대 졸	면의원	〃
趙奉勳	〃	28	〃	소 졸		무소속

□ 무장면(茂長面)의회 면장 : 鄭吉洙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徐鍾來	남	37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金珍轍	〃	35	〃	중학중퇴	면의원	〃
金在成	〃	40	〃	소 졸	이 장	〃
朴龍柱	〃	41	〃	소 졸		〃
金 澤	〃	46	〃	중학중퇴	면서기	〃
魯棟立	〃	38	〃	소 졸	면의원	〃
金全順	〃	39	〃	소 졸	이 장	〃
孫炳一	〃	30	〃	중 졸	면서기	무소속
吳鳳煥	〃	30	〃	소 졸	이 장	자유당
鄭基湜	〃	34	〃	중 졸	면의원	〃
劉相昱	〃	33	〃	소 졸	무소속	〃
金筆煥	〃	34	〃	소 졸	자유당	〃

□ 공음면(孔音面)의회 면장 : 金基成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斗會	남	47	농 업	소 졸		자유당
崔福男	〃	39	〃	〃	면 의 원	〃
羅承男	〃	37	〃	〃	신문사원	무소속
金守根	〃	54	〃	〃		〃
李鍾現	〃	33	〃	〃	소방대장	자유당
庾庸中	〃	34	〃	대 졸	〃	무소속
鄭學燮	〃	60	〃	〃	면의회의장	자유당
崔必周	〃	35	〃	〃	부 면 장	〃
南宮炫	〃	43	〃	〃	사친회장	무소속
文昌煥	〃	63	〃	소 졸		〃
全性璘	〃	53	〃	〃		〃
崔炳奉	〃	34	〃	〃	경찰 2년	자유당

□ 상하면(上下面)의회 면장 : 房二嫺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在默	남	33	농 업	대 졸	면의원	자유당
金相得	〃	33	〃	중 졸		〃
李 蘭	〃	55	〃	소 졸	면 장	〃
金鍾五	〃	32	〃	〃	경 찰	〃
金 容	〃	30	〃	〃	면서기	〃
黃致一	〃	36	〃	〃		〃
朴永默	〃	37	〃	〃		〃
魯淵熙	〃	28	〃	〃		〃
徐奎鉉	〃	37	〃	한문수업	면의원	〃
魯鍾年	〃	29	〃	소 졸	면서기	〃
魯元塾	〃	46	〃	〃		〃

□ 해리면(海里面)의회 면장 : 金永泰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成夏徹	남	40	농 업	소 졸	면서기	민주당
李鉉三	〃	28	〃	〃	〃	무소속
李喆寧	〃	42	〃	〃	이 장	〃
金孟洙	〃	40	〃	〃	〃	자유당
殷俊杓	〃	30	〃	대 졸	회사원	무소속
成夏碩	〃	37	〃	중 졸	면의원	자유당
朴錫容	〃	41	〃	소 졸	이 장	〃
박승철	〃	37	공무원	중 졸	회사원	무소속
金一元	〃	41	농 업	소 졸	〃	자유당
李判雨	〃	36	〃	〃	이 장	무소속
李漢泳	〃	38	〃	중 졸	면서기	〃
文圭石	〃	44	〃	한문수업	이 장	〃

□ 성송면(星松面)의회 면장 : 權赫鎭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姜大玉	남	39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鄭大默	〃	34	〃	중 졸	면서기	〃
金寧海	〃	31	〃	소 졸	이 장	〃
鄭相烈	〃	30	〃	중 졸	교 원	민주당
權泰洪	〃	37	〃	한문수업	자유당	〃
周同燮	〃	27	〃	중 졸	면서기	〃
姜奉遠	〃	28	〃	소 졸	〃	〃
鄭上鐸	〃	29	〃	중 졸		〃
權赫承	〃	27	〃	〃	면서기	〃
鄭芳默	〃	27	〃	〃	〃	〃
權寧泰	〃	28	〃	〃	군서기	〃
庾炳泰	〃	28	〃	〃	이 장	〃

□ 대산면(大山面)의회 면장 : 鄭均善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龍鉉	남	40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鄭在豊	〃	40	〃	〃		〃
趙誠柱	〃	39	〃	중 졸	면의원	〃
金奉琪	〃	33	〃	소 졸	이 장	〃
鄭均昌	〃	33	〃	〃	공무원	〃
安鍾遠	〃	25	〃	중 졸		〃
卓坂洙	〃	44	〃	〃		〃
朴一南	〃	31	〃	소 졸	이 장	〃
吳應鍾	〃	53	〃	〃	면 장	〃
李炳琪	〃	33	〃	〃	신문기자	〃
辛一夏	〃	33	〃	〃	이 장	〃
鄭鳳彩	〃	34	〃		〃	〃

□ 심원면(心元面)의회 면장 : 孫亮淳

당 선 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이 미 석	남	35	염 업	중학중퇴	회사원	무소속
李 圭 采	〃	31	농 업	소 졸	〃	자유당
裵 容 淡	〃	29	〃	〃	군 인	〃
朴 鎰 求	〃	42	〃	〃	구 장	무소속
鄭 吉 萬	〃	41	회사원	〃	면서기	〃
李 行 烈	〃	34	농 업	〃	군 인	자유당
金 辰 根	〃	31	〃	〃	〃	〃
金 鍾 述	〃	37	〃	한문수업	구 장	〃
李 昌 洙	〃	31	〃	소 졸	면의원	〃
孫 奉 述	〃	36	〃	소중퇴	구 장	〃
孫 奇 [illegible]	〃	30	〃	중학중퇴	면서기	무소속

□ 흥덕면(興德面)의회 면장 : 愼鏞善

당 선 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崔 東 煥	남	30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沈 甲 植	〃	46	상 업	〃	면의원	자유당
愼 鏞 椅	〃	53	농 업	중 졸		〃
鄭 点 洙	〃	26	〃	소 졸	군 인	참전회
李 奉 喆	〃	47	〃	〃		무소속
宋 在 萬	〃	33	〃	〃	이 장	자유당
李 載 南	〃	28	〃	〃	면서기	무소속
蔡 喆 默	〃	39	〃	〃	회사원	자유당
金 鍾 淑	〃	49	〃	중학중퇴	면의원	〃
尹 平 燮	〃	31	〃	소 졸	면서기	〃
朴 奉 基	〃	39	〃	중학중퇴	〃	〃

□ 성내면(星內面)의회 면장 : 高鉉圭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南載銅	남	29	농 업	소 졸		무소속
高箕相	〃	30	〃	〃		〃
金尙永	〃	44	〃	중 졸	회사원	자유당
李國鍾	〃	45	〃	〃	면 장	〃
黃晶九	〃	45	〃	〃	면의원	〃
李點烈	〃	28	〃	소 졸	〃	〃
白南燮	〃	36	〃	〃	〃	〃
高河相	〃	45	〃	〃		〃
黃鳳翼	〃	47	〃	한문수업	〃	〃
金正義	〃	50	〃	소 졸		〃
魯學鎭	〃	38	〃	〃	〃	〃

□ 신림면(新林面)의회 면장 : 高光南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朴東來	남	42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尹炳贊	〃	30	〃	〃	경 찰	자유당
조익년	〃	29	〃	〃	면서기	무소속
朴子承	〃	25	〃	〃	〃	자유당
李南信	〃	29	〃	〃	한의사	무소속
林漢豊	〃	38	〃	한문수업	이 장	자유당
金星壽	〃	31	〃	소 졸	면의원	무소속
金基立	〃	47	〃	한문수업	이 장	〃
柳甲圭	〃	31	〃	국 졸	면의원	자유당
李三圭	〃	52	〃	소 졸	면서기	〃
吳濟金	〃	43	〃	〃	면의원	〃
金元喆	〃	29	〃	〃	대청장	〃

□ 부안면(富安面)의회 면장 : 愼在晟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金日來	남	57	농 업	한문수업	면의회의장	자유당
李銓雨	〃	35	〃	소 졸	면의원	〃
朴商圭	〃	29	〃	중학중퇴	교 관	〃
崔鏞大	〃	47	〃	소 졸	조합원	무소속
尹京重	〃	45	〃	〃	이 장	〃
이두범	〃	53	〃	한문수업		〃
李正九	〃	39	농 업	소 졸		〃
金潤成	〃	29	〃	중 졸		자유당
趙炳秀	〃	33	〃	소 졸		무소속
曺圭晟	〃	39	〃	중학중퇴	면의원	자유당
金命植	〃	44	〃	농 졸		〃
金甲童	〃	33	〃	소 졸	소방대원	〃

3) 제3대 읍·면의원 선거

허정 과도내각이 퇴진하고 뒤를 이어 들어선 민주당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당이 1958년 2·4파동 때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었던 지방자치법을 다시 직선제로 복귀하는 한편 시비점을 보완하여 4·19정신에 맞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지사 및 특별시장까지 직선토록 하였다.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에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 읍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정수 92명에 대해 입후보자는 200명으로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은 80.1%로 비교적 높았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9명, 민주당이 12명, 신민당이 1명으로 무소속이 단연 높은 진출을 보였다.

면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면의원 정수 1,763석을 놓고 3,465명의 후보자가 나서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1,350명, 민주당이 372명, 신민당이 37명, 기타 3명이 당선되어 면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단연 우세한 진출을 보였다.

읍장선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개의 읍장직을 놓고 40명이 입후보

하여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명, 민주당이 1명을 각각 당선시킴으로써 여기서도 무소속의 현저한 진출을 볼수 있다.

또한 164개의 면장직에 대해 783이 입후보하여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121명, 민주당이 40명, 신민당이 3명을 당선시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이 단연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무소속의 눈부신 진출과 민주당의 패배는 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낮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보여진다.

〈읍 · 면장〉

고창읍장 : 박은구, 공음면장 : 김기성, 심원면장 : 손기염, 부안면장 : 김부성, 상하면장 : 김상득, 흥덕면장 : 이채한, 고수면장 : 이종후, 해리면장 : 김한병, 성내면장 : 이진범, 아산면장 : 이옥재, 성송면장 : 정기만, 신림면장 : 고광남, 무장면장 : 김진철, 대산면장 정균선(이상 14명)

〈읍 · 면의원〉

고창읍 : 曺源承, 崔萬基, 裴宗璡, 劉聲鍾, 李起華, 曺玭承, 全昌燮, 曺甲承, 劉永會, 金永斗, 鄭瑩基, 曺東洙, 李洪雨

고수면 : 安甫淵, 吳鍾德, 徐致容, 丁成秀, 金壽鉉, 崔石金, 李義福, 安載燦, 趙常元, 劉永元, 李公雨,

아산면 : 羅弘燦, 金源奭, 劉世永, 姜天秀, 朴普根, 李鍾萬, 李俊載, 趙龍勳, 吳性烈, 趙榮奐, 康成煥, 尹泰祚

성송면 : 安炳玉, 柳湳錫, 康炳琪, 權泰正, 洪　淳, 周東燮, 李權鉉, 愈致旭, 姜喆秀, 鄭龍煥, 姜興錫, 柳鉉鐸

대산면 : 金容煥, 辛鍾源, 趙重賢, 金寧春, 朴在鶴, 金鍾烹, 崔炳先, 鄭昌煥, 林才衍, 丁炳樸, 金千石

무장면 : 金永來, 金在成, 柴泰洵, 李　燉, 金海成, 康休權, 鄭休重, 金筆煥, 吳鳳煥, 徐鍾來, 千內德, 金永杓,

공음면 : 金守根, 金斗會, 崔芯周, 崔判吉, 羅承男, 崔福南, 權寧述, 康庸中, 鄭泰默, 文昌煥, 李鍾現, 全性璘

상하면 : 金休源, 金在千, 孫亨澤, 表泰熙, 朱永坤, 朴寧澤, 李逞熙, 金大鎭, 金在泳

해리면 : 金在錫, 金勝坤, 金容基, 崔炳模, 李正錫, 李和範, 李錫雨, 李錫泳, 趙成夏, 李德淵, 孫俊植

심원면 : 孫　基, 裵瑢淡, 閔炳烈, 李奎采, 陳世彦, 朴年喆, 李周憲, 孫奉述, 金翔昊,

吳壽鶴
흥덕면 : 李允錫, 金在慶, 吳元鍾, 鄭在植, 金喆洙, 金珍錫, 李正錫, 李普寧
성내면 : 南栽銅, 李點烈, 白南燮, 高永植, 魯鎭河, 黃鳳翼, 朴性仁, 黃晶九, 高光得, 李鍾基, 白一鉉, 高容淑
신림면 : 柳鍾洙, 李明信, 金元喆, 吳東洙, 李正範, 金堯鎭, 李文千, 高大植, 趙孟連, 李承烈
부안면 : 金鍾連, 鄭得采, 朴東永, 金正鉉, 李圭烈, 李京九, 金容燮, 金辛洙, 金鍾述, 崔振鎬, 申鉉根, 吳然哲

3. 교육위원 선거

자유당 정권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49년 12월 교육법을 제정하고 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52년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한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위원 선거는 특별시 · 도와 시 · 군단위의 2계층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특별시와 도의 경우에는 시 · 군대표들로 구성되고, 시 · 군자치구는 면 · 읍 · 동에서 직선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시 · 군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선출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각 읍 · 면에서 직선된 1명씩,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창군 교육감은 李升永씨가 1 · 2대를, 金容純씨가 3대를 맡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각 시 · 군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의 대표와 도지사가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에서는 吳成鐸씨가 1 · 2 · 3대의 대표로 선출되어 도교육위원이 되었다. 오씨는 3대 때에 도부의장직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에 시작되어 3번 실시되었던 교육위원 선거는 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와 더불어 그 막을 내리고 깊은 잠을 자다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4월 23일에 동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재현될 수 있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법은 자유당 시절의 2단계 관할구역을 축소하여 시 · 도에만 국한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시 · 군 · 구의회에서 2인씩을 도의회에 추천해야 하는데 이때 피추천자 2인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의회는 각 시 · 군 · 구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 1인씩을 선출하는데 이때에도 전체 당선자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경력자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의 경우 유병천씨와 정규동씨가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도의회는 비교육 경력자인 유병천씨를 제1,2대 도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제3대 도교육위원은 전라북도를 4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총 9명의 도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전주시가 1선거구로 2명. 군산, 김제, 부안이 2선거구로 2명, 익산,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3선거구로 3명,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이 4선거구로 2명이 선출되었다.

□ 제1대 고창군 교육위원(고창군 자치 교육위원)

성 명	연 령	직 업	경 력
林 暢 郁	41	농 업	면장3년
金 憲 奎	31	농 업	면서기5년
金 榮 洙	38	회사원	신문기자(대졸)
成 夏 潤	38	농 업	국교후원차장
鄭 均 善	38	〃	면협의원
愼 碩 載	35	〃	면농회장
金 正 洙		농 업	면직원8년
鄭 演 洛	34	신문지국	면의회부의장
鄭 在 淳	37	농 업	소 졸
李 昌 根	36	중학교장	대 졸
金 在 寬	46	농 업	사친회장
金 奉 海	31	〃	중학중퇴
金 允 植	62	〃	면장8년
孫 葛 淳	37	〃	면의회의장

※ 제1대이후 자료구입 불가

□ 전라북도 광역 교육위원(고창지역 관련)

구분	선출년월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선 출 방 법
제1대	91.8.10	유병천	52.11.6	고창여고 서무과장 전북수영연맹부회장 전북보이스카웃연맹이사 고창교육발전연구소장	지역교육청별 기초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1인선출 1대 교육위원 정수 : 15인 2대 교육위원 정수 : 14인
제2대	95.8.18				
제3대	98.8.19	이기붕	52.7.17	대한산악전북연맹부회장 제3대교육위원회의장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선출권역별로 선출(총 4개선거구 9명 선출) 4선거구 :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2인)
		최이식	39.3.21	교육부지방교육행정국장 백제예술대교수 ※ 2000.8.14 사임	
	01.3.23	김해곤	29.4.28	군산대학교서무과장 제1,2대교육위원회의장 ※ 2001.3.23 승계	

4. 기타선거

이 항에는 국회의원, 참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으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15명의 대의원 정수를 놓고 36명이 경합하여 2.4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경합을 하였다. 14개 지구 중 어느 지역구에도 무투표 당선이 없었다는 것은 대의원 직책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 명	당 선 자	생 년 월 일	주소	비고
고 창 읍	金 判 淳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柳 錫 滿	1938. 3. 5	고창읍 읍내리 353-3	
고 수 면	安 井 會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 산 면	鄭 善 默	1938. 4. 5	아산면 용계리 80	
무 장 면	朴 成 宇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 음 면	庾 東 奕	1939. 3. 5	공음면 건동리 770	
상 하 면	魯 淵 業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55	
해 리 면	李 德 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6	
성 송 면	姜 聲 昱	1935. 6. 20	성송면 암치리 319	

선거구 명	당 선 자	생 년 월 일	주소	비고
대 산 면	康 九 丁	1929. 7. 23	대산면 회룡리 452	
심 원 면	朴 來 杓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05	
흥 덕 면	金 秉 甲	1924. 10. 3	흥덕면 치룡리 596-3	
성 내 면	李 點 烈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 림 면	高 一 圭	1930. 1. 3	신림면 무림리 452	
부 안 면	朴 知 吾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1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 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庾東蘭 1,504	金判淳 2,945	殷鳳杓 1,318	柳錫滿 2,615
고 수 면	崔炳日 1,728	安正會 2,019		
아 산 면	鄭善默 1,495	金永載 624		
무 장 면	朴成宇 2,954	鄭益煥 1,637		
공 음 면	鄭玟炫 1,364	庾東奕 1, 941	姜大振 1,268	
상 하 면	魯淵業 2,412	金在默 1,381		
해 리 면	殷浚杓 1,512	李鍾述 1,618	李德淵 1,883	
성 송 면	姜聲昱 2,109	鄭在哲 1,639		
대 산 면	趙重賢 831	姜九丁 1,937	金範起 1,846	
심 원 면	孫亮淳 1,100	金道性 990	朴來杓 1,586	
흥 덕 면	金秉甲 2,045	李康南 1,745		
성 내 면	李點烈 1,720	金泰奧 966	李守京 848	
신 림 면	高一圭 1,667	趙主熙 1,294	李孟起 1,590	
부 안 면	朴知吾 2,529	洪淳範 1,9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748) 86,541	62,574	5,379	65,953	20,588	76.2
고 창 읍	11	(421) 11,376	8,382	171	8,553	2,823	75.2
고 수 면	4	(155) 4,996	3,747	135	3,882	1,114	77.7
아 산 면	6	(226) 6,272	2,119	2,506	4,625	1,647	73.7
무 장 면	5	(261) 6,577	4,591	276	4,367	1,710	74.0
공 음 면	6	(205) 5,996	4,573	120	4,693	1,303	78.3
상 하 면	5	(134) 5,103	3,793	461	4,254	849	83.4
해 리 면	7	(169) 7,085	5,013	407	5,420	1,665	76.5
성 송 면	4	(156) 5,171	3,748	183	3,931	1,240	76.4
대 산 면	5	(220) 6,377	2,614	125	4,739	1,638	74.1
심 원 면	4	(149) 4,676	3,676	148	3,824	852	81.8
흥 덕 면	5	(148) 5,381	3,790	225	4,015	1,366	74.6
성 내 면	5	(151) 5,062	3,534	249	3,783	1,279	74.7
신 림 면	6	(207) 6,337	2,551	158	4,709	1,628	74.3
부 안 면	5	(146) 6,132	4,443	215	4,658	1,474	76.0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가가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정수 15인에 32인이 경합하여 평균 2.1대의 경쟁을 보였으나 제1대 때와는 달리 무장면, 성송면, 심원면 등 3개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각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 명	당 선 자	생 년 월 일	주소	비고
고 창 읍	曺 秉 泰	1935. 8. 21	고창읍 월암리 139	
	金 判 淳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고 수 면	安 正 會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 산 면	羅 弘 燦	1920. 12. 30	아산면 목동리 397	
무 장 면	朴 成 宇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 음 면	鄭 玟 鉉	1936. 7. 6	공음면 군유리 190	
상 하 면	魯 淵 業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43-1	
해 리 면	李 德 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5	
성 송 면	鄭 哲 默	1935. 1. 15	성송면 산수리 85	
대 산 면	金 範 起	1942. 4. 3	대산면 덕천리 145	
심 원 면	朴 來 杓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25	
흥 덕 면	李 康 南	1931. 11. 7	흥덕면 신덕리 108	
성 내 면	李 點 烈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 림 면	韓 相 薰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 안 면	朴 知 吾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 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曺秉泰 2,342	金起華 2,276	陳南權 540	金判淳 2,455
고 수 면	安井會 2,126	金相勇 1,764	林桓柱 2,120	
아 산 면	姜程熙 2,159	羅弘燦 2,440		
무 장 면	朴成宇 무투표당선			
공 음 면	金明植 657	朴泳石 1,208	鄭玟鉉 1,648	金吉洙 1,462
상 하 면	魯淵業 2,382	金焌鉉 1,908		
해 리 면	李德淵 2,707	尹錫山 2,467		
성 송 면	鄭哲默 무투표당선			
대 산 면	吳晦根 1,989	金範起 1,993	辛禹夏 1,207	
심 원 면	朴來杓 무투표당선			
흥 덕 면	金秉甲 2,002	李康南 2,171		
성 내 면	梁淳喆 1,390	李點烈 2,433		
신 림 면	高一圭 1,189	韓相薰 1,661	金永喆 1,559	
부 안 면	朴知吾 2,936	洪淳範 1,8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309) 81,941	55,005	1,931	56,936	9,640	85.5
고 창 읍	11	(368) 11,572	9,733	205	9,938	163	83.1
고 수 면	4	(155) 4,670	3,890	124	4,014	645	85.9
아 산 면	6	(169) 5,754	4,599	198	4,797	957	83.3
무 장 면	5	(158) 6,252	무 투 표 당 선				
공 음 면	6	(151) 5,756	4,975	157	5,132	624	89.1
상 하 면	5	(112) 5,063	4,290	217	4,507	556	89.0
해 리 면	7	(210) 6,631	5,174	216	5,390	1,241	81.2
성 송 면	4	(146) 4,673	무 투 표 당 선				
대 산 면	5	(167) 6,207	5,189	188	5,377	830	86.6
심 원 면	4	(88) 4,440	무 투 표 당 선				
흥 덕 면	5	(150) 5,119	4,173	174	4,347	772	81.9
성 내 면	5	(139) 4,632	3,823	95	3,918	714	81.6
신 림 면	6	(181) 5,338	4,409	160	4,569	769	85.5
부 안 면	5	(155) 5,834	4,750	197	4,947	887	84.7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제1대 통일주체 선거인 선거>

1972년 10월 17일 '유신(維新)'의 대변혁에 의하여 제4공화국은 탄생되었다.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의 전권적 수임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구 1인에게 1구 5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용하였고 철저한 선거공영제 아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1972년 12월 15일과 1978년 5월 18일 각각 제1차와 제2차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1차에서는 전국 1,630개 구에서 2,359명을 선출하였으나 2차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법을 개정하여 1,665개 구에서 2,583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기능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 지역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위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토론도 없이 투표를 진행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게 하였다. 그리고 유정회 국회의원선거도 또한 대통령의 추천에 의한 유정회 국회의원 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치루어진 대통령선거는 1972년 12월 23일과 1978년 7월 6일에 제8 · 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하였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되자 1979년 12월 6일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全斗煥)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1980년 10월 22일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신에 대통령선거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인의 임무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다른 것이 있다면 대통령선거인은 대통령을 선출할 뿐 지역선거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구와 대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의원선거를 하되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까지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추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을 초과하여 획정될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인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2인의 대통령선거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1만까지 마다 1인의 대통령선거인을 더 추가하여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1선거구의 인구가 5만을 초과하여 획정하는 경우 그 선거구의 대통령선거

인과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인은 5,277명으로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3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에 비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이지만 자유경쟁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제13대 대통령후보자별 득표현황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무표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한국국민당 金鍾哲	민권당 金義澤	민주한국당 柳致松	민주정의당 金斗煥	계			
5,277	5,271	85	26	404	4,755	5,270	1	699.9	
후보자별득표율(%)		1.6	0.5	7.7	90.2	100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	생년월일	주소	비고
고창읍	金寧完	1946. 3.22	고창읍 읍내리 223	
	金東勳	1937.11. 2	고창읍 읍내리 177	
	金正雄	1938. 6.21	고창읍 덕산리 73	
고수면	徐淳基	1948. 9. 9	고수면 부곡리 293	
	崔炳日	1931. 3.13	고수면 황산리 148	
아산면	姜程熙	1926. 9.17	아산면 하갑리 67	
	鄭金悅	1939. 6. 8	아산면 남산리 645	
무장면	鄭基杓	19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李達洙	1948. 4.18	무장면 강남리 751	
공음면	金永植	1935.12.29	공음면 칠암리 산 28	
	金明會	1938. 2.27	공음면 선동리 773	
상하면	金箕柱	1927.11. 2	상하면 장신리 1002	
	李又衍	1944.12. 8	상하면 자룡리 360	
해리면	李晶洙	1935. 7.19	해리면 사반리 179	
	李德淵	1933.11. 9	해리면 동호리 125	
성송면	金範山	1935.12.12	성송면 상금리 172	
	鄭庸煥	1928. 8.17	성송면 학천리 313	
대산면	鄭昌永	1941. 6.18	대산면 덕천리 123	
	卓正淵	1936. 4.14	대산면 율촌리 529	

선거구 명	당 선 자	생 년 월 일	주소	비고
심 원 면	韓 潤 錫	1940. 9. 1	심원면 만돌리 675	
	李 辰 奎	1940. 6. 2	심원면 주산리 170	
흥 덕 면	愼 世 宰	1943. 6.13	흥덕면 사천리 53	
	李 伯 龍	1936.10.19	흥덕면 치룡리 596-5	
성 내 면	朴 秉 燁	1936. 7.27	성내면 산림리 279	
	高 光 椽	1932. 9.12	성내면 옥제리 406	
신 림 면	尹 正 鉉	1932. 3.17	신림면 무림리 81	
	韓 相 薰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 안 면	朱 秉 來	1933. 2. 9	부안면 송현리 234	
	李 康 奉	1947.11.28	부안면 용산리 산5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 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金寧完 1,860	柳濟善 1,627	金東勳 2,480	柳濟旭 777	金正雄 2,535	
고 수 면	徐淳基 1,105	崔炳日 1,629	安在璨 774			
아 산 면	姜程熙 1,748	劉贊植 961	鄭金悅 1,450			
무 장 면	鄭基杓 1,729	李達洙 1,511	徐吉泳 1,382			
공 음 면	金永植 1,506	金明會 1,738	金大錫 1,352			
상 하 면	金箕柱 1,579	李又衍 1,453	金 洙 843			
해 리 면	李晶洙 1,896	李德淵 1,636	趙權行 1,433			
성 송 면	李永燁 990	金範山 1,465	鄭庸煥 1,180			
대 산 면	金鍾玉 906	金敏鉉 1,303	鄭昌永 1,468	卓正淵 1,313		
심 원 면	安準絃 987	韓潤錫 1,475	李辰奎 1,019			
흥 덕 면	愼世宰 1,088	李峴桓 1,005	李伯龍 1,468	李載南 528		
성 내 면	李載嫌 761	朴秉燁 926	曺秉湜 646	高光祿 867	南裁金 411	
신 림 면	尹正鉉 1,551	韓相薰 1,212	高南奎 1,167	文成烈 117		
부 안 면	朱秉來 594	李康奉 90	全在準 258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150,292	(2,284) 75,841	63,193	1,110	64,303	(109) 11,538	84.8
고창읍	11	22,260	(330) 11,239	9,279	86	9,365	(23) 1,874	83.4
고수면	4	8,355	(102) 4,144	3,503	52	3,560	(4) 584	85.9
아산면	6	10,355	(158) 5,130	4,159	82	4,241	(6) 889	80.7
무장면	5	11,297	(180) 5,664	4,622	129	4,751	(13) 913	83.9
공음면	6	10,848	(188) 5,322	4,596	81	4,677	(5) 645	87.8
상하면	5	9,138	(139) 4,721	3,875	90	3,965	(12) 756	84.0
해리면	7	11,647	(170) 5,754	4,905	127	5,092	(4) 662	88.5
성송면	4	8,587	(154) 4,297	3,635	94	3,729	(7) 568	86.8
대산면	5	12,064	(167) 6,072	4,990	74	5,064	(7) 1,008	83.4
심원면	4	8,500	(99) 3,930	3,481	57	3,538	(8) 392	90
흥덕면	5	9,411	(148) 4,947	4,089	56	4,145	(8) 802	83.8
성내면	5	8,172	(132) 4,299	3,611	43	3,654	(3) 645	85
신림면	6	9,197	(144) 4,907	4,047	55	4,102	(4) 805	83.6
부안면	5	10,461	(173) 5,415	4,336	84	4,420	(5) 995	81.6

5. 고창군 정당 활동상황

이 장에서는 고창군에서 활동했던 각 지구당의 창당과 소멸 및 변경, 그리고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서 약술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업무가 196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 민정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 10 결성신고 (대표자 金相欽)
- 1963. 4. 18 지구당 등록

□ 민주공화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 22 결성신고(대표자 金永寅)
- 1963. 5. 22 지구당 등록

□ 자유민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8. 13 결성신고(대표자 金秀學)
- 1963. 5. 22 지구당 등록

□ 추풍회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대표자 陳斗銀)
- 1963. 9. 21 지구당 등록

□ 국민의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대표자 金相欽)
- 1963. 9. 4 지구당 등록
- 1963. 9. 15 결성신고(대표자 李炯淵)
- 1963. 10. 5 지구당 등록

□ 민주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7 결성신고(대표자 朴用奭)
- 1963. 9. 12 지구당 등록

□ 신한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8. 1 결성신고(대표자 柳昇錫)
- 1963. 9. 1 지구당 등록

□ 자유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9. 16 결성신고(대표자 鄭世煥)
- 1967. 1. 23 지구당 등록

□ 민중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7. 4. 27 결성신고(대표자 陳斗銀)
- 1967. 5. 1 지구당 등록

□ 대중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8. 2. 20 결성신고(대표자 李炯淵)
- 1968. 2. 15 지구당 등록
- 1970. 1. 22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대표자 徐用鉉)
- 1970. 4. 28 지구당 등록

□ 신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9. 9. 10 결성신고(대표자 金相欽)
- 1969. 9. 18 지구당 등록

□ 통민당(가칭) : 전북 제10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1. 1. 13 결성신고(대표자 金鳳九)
- 1971. 5. 8 중선관정 제813호(71. 5. 5)중앙동 등록 취소통지에 의해 말소

□ 민주통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3. 1. 16 결성신고(대표자 李熙天)
- 1973. 1. 23 지구당 등록

□ 민주정의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15 결성신고(대표자 陳懿鍾)
- 1981. 1. 5 지구당 등록

□ 민주한국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대표자 金珍培)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민주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대표자 曺秉厚)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한국국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대표자 李昊鍾)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8 결성신고(대표자 鄭均桓)
- 1981. 1. 24 지구당 등록

□ 민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14 결성신고(대표자 崔在燮)
- 1981. 1. 24 지구당 등록

※ 1988. 3. 17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으로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고창군 위원회가 정당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음.

□ 민주정의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3. 24 결성신고(대표자 李昊鍾)
- 1988. 4. 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2 결성신고(대표자 鄭在吉)
- 1988. 10. 2 활동기간 만료로 소멸

□ 평화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6 결성신고(대표자 鄭均桓)
- 1988. 4. 1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9. 3. 10 결성신고(대표자 鄭在吉)

나. 지구당 등록상황

□ 민정당
- 1963. 4. 10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在규)
- 1965. 6. 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민주공화당
- 1963. 5. 6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炯寅)
- 1963. 8. 12 대표자 金炳鐸으로 변경 등록
- 1964. 9. 26 대표자 愼鏞南으로 변경 등록
- 1968. 8. 27 당기위원회 규정 18조(제명)에 의하여 대표자 愼鏞南 제명
- 1969. 3. 4 대표자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70. 7. 29 대표자 직무대행 金秉甲 변경 등록
- 1971. 1. 21 법개정에 따라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단 변경 등록
- 1971. 3. 11 愼鏞南으로 변경 등록
- 1971. 8. 23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73. 6. 14 정당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편 보완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玉)

- 1979. 7. 18 대표자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자유민주당

- 1963. 8. 23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秀學)
- 1964. 12. 4 민정당으로 흡수 합당

□ 국민의당

- 1963. 9. 4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63. 9. 10 중앙당의 지구당 창당취지통지에 따라 말소
- 1963. 10. 5 전북 제9지구당 (대표 李炯淵)
- 1964. 10. 8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 민주당

- 1963. 9. 12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朴鍾律)
- 1964. 12. 8 대표자를 李炯淵으로 변경 등록
- 1965. 6. 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추풍회

- 1963. 9. 21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陳斗銀)
- 1964. 3. 20 대표자 安判童으로 변경 등록
- 1967. 3. 31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지구당의 명칭이 통한당으로 변경 등록

□ 민중당

- 1965. 6. 25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민정당과 민주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함) (대표자 김상흠)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1967. 5. 1 지구당 등록 (대표자 陳斗銀)
- 1972. 9. 18 법개정에 의하여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3. 7. 2 중선관정제 607호 취소통지에 의거 말소

□ 신한당

- 1966. 9. 1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淵)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자유당

- 1967. 1. 23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鄭世煥)
- 1970. 2. 2 신민당으로 흡수 합당

□ 통한당
- 1967. 3. 31 전 추풍회가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등록 (대표자 安判童)
- 1971. 5. 4 중선관정제 780호 중앙당 등록 취소통지에 의하여 말소

□ 신민당
- 1967. 4. 7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相欽)(신한당과 민중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
- 1969. 9. 8 정당법 제39조에 의해 자진 해산
- 1969. 9. 1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70. 2. 2 자유당을 흡수 합당
- 1970. 10. 1 대표자 李元湃으로 변경 등록
- 1971. 2. 1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4. 13 대표자 陳懿鍾으로 변경 등록
- 1973. 6. 27 선거구 조정으로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개편 보완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80. 4. 29 대표자 金相欽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대중당
- 1968. 2. 15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淵)
- 1969. 12. 26 등록 취소 (법정 당원부족으로)
- 1970. 4. 2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徐甲鉉)
- 1971. 1. 16 전북 제10지구당(高敞)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5. 10 지구당 자진 해산

□ 민주통일당
- 1973. 1. 23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熙天)
- 1978. 5. 8 대표자 金一凡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민주정의당
- 1981. 1. 5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陳懿鍾)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1990. 2. 15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신설합당

□ 한국국민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昊鍾)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주한국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金珍培)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주사회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曺秉厚)
- 1981. 1.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권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崔在燮)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사회당
- 1981. 1. 2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鄭均桓)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주자유당
- 1990. 5. 15 전북 고창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 李昊鍾)
- 1994. 10. 18 대표자 변경등록 (대표자 金柱燮)

□ 신민주연합당
- 1991. 4. 13 명칭 변경 등록 신청
- 1981. 4. 15 명칭 변경 승인
- 1991. 9. 16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신설 합당

□ 민주당
- 1991. 9. 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 통일국민당
- 1992. 3. 7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1994. 7. 15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의 신설합당

□ 새한국당
- 1992. 11. 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林東甲)
- 1995. 3. 6 새한국당 민주당 흡수 합당

□ 신민당
- 1994. 7. 8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1995. 3. 31 신민당 자유민주연합 신설 합당

□ 자유민주연합
- 1995. 5. 31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2000. 3.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金 孫)

□ 새정치국민회의
- 1995. 9.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 한나라당
- 1997. 11. 24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金柱燮)
- 2000. 3. 10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李伯龍)

□ 새천년민주당
- 2000. 3. 13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 개혁국민정당
- 2002. 11. 15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催康善)

□ 국태민안호국당
- 2002. 11. 22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梁仁玉)

다. 연락소 등록상황

□ 민주정의당
- 1982. 2. 25 전북 제6지구당 고창군 연락소로 등록 (대표자 李相福)
- 1988. 3. 24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읍, 고창에서 고창지구가 분리되어 소선거구가 되면서 당지구당 연락소는 소멸 자유민주연합 (고창군연락소)
- 2000. 3.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李東煥)

□ 한나라당 (고창군연락소)
- 2002. 8. 23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林永男)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고창군의회 정수는 14명으로 3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면 선거구의 경우 지난 3대 때와 마찬가지로 1명이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고창읍 선거구의 경우 임기 중 의원이 사망하였으나 보궐 선거시(10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고 의원정수 14명 중 1명 궐원으로 의회운영 등 지장이 없는 등 제반여건상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읍면 투표구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상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 투표수)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계				
고창읍			김상필	김종호	김승현						
합계	14,493	10,291	4,547	3,611	1,914		10,072	219	4,202	71	98
부재자	421	396	183	125	71		379	17	25	94	96
투표자	14,072	9,886	4,357	3,485	1,843		9,685	201	4,186	70	98
잘못투입된투표지	0	9	7	1	0		8	1	- 9		
고수면			이종운	정종구	유길승						
합계	2,678	2,053	546	847	608		2,001	52	625	77	98
부재자	45	43	16	16	10		42	1	2	96	98
투표자	2,633	2,009	530	831	598		1,959	50	624	76	98
잘못투입된투표지	0	1	0	0	0		0	1	- 1		
아산면			성호익								
합계	3,159	무	투	표	당	선					
무장면			김남규	정기표							
합계	3,636	2,767	1,444	1,247			2,691	76	869	76	97
부재자	98	93	49	40			89	4	5	95	96
투표자	3,538	2,673	1,394	1,207			2,601	72	865	76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1	1	0			1	0	- 1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 투표수)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계				
공음면			최석기	박경숙							
합계	3,260	2,570	1,351	1,144			2,495	75	690	79	97
부재자	83	80	55	23			78	2	3	96	98
투표자	3,177	2,489	1,296	1,120			2,416	73	688	78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1	0	1			1	0	- 1		
상하면			전춘식	황익성							
합계	2,818	2,212	1,349	799			2,148	64	606	79	97
부재자	73	72	53	17			70	2	1	99	97
투표자	2,745	2,136	1,296	780			2,076	60	609	78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4	0	2			2	2	- 4		
해리면			이만우	박현규							
합계	3,506	2,717	1,253	1,389			2,642	75	789	78	97
부재자	79	74	47	26			73	1	5	94	99
투표자	3,427	2,637	1,201	1,362			2,563	74	790	77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6	5	1			6	0	- 6		
성송면			정영섭	심재규	김영철						
합계	2,371	1,859	457	757	580		1,794	65	512	78	97
부재자	65	61	12	20	26		58	3	4	94	95
투표자	2,306	1,796	445	737	552		1,734	62	510	78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2	0	0	2		2	0	- 2		
대산면			김기채	구귀회	정원환						
합계	4,488	3,548	1,385	493	1,564		3,442	106	940		
부재자	113	108	48	13	39		100	8	5	96	93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 투표수)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계				
투표자	4,375	3,431	1,334	449	1,521		3,334	97	944	78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9	3	1	4		8	1	- 9		
심원면			현상곤	박병옥	전종열						
합계	2,887	2,387	607	871	857		2,335	52	500	83	98
부재자	59	57	8	26	22		56	1	2	97	98
투표자	2,828	2,328	598	844	835		2,277	51	500	82	98
잘못투입된투표지	0	2	1	1	0		2	0	- 2		
흥덕면			최인규	김귀환							
합계	3,541	2,695	1,440	1,191			2,631	64	846	76	98
부재자	81	80	52	23			75	5	1	99	94
투표자	3,460	2,612	1,387	1,167			2,554	58	848	76	98
잘못투입된투표지	0	3	1	1			2	1	- 3		
성내면			이맹근	이재정							
합계	2,436	1,862	867	941			1,808	54	574	76	97
부재자	56	55	31	19			50	5	1	98	91
투표자	2,380	1,804	836	919			1,755	49	576	76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3	0	3			3	0	- 3		
신림면			신동하	이동범	이귀섭	전일행					
합계	2,692	2,160	183	412	990	530	2,115	45	532	80	98
부재자	69	62	8	16	22	14	60	2	7	90	97
신림면	2,623	2,098	175	396	968	516	2,055	43	525	80	98
부안면			장세영	박영구							
합계	3,160	2,404	1,123	1,208			2,331	73	756	76	97
부재자	80	70	43	23			66	4	10	88	94
투표자	3,080	2,333	1,080	1,184			2,264	69	747	76	97
잘못투입된투표지	0	1	0	1			1	0	- 1		

2. 의원 당선자 현황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자를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별 현황

구분 / 계	농 업	수산업	사 업	기 타	비 고
14	5	2	6	1	

□ 학력별 현황

구분 / 계	국 졸	중 졸	고 퇴	고 졸	대 퇴	대졸 이상	비고
14	4	1		7		2	

□ 연령별 현황

구분 / 계	36~40	41~45	46~50	51~55	56~60	60이상	비 고
14		1	3	4	3	3	

제2절 개 원



1. 제1대 개원

가. 의회 사무기구 신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91.4.4 조례 제1205호)되어 고창군의회 사무기구가 신설되었다.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행정사무관)을 두며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기능직			비고
	계	5~9급	별정직	기능직	소계	행정	행정·별정	소계	행정	행정·별정	소계	행정	소계	9급	10급	
정원	13	7		6	3	1	2	2	1	1	2	2	6	3	3	
현원	13	6	1	6	3	3		2	1	1	2	2	6	2	4	

나. 지방자치관련 조례 · 규칙 정비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관련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 완료되어 의회관련 자치법규 10종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제정공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례(6종)

1)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1992. 5. 7 조례 제1236호)
2) 고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1991. 4. 4 조례 제1205호)
3) 고창군의회공인조례(1991. 3. 30 조례 제1200호)
4)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991. 4. 12 조례 제1169호)

5)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1991. 4. 13 조례 제1201호)
6) 고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1991.5.21조례제1172호)

□ 규칙(4종)
1) 고창군의회의규칙(1991. 4. 13 조례 제629호)
2) 고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1991. 4. 4 조례 제628호)
3) 고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1991. 4. 4 조례 제627호)
4) 고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1991. 4. 13 조례 제630호)

2. 제2대 개원

가. 집회공고

총선 후 처음 개원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의회의 집회공고를 1995년 7월 10일 고창군수가 공고하였으며 집회일시는 1995년 7월 18일 10시로 공고되었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95년 7월 18일 11시에 개의한 제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5명중 소수정당 소속의원 및 무소속의원 6명이 선거에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이돈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9명이 투표에 참석 만장일치로 무장면 선거구 출신인 이돈우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도 6명이 불참한 가운데 9명이 투표에 참석 만장일치로 대산면 선거구 출신인 김기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하여 제2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97년 1월 18일 14시에 개의한 제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5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이돈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최석기 의원 12표, 이돈우 의원 2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공음면 선거구 출신인 최석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도 총 투표자 14명중 고병윤 의원 8표, 성호익 의원 6표로 성내면 선거구 출신 고병윤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하여 제2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여 민주 지방자치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되었다.

3. 제3대 개원

가.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대 고창군의회의 집회일시를 1998년 7월 9일 10시로 하여 1998년 7월 3일에 고창군수가 공고하였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1998년 7월 9일 10시에 개의한 제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류길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투표 14표중 진남표 의원이 8표, 김기채 의원이 6표를 획득하여 진남표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총투표 14표중 성호익 의원이 10표, 이맹근 의원이 4표를 획득하여 성호익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3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갖추어졌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유길승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이만우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전재준의원이 선출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2000년 7월 1일 11시에 개의한 제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3명중 12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진남표 의원 6표, 성호익 의원 6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 결과도 진남표 의원 6표, 성호익 의원 6표가 되어 결국 2000년 7월 10일 12시에 개의한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남표 의원 8표, 성호익 의원 4표로 진남표 의원이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부의장 선거는 2000년 7월 18일 12시에 개의한 제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 12표중 이만우 의원 11표, 류길규 의원이 1표를 획득하

여 이만우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3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은 최인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맹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유길승 의원이 선출되었다.

4. 제4대 개원

가.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대 고창군의회의 집회일시를 2002년 7월 9일 10시로 하여 고창군수가 2002년 7월 4일에 공고하였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2002년 7월 9일 10시에 개의한 제1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김상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투표 14표 중 성호익 의원이 13표, 기권 1표로 성호익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 14표 중 김상필 의원이 14표를 획득하여 김상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심재규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최인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전춘식 의원이 선출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2004년 6월 17일 14시에 개의한 제1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최석기 의원 8표, 정원환 의원 1표로 최석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바로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는 총 투표 14표 중 최인규 의원 8표, 정원환 의원이 1표를 획득하여 최인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은 김남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전춘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박병옥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고창군의회는 2002년 7월 9일 제4대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2002년도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로 63일간의 회의를 가졌으며, 2006년도 상반기까지 총 38회에 325일의 회의를 갖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연도별 집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집회 현황

년 도 별	구 분	개 회 수	회의일수	비 고
	합 계	38	325	
계	**임 시 회**	30	185	
	정 례 회	8	140	
	계	6	63	
2002	임 시 회	4	28	
	정 례 회	2	35	
	계	8	80	
2003	임 시 회	6	45	
	정 례 회	2	35	
	계	10	80	
2004	임 시 회	8	45	
	정 례 회	2	35	
	계	9	80	
2005	임 시 회	7	45	
	정 례 회	2	35	
	계	5	22	
2006	임 시 회	5	22	
	정 례 회			

□ 회의운영 현황

회 수	구 분	기 간	일 수	처리된 안건
제106회	임 시 회	2002. 7. 9 ~ 7.11	3	8
제107회	임 시 회	2002. 7.18 ~ 7.24	7	9
제108회	임 시 회	2002. 8. 19 ~ 8.24	6	8
제109회	정 례 회	2002. 9. 2 ~ 9. 16	15	21
제110회	임 시 회	2002.10. 28 ~ 11. 8	12	3
제111회	정 례 회	2002.12. 2 ~ 12. 21	20	41
제112회	임 시 회	2003. 1.20	1	3
제113회	임 시 회	2003. 3. 3 ~ 3. 8	6	15
제114회	임 시 회	2003. 4.21 ~ 4.30	10	9
제115회	임 시 회	2003. 6.23 ~ 6.30	8	18
제116회	정 례 회	2003. 7.10 ~ 7.24	15	14
제117회	임 시 회	2003. 9. 22 ~ 9.27	6	8
제118회	임 시 회	2003.11. 8 ~ 11.21	14	19
제119회	정 례 회	2003.12. 1 ~ 12.20	20	34
제120회	임 시 회	2004. 1.27	1	3
제121회	임 시 회	2004. 2.23 ~ 2.27	5	13
제122회	임 시 회	2004. 5.10 ~ 5.15	6	10
제123회	임 시 회	2004. 6.16 ~ 6.17	2	5
제124회	정 례 회	2004. 7.12 ~ 7.26	15	35
제125회	임 시 회	2004. 7.28 ~ 7.31	4	7
제126회	임 시 회	2004. 9.13 ~ 9.20	8	3
제127회	임 시 회	2004.10. 4 ~ 10. 8	5	8
제128회	임 시 회	2004.11.10 ~ 11.23	14	14
제129회	정 례 회	2004.12. 1 ~ 12.20	20	28
제130회	임 시 회	2005. 1.20 ~ 1.21	2	7
제131회	임 시 회	2005. 2.21 ~ 2.28	8	14
제132회	임 시 회	2005. 4.11 ~ 4.18	8	16
제133회	임 시 회	2005. 6. 7 ~ 6.10	4	17
제134회	정 례 회	2005. 7. 11 ~ 7.25	15	27
제135회	임 시 회	2005. 9. 5 ~ 9. 7	3	10
제136회	임 시 회	2005. 9.26 ~ 10. 4	9	5
제137회	임 시 회	2005.10.31 ~ 11.10	11	13
제138회	정 례 회	2005.12. 1 ~ 12.20	20	27
제139회	임 시 회	2006. 1.18 ~ 1.19	2	8
제140회	임 시 회	2006. 2.16 ~ 2.22	7	6
제141회	임 시 회	2006. 3.20 ~ 3.27	8	5
제142회	임 시 회	2006. 3.28 ~ 3.30	3	7
제143회	임 시 회	2006. 5. 9 ~ 5.10	2	24

제2절 본회의 주요의안 처리현황

1. 주요의안 처리현황

□ 주요의안 처리현황 (제4대 고창군의회)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06회 임시회 (3일간)	제1차	○ 의장 선거의 건 ○ 회기 결정의 건 ○ 부의장 선거의 건	○ 의 장 : 성호익 의원 ○ 부의장 : 김상필 의원 ○ 회기 : 2002.7.9~7.11
	제2차	○ 상임위원 선임의 건 ○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 ○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운영 6, 자치 6, 산건 7 ○ 운영 : 심재규 의원 ○ 자치 : 최인규 의원 ○ 산건 : 전춘식 의원 ○ 기타 : 좌석 배정
	제3차	○ 개원식	
제107회 임시회 (7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회기 : 2002.7.18~ 7.24 ○ 원안의결 ○ 보고 : 이강수 군수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제2차	○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제3차	○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산업경제과
	제4차	○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제5차	○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6차	○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주민자치지원단
제108회 임시회 (6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선임의 건	○ 회기 : 2002.8.19~8.24 ○ 원안 의결 ○ 설명 : 이강수 군수 ○ 위원:정종구,김남규,심재규, 박영구,최석기,정원환,박병옥, 이재정,이귀섭 ○ 위원:최인규,정종구,김남규, 박영구,박현규,전춘식, 김상필, 이재정,이귀섭
	제2차	○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수정안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 원안 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09회 정례회 (1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1년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2.9.2~9.16 ○ 원안의결 ○ 설명 : 김준희 재정과장 ○ 위원 : 최석기,심재규,정종구,김남규,정원환,박병옥,이재정,이귀섭,박영구 ○ 질문:심재규,박병옥,김남규,이귀섭,이재정,정원환,박영구,김상필
	제2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원안의결 (상임위 활동)
	제3차	○ 2002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한수원과 고창군범대위간 합의서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 ○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행정동우회고창군분회지원조례안 ○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답변 : 이강수 군수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 채택(제안설명 : 심재규 운영위원장)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 의결
제110회 임시회 (1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2.10.28~11.8 ○ 원안의결 ○ 원안의결(군민과의 대화)
제111회 정례회 (2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군민과의 대화결과 채택의 건 ○ TV난시청지역 해소촉구 결의문 채택	○ 회기 : 2002.12.2~12.21 ○ 원안의결 ○ 설명 : 이강수 군수 ○ 설명 : 이강수 군수 ○ 위원 : 최인규,박현규,정종구,심재규,김남규,김상필, 정원환,이귀섭,이재정 ○ 원안의결 ○ 원안채택(최인규 자치위원장)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11회 정례회	제2차	○ 군정질문의 건	○ 질문:성호익,이귀섭,김남규,정원환,최인규,박영구,전춘식,박병옥,이재정,김상필
		○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제3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재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제4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제5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도시과,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6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 : 이강수 군수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활동)
	제7차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원안의결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원안의결
		○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수정안 수정 의결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의결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읍성주변토지매입관련)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무장기포지토지매입관련)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농악전수관부지매입관련)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농산물유통센타부지매입관련)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산촌종합개발시설물양여관련)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동보건진료소신축관련)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농업기술센타청사신축관련)	○ 원안의결
		○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공무원직장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행정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 결
		○ 고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 의결
		○ 고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원안의결
		○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 채택	○ 원안 채택(제안설명:심재규 운영위원장)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12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회기 : 2003.1.20 ○ 원안의결 ○ 보고 : 이강수 군수
제113회 임시회 (6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3.3.3~3.8 ○ 원안의결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문화체육과
	제3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제4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해양수산과, 산림축산과, 도시과, 주민자치지원단
	제5차	○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6차	○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성내면보건소신축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면급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 고창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14회 임시회 (1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3.4.21~4.30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제2차	○ 고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위원:전춘식 · 박영구의원, 황태성, 정창진, 박갑두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15회 임시회 (8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3.6.23~6.30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설명 : 이강수 군수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 : 정종구,박현규,박영구,김남규,정원환,이귀섭,이재정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선임의 건	○ 위원:심재규,김남규,박현규,박영구,정종구,정원환,이귀섭,이재정,김상필
		○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	○ 원안채택(제안설명: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계 류
		○ 고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수정 의결
		○ 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 의결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 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계 류
		○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	○ 원안의결
		○ 고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관리계획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의결
		○ 2003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수정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원안의결
제116회 정례회 (1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3.7.10~7.24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2년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의 건	○ 설명 : 김용관 재정과장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 : 심재규,정종구,김남규,박현규,박영구,김상필,정원환,이귀섭,이재정
		○ 군정질문의 건	○ 질문 : 김상필,심재규,김남규,이재정,이귀섭,박영구,정원환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군정질문에 대한 답	○ 답변 : 이강수 군수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17회 임시회 (6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3.9.22~9.27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제2차	○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고창군계획조례안 ○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제118회 임시회 (14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3.11.8~11.21 ○ 원안의결 ○ 원안의결(군민과의 대화)
	제2차	○ 군정 주요업무보고	○ 기획정책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과
	제3차	○ 군정 주요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4차	○ 군정 주요업무보고	○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제5차	○ 군정 주요업무보고 ○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공설운동장주변 토지매입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군청 제2청사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고수면농업인상담소 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승인안 ○ 제118회 임시회 군민과의 대화 결과 채택의 건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수정의결 ○ 부 결 ○ 계 류 ○ 부 결 ○ 계 류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보고 : 심재규 운영위원장)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19회 정례회 (2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제2청사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군정질문의 건	○ 회기 : 2003.12.1~12.20 ○ 원안의결 ○ 설명 : 이강수 군수 ○ 보고 : 이강수 군수 ○ 위원 :심재규,박현규,박영구,김남규,정종구,전춘식,최석기, 박병옥,이귀섭 ○ 원안의결 ○ 질문: 전춘식,박영구,박현규,박병옥,최인규,정원환
	제2차	○ 200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기획정책실,자치행정과,주민봉사과,재정과
	제3차	○ 200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산업경제과
	제4차	○ 200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산림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과
	제5차	○ 200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도시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6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본회의 휴회의 건	○ 답변 : 이강수 군수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7차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무원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조례안 ○ 공공도서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문화예술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천변 공공용지 조성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대산해룡보건지소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안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계 류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19회 정례회	제7차	○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제120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4.1.27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 보고 : 이강수 군수
제121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4.2.23~2.27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4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4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주민봉사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제3차	○ 2004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산림축산과, 산업경제과
	제4차	○ 2004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보건소,농업기술센터
	제5차	○ 2004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건설과, 도시과
		○ 고창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공음 실내체육관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 원안의결
		○ 6.25양민희생자 위령탑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 원안의결
제122회 임시회 (6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4.5.10~5.15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원안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조례 제정조례안	○ 수정 의결
		○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	○ 원안채택(보고 : 심재규 운영위원장)
		○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최인규 · 박현규 의원, 황태성, 정창진, 박갑두
제123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4.6.16~6.17
	제2차	○ 의장 선거의 건	○ 의장 당선 : 최석기 의원
		○ 부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당선: 최인규 의원
		○ 상임위원 선임의 건	○ 운영(6): 정종구, 김남규, 박현규, 박병옥, 이재정, 박영구
			○ 자치(6): 성호익, 전춘식, 정원환, 최인규, 이재정, 박영구
			○ 산건(7): 김상필, 정종구, 김남규, 박현규, 심재규, 박병옥, 이귀섭
		○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계 류
제124회 정례회 (1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4.7.12~7.26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3년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의 건	○ 설명 : 재정과장 김용관
		○ 군정질문의 건	○ 질문 : 정원환, 박영구, 이귀섭, 이재정
		○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운영위원장: 김남규 의원
		○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	○ 자치위원장: 전춘식 의원
		○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 산건위원장: 박병옥 의원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 정원환,박영구,이재정, 김상필,이귀섭,김남규
		○ 행정사무감사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 건	○ 위원: 정원환,박영구,전춘식, 최인규, 정종구, 박현규, 심재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24회 정례회	제2차	○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제3차	○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제4차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제정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세조례중재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시포해수욕장공중화장실) ○ 고창군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 고창군 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조례제정조례안 ○ 고창군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고창군세제정조례안 ○ 고창군<고창읍>도시관리계획제정비결정안 ○ 고창군 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 ○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조례안 ○ 2004년도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수정 의결 ○ 수정 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 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 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원안의결(행정사무감사)
	제5차	○ 2003년도 결산승인의 건 ○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 채택(보고:박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답변 : 이강수 군수
제125회 임시회 (4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4.7.28~7.31 ○ 원안의결 ○ 설명 : 이강수 군수 ○ 보고 : 이강수 군수 ○ 위원:최인규,이재정,정원환,박영구,김상필,김남규,이귀섭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의결
제126회 임시회 (8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4.9.13~9.20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민과의 대화)
제127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4.10.4~10.8 ○ 원안의결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수 보건지소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군 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 고창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재정조례안 ○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27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4.11.10~11.23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제2차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 농수산물 유통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최여겸 순교지개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평촌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가평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관동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국제도시 자매결연 승인안 ○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 채택(보고 : 박현규 운영위원회 간사)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29회 정례회 (2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회기 : 2004.12.1~12.20 ○ 원안의결 ○ 위원 : 심재규,박현규,박영구, 김남규,정종구,전춘식,최석기, 박병옥,이귀섭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재정과
	제2차	○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주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제3차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본회의 휴회의 건	○ 설명 : 이강수 군수 ○ 질문 : 김남규,박현규,이귀섭,박영구,최인규,전춘식,정종구,박병옥,이재정,정원환 ○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4차	○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5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본회의 휴회의 건	○ 답변 : 이강수 군수 ○ 건설과,도시과,문화체육시설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 원안의결(위원회 활동)
	제6차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 세입세출안 ○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우체국 옆 공공청사 부지취득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반암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30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1.20~1.21 ○ 원안의결 ○ 보고 : 이강수 군수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31회 임시회 (8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2.21~2.28 ○ 원안의결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5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제3차	○ 2005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재정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제4차	○ 2005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제5차	○ 2005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도시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6차	○ 2005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고창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재난안전관리과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부 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32회 임시회 (8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4.11~4.18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32회 임시회	제2차	○ 고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 고창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	○ 원안의결
		○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	○ 원안채택(보고 : 김남규 운영위원장)
		○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정종구 · 이귀섭의원, 김덕진,황태성,허인환
제133회 임시회 (4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5.6.7~6.10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설명 : 이강수 군수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 : 전춘식, 이재정, 박영구, 정종구, 박현규, 박병옥, 이귀섭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 원안의결
		○ 고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 원안의결
		○ 평촌보건진료소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관동보건진료소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가평보건진료소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수정의결
		○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선운산 유스호스텔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수정의결
		○ 해리사반 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안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정원환,이재정,박영구, 김남규,박현규,심재규,이귀섭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34회 정례회 (15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5.7.11~7.25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2004년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의 건	○ 설명 : 재정과장 김용관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 : 전춘식, 박영구, 이재정, 정종구, 박현규, 박병옥, 이귀섭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군정질문의 건	○ 질문 : 심재규, 박영구, 이재정, 정원환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답변 : 이강수 군수
	제3차	○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의결
		○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의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보고 : 심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고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의견청취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수정 의결
		○ 고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동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소규모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에 관한 조례안	○ 수정 의결
		○ 고창읍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의견 청취안	○ 원안의결
		○ 한국식품연구회 고창군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채택(제안 : 김남규 운영위원장)
		○ 한국농업전문학교 고창군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채택(제안 : 전춘식 자치행정위원장)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35회 임시회 (3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9.5~9.7 ○ 원안의결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부 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36회 임시회 (9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9.26~10.4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제2차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보고 : 박현규 운영위원회 간사)
제137회 임시회 (11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10.31~11.10 ○ 원안의결 ○ 설명 : 이강수 군수 ○ 위원 : 전춘식, 이재정, 박영구, 김남규, 심재규, 박병옥, 이귀섭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자룡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용반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상암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수정안 원안 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38회 정례회 (2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5.12.1~12.20 ○ 원안의결 ○ 위원 : 전춘식,최인규,정원환,박영구,박병옥,정종구,김남규,심재규,이귀섭 ○ 설명 : 이강수 군수 ○ 질문:김남규,정종구,전춘식,박현규,박병옥,이재정,이귀섭,박영구,정원환,최인규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200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기획감사실,재난안전관리과,자치행정과,재정과,환경위생과,주민봉사과
	제3차	○ 200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산업경제과
	제4차	○ 200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제5차	○ 200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본회의 휴회의 건	○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사회복지과 ○ 답변 : 이강수 군수 ○ 원안의결(위원회 활동)
	제6차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성송 보건지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공중보건의사숙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대체재산 조성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원안의결 ○ 수정안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 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39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6.1.18~1.19 ○ 원안의결 ○ 보고 : 이강수 군수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복분자시험장 육종자원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 ○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40회 임시회 (7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6.2.16~2.22 ○ 원안의결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복분자홍보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41회 임시회 (8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주요사업장 방문 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6.3.20~3.27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주요사업장방문)
	제2차	○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	○ 원안 채택(보고 : 김남규 운영위원장)
제142회 임시회 (3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 2006.3.28~3.30 ○ 원안의결 ○ 설명 : 이강수 군수 ○ 위원 : 전춘식, 이재정, 박영구, 정종구, 김남규, 심재규, 이귀섭 ○ 원안의결(위원회 활동)
	제2차	○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의결 ○ 수정안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43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06.5.9~5.10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의결(상임위 활동)
	제2차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수정)안	○ 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고창 문화예술회관 신축변경의 건) 승인안	○ 계 류
		○ 공유재산 관리계획(고창 공공도서관 신축변경의 건) 승인안	○ 계 류
		○ 고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사유재산 상호교환 군 주)선운레이크밸리의 건) 승인안	○ 계 류
		○ 공유재산 관리계획(군유(공동묘지)·사유재산 부지 교환의 건) 승인안	○ 계 류
		○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고창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복지급여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복분자주향토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200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 위원 : 심재규 · 박영구의원, 김덕진,황태성,허인환

제3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현황

구분 / 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철회	
			원안	수정				
계	257	257	187	49	16	0	5	
조례안	199	199	151	34	11		3	
예산·결산	16	16	2	14				
승인·동의	26	26	20		4	0	2	
청원	1	1						
건의안 및 결의안	10	10	10					
의견청취안	5	5	4	1				

2. 예산안과 결산안

가. 회기별 처리현황

회 기 별	제출건수		가 결		비 고
	예산안	결산안	예산안	결산안	
계	14	4	14	4	
제108회 임시회	1		1		·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9회 정례회		1		1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11회 정례회	2		2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15회 임시회	1		1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16회 정례회		1		1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19회 정례회	2		2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24회 정례회		1		1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25회 임시회	1		1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9회 정례회	2		2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33회 임시회	1		1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34회 정례회		1		1	·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37회 임시회	1		1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38회 정례회	2		2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2회 임시회	1		1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현황

구 분	자치단체 제출 예산안		수정액		의회의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 대비 증·감액	비고
			삭감액	자치단체 수정요구액			
제108회 임시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92,548,324	1,432,601	194,953,609	194,447,409	△506,200	
	일반회계	177,033,467	1,428,401	179,442,952	178,936,752	△506,200	
	특별회계	15,514,857	4,200	15,510,657	15,510,657	0	
제111회 정기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01,863,159	0	204,895,822	204,895,822	0	
	일반회계	186,172,292	0	188,249,955	188,249,955	0	
	특별회계	15,690,867	0	16,690,867	16,690,867	0	
제111회 정기회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	176,338,548	4,450,693	181,803,340	181,102,362	△700,978	
	일반회계	167,254,760	4,450,693	172,219,552	171,518,574	△700,978	
	특별회계	9,083,788	0	9,583,788	9,583,788	0	
제115회 임시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97,657,369	2,646,056	199,392,978	198,399,978	0	
	일반회계	186,570,285	2,646,056	188,275,894	187,282,894	△993,000	
	특별회계	11,087,084	0	11,117,084	11,117,084	0	
제119회 정례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14,593,362	15,200,384	215,761,758	215,761,758	0	
	일반회계	203,584,224	15,200,384	204,752,620	201,752,620	0	
	특별회계	11,009,138	0	11,009,138	11,0009,138	0	
제119회 정례회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계	193,323,350	1,531,470	198,705,638	198,708,138	2,500	
	일반회계	185,403,512	1,531,470	190,310,464	190,312,964	2,500	
	특별회계	7,919,838	0	8,395,174	8,395,174		

구 분	자치단체 제출 예산안		수정액		의회의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 대비 증·감액	비고
			삭감액	자치단체 수정요구액			
제125회 임시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25,622,653	290,088	220,397,627	220,397,627	0	
	일반회계	215,752,289	290,088	210,527,263	210,527,263	0	
	특별회계	9,870,364	0	9,870,364	9,870,364	0	
제129회 정기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22,647,746	0	0	222,647,746	0	
	일반회계	212,650,740	0	0	212,650,740	0	
	특별회계	9,997,006	0	0	9,997,006	0	
제129회 정기회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계	208,043,188	2,692,629	215,923,332	215,923,332	0	
	일반회계	198,701,245	2,692,629	206,105,683	206,105,683	0	
	특별회계	9,341,943	0	9,817,649	9,817,649	0	
제133회 정례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계	256,880,539	0	260,746,216	260,746,216	0	
	일반회계	245,983,319	0	249,138,451	249,138,451	0	
	특별회계	10,897,220	0	11,607,765	11,607,765	0	
제137회 임시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65,177,271	89,950	268,086,886	268,086,886	0	
	일반회계	253,533,106	89,950	256,442,721	256,442,721	0	
	특별회계	11,644,165	0	11,644,165	11,644,165	0	
제138회 정례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68,981,769	0	270,309,352	270,309,352	0	
	일반회계	257,321,895	0	258,649,478	258,649,478	0	
	특별회계	11,659,874	0	11,659,874	11,659,874	0	

구 분	자치단체 제출 예산안		수정액		의회의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 대비 증·감액	비고
			삭감액	자치단체 수정요구액			
제138회 정례회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계	239,528,045	0	251,787,081	251,787,081	0	
	일반회계	225,808,157	2,051,250	236,445,451	236,445,451	0	
	특별회계	13,719,888	0	15,341,630	15,341,630	0	
제142회 임시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277,708,585	0	278,085,137	278,085,137	0	
	일반회계	262,356,655	0	262,733,207	262,733,207	0	
	특별회계	15,351,930	0	15,351,930	15,351,930	0	

다. 예산결산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군 수	2002. 8.12	제108회	제2차	2002. 8.24	수정의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2002. 8.26	제109회	제3차	2002. 9.16	원안의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2. 8.14	제109회	제3차	2002. 9.16	원안의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2.12. 5	제111회	제7차	2002.12.21	수정의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02.11.21	제111회	제7차	2002.12.21	수정의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2.11.21	제111회	제7차	2002.12.21	수정의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3. 6.16	제115회	제2차	2003. 6.30	수정의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3. 7. 2	제116회	제2차	2003. 7.24	원안의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2003. 7. 5	제116회	제2차	2003. 7.24	원안의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3.11.20	제119회	제7차	2003.12.20	원안의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03.11.20	제119회	제7차	2003.12.20	수정의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3.12. 5	제119회	제7차	2003.12.20	수정의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2004. 6.14	제124회	제5차	2004. 7.26	원안의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4. 6.30	제124회	제5차	2004. 7.26	원안의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4. 7.20	제125회	제2차	2004. 7.31	수정의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2004.11.19	제129회	제6차	2004.12.20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2005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 수	2004.11.19	제129회	제6차	2004.12.20	수정의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4.12. 7	제129회	제6차	2004.12.20	원안의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5. 5.16	제133회	제2차	2005. 6.10	수정의결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5. 7. 4	제134회	제3차	2005. 7.25	원안의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5. 7. 4	제134회	제3차	2005. 7.25	원안의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5.10.21	제137회	제2차	2005.11.10	원안의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05.11.18	제138회	제6차	2005.12.20	수정의결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2005.11.18	제138회	제6차	2005.12.20	원안의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5.12. 6	제138회	제6차	2005.12.20	원안의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6. 3.16	제142회	제2차	2006. 3.30	원안의결

3. 조 례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처 리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157	141	12	4	
제109회 정례회	8	8			
제111회 정례회	13	12		1	
제113회 임시회	5	5			
제114회 임시회	2	2			
제115회 임시회	5	2	3		
제116회 정례회	3	3			
제117회 임시회	3	3			
제118회 임시회	5	3	1	1	
제119회 정례회	13	13			
제121회 임시회	2	2			
제122회 임시회	4	4			
제124회 정례회	14	13	1		
제125회 임시회	4	3	1		
제128회 임시회	1	1			
제129회 정례회	6	6			
제130회 임시회	3	3			
제131회 임시회	6	4	1	1	
제132회 임시회	9	7	2		
제133회 임시회	3	3			
제134회 정례회	9	7	2		
제135회 임시회	7	6		1	
제137회 임시회	3	3			
제138회 정례회	8	7	1		
제139회 임시회	3	3			
제140회 임시회	2	2			
제143회 임시회	16	16			

나. 계류 및 철회 현황

계	계 류	반 려	미회부	철 회	폐 기	비 고
12	0	2	1	2	7	

다. 유형별 조례안 처리 현황

구분 / 처리별		총계	의원발의				군수제출				비고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199	8	2	6		191	36	130	25	
가결	원안	151	8	2	6		143	26	95	22	
가결	수정	34					34	10	23	1	
부결		11					11		9	2	
계류											
철회		3					3		3		
기타											

라. 조례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수	02. 7.13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02. 7.13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02. 7.13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02. 8.27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지원조례안	〃	02. 8.27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	02. 8.27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02. 8.27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02. 7.31	제109회	제3차	02. 9.16	원안의결
고창군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공무원직장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생활폐기물등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부 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수리계관리조례안	군 수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주민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	〃	02.11.21	제111회	제7차	02.12.21	원안의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	03. 2.24	제113회	제6차	03. 3. 8	원안의결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	03. 2.24	제113회	제6차	03. 3. 8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2. 5	제113회	제6차	03. 3. 8	원안의결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2. 5	제113회	제6차	03. 3. 8	원안의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2.24	제113회	제6차	03. 3. 8	원안의결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4. 8	제114회	제2차	03. 5. 2	원안의결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4.14	제114회	제2차	03. 5. 2	원안의결
고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	03. 6. 5	제115회	제2차	03. 6.30	수정의결
고창군추모의집설치 및 운영 조례안	〃	03. 6. 5	제115회	제3차	03. 6.30	수정의결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6. 5	제115회	제3차	03. 6.30	수정의결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6. 5	제115회	제3차	03. 6.30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수	03. 6. 5	제115회	제3차	03. 6.30	원안의결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7. 4	제116회	제2차	03. 7.24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7. 3	제116회	제2차	03. 7.24	원안의결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03. 4.14	제116회	제2차	03. 7.24	원안의결
고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03. 9.15	제117회	제2차	03. 9.27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03. 9.15	제117회	제2차	03. 9.27	원안의결
고창군계획조례안	〃	03. 8.30	제117회	제2차	03.9.27	원안의결
고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	03.11. 3	제118회	제5차	03.11.21	수정의결
고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0. 6	제118회	제5차	03.11.21	부 결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03.11. 3	제118회	제5차	03.11.21	원안의결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0.22	제118회	제5차	03.11.21	원안의결
고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 3	제118회	제5차	03.11.21	원안의결
고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03.11.20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군 수	03.11.2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공무원직장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개정조례안	〃	03.11.2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0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0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0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	03.11.20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재규 외3명	03.11.26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03.11.26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03.11.26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수	03.11.27	제121회	제5차	04. 2.27	원안의결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04. 1.14	제121회	제5차	04. 2.27	원안의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	04. 3.22	제122회	제2차	04. 5.15	원안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04. 5. 6	제122회	제2차	04. 5.15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04. 5. 6	제122회	제2차	04. 5.15	원안의결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04. 5. 6	제122회	제2차	04. 5.15	원안의결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04. 3.22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 수	04. 4.22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조례제정조례안	〃	04. 5. 6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04. 6. 3	제124회	제5차	04. 7.26	수정의결
고창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	04. 6. 3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상징물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	04. 6. 7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	04. 6.15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04. 6.29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04. 6.29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제정조례안	〃	04. 6.29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조례제정조례안	〃	04. 6.29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04. 7. 8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 조례안	〃	04. 7. 8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	〃	04. 7. 8	제124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창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	04. 7. 1	제125회	제2차	04.10. 9	수정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04. 7. 1	제125회	제2차	04.10. 9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수	04. 9.22	제125회	제2차	04.10. 9	원안의결
고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04. 9.22	제125회	제2차	04.10. 9	원안의결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남규 외5인	04.11.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고창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수	04.11.20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04.11.20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	04.11.20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	04.11.20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04.11.26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04.11.26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고창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1.17	제130회	제2차	05. 1.21	원안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05. 1.17	제130회	제2차	05. 1.21	원안의결
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	04.11.20	제130회	제2차	05. 1.21	원안의결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05. 2.14	제131회	제6차	05. 2.28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05. 2. 5	제131회	제6차	05. 2.28	원안의결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	〃	05. 2. 5	제131회	제6차	05. 2.28	수정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민원상담인운영조례안	군 수	05. 2.18	제131회	제6차	05. 2.28	부 결
고창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05. 2. 5	제131회	제6차	05. 2.28	원안의결
고창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05. 2. 5	제131회	제6차	05. 2..28	원안의결
고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수정의결
고창군노인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등설치 운영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수정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4. 6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안	〃	05. 4. 1	제132회	제2차	05. 4.18	원안의결
고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5.31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고창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설치 조례안	〃	05. 5.31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고창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5. 4. 1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5. 7. 6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수	05. 7. 6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고창군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05. 6.27	제134회	제3차	05. 7.25	수정의결
고창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6.29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6.27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고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및 운영조례안	〃	05. 7. 6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고창군동리국악당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05. 7. 6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고창군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5. 7. 6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고창군학교급식 식품지원비에 관한 조례안	〃	05. 7. 6	제134회	제3차	05. 7.25	수정의결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규 외4명	05. 8.25	제135회	제2차	05. 9. 7	원안의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수	05. 8.19	제135회	제2차	05. 9. 7	원안의결
고창군생활폐기물등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8.19	제135회	제2차	05. 9. 7	부 결
고창군음식물퓨폐기물의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8.19	제135회	제2차	05. 9. 7	원안의결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5. 8.19	제135회	제2차	05. 9. 7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05. 9. 1	제135회	제2차	05. 9. 7	원안의결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05. 8.19	제135회	제2차	05. 9. 7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 수	05. 9.14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5.10.21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05.10.29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고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11.21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11.21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5.11.21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05.10. 6	제138회	제6차	05.12.20	수정의결
고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05.11.21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제정조례안	〃	05. 9.14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 제정조례안	〃	05. 9.14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02.11.21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6. 1. 6	제139회	제2차	06. 1.19	원안의결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 및 지원조례안	〃	06. 1. 6	제139회	제2차	06. 1.19	원안의결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6. 1. 6	제139회	제2차	06. 1.19	원안의결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 조례안	김남규의원 5명	06. 2. 2	제140회	제2차	06. 2.22	원안의결
고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수	06. 2.10	제140회	제2차	06. 2.22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남규 의원 5명	06. 5. 1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 수	06. 4.12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06. 4.12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6. 3.23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	06. 5. 4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6. 3.23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조례안	〃	06. 3.23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	06. 3.23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6. 3.30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06. 4.28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고창농악전수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	06. 4.28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복지급여등지원에관한 조례안	〃	06. 2.10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 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6. 3.10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조 례일부개정조례안	〃	06. 4.12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6. 4.28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고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06. 4.12	제143회	제2차	06. 5.10	원안의결

4. 승 인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57	56	0	1	
제109회 정례회	2	2			
제111회 정례회	7	7			
제113회 임시회	1	1			
제116회 정례회	1	1			
제118회 임시회	4	3		1	
제119회 임시회	4	4			
제121회 임시회	3	3			
제125회 임시회	1	1			
제127회 임시회	1	1			
제128회 임시회	7	7			
제129회 정례회	6	6			
제133회 임시회	6	6			
제134회 정례회	3	3			
제137회 임시회	4	4			
제138회 정례회	4	4			
제139회 임시회	1	1			
제140회 임시회	1	1			
제141회 임시회	1	1			

나. 계류 및 철회 현황

계	계 류	철 회	비 고
0	0	0	

다. 승인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군 수	2002. 7.13	제109회	제3차	2002. 9.16	원안의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2002. 8.30	제109회	제3차	2002. 9.16	원안의결
읍성주변 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0.23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무장기포지 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0.23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농악전수관 부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0.23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1.18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산촌종합개발시설물양여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1.18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성동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1.18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2002.11.18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의결
성내보건소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02.11.18	제113회	제6차	03. 3. 8	원안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2003. 6.18	제116회	제2차	2003. 7.24	원안의결
공설운동장주변 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2003.10.27	제118회	제5차	03. 11.21	부 결
군청 제2청사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2003.10.27	제118회	제5차	03. 11.21	원안의결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2003.10.27	제118회	제5차	03. 11.21	원안의결
고수면농업인상담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2003.10.27	제118회	제5차	03. 11.21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공공도서관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 수	03.11.1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문화예술회관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3.11.1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고창천변공공용지조성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3.11.14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대산해룡보건진료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3.12. 3	제119회	제7차	03.12.20	원안의결
구시포해수욕장사유지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3.10.27	제121회	제5차	04. 2.27	원안의결
공음실내체육관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 2.18	제121회	제5차	04. 2.27	원안의결
6.26양민희생자위령탑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 2.18	제121회	제5차	04. 2.27	원안의결
구시포해수욕장공중화장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 6. 7	제125회	제5차	04. 7.26	원안의결
고수보건지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 6. 7	제127회	제2차	04.10. 8	원안의결
농산물유통센터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04. 6. 7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아산면복지회관건물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04.10.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최여겸순교지개발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04.10.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평촌보건진료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04.10.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가평보건진료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04.10.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관동보건진료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승인안	〃	04.10.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국제도시재매결연승인안	〃	04.10.15	제128회	제2차	04.11.23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소규모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 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 수	04.10.15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종합사회복지회관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11.29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노인복지회관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11.29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농산물유통가공시설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11.29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우체국옆공공청사부지취득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11.29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반암보건진료소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4.11.29	제129회	제6차	04.12.20	원안의결
평촌보건진료소신축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4.30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관동보건진료소신축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4.30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가평보건진료소신축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4.30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공유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4.30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선운산유스호스텔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4.30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사반보건진료소신축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4.30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의결
동호해수욕장안전관리센터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5.30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소규모보전부적합공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6.29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국공유재산상호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6.29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9.29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자룡보건진료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 수	05. 9.29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용반보건진료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9.29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상암보건진료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 9.29	제137회	제2차	05.11.10	원안의결
고창군보건지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11.18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성송보건지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11.18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공중보건의숙소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11.18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대체재산조성공유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5.12. 9	제138회	제6차	05.12.20	원안의결
복분자시험장육종지원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6. 1. 6	제139회	제2차	06. 1.19	원안의결
고창군복분자홍보관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6. 1.27	제140회	제2차	06. 2.22	원안의결
국공유재산상호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06. 3.27	제142회	제2차	06. 3.30	원안의결

5. 건의 및 결의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7	7			
제109회 정례회	1	1			
제111회 정례회	3	3			
제115회 임시회	1	1			
제132회 임시회	2	2			

나. 건의(결의)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고창군 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간 합의서 이행촉구 건의안	심재규 의원외 13인	2002. 9.14	제109회	제3차	2002. 9.16	원안채택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촉구 결의문	〃	2002.12.21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채택
TV난시청지역해소촉구 결의안	정종구 의원외 13인	2002.12.21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채택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결의안	김남규 의원외 13인	2002.12.21	제111회	제7차	2002.12.21	원안채택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	전춘식 의원외 13인	2003. 6.23	제115회	제1차	2003. 6.23	원안채택
한국식품연구회고창군유치를 위한 건의문	김남규 의원외 13인	2005. 7.25	제132회	제3차	2005. 7.25	원안채택
한국농업전문학교 고창군 유치를 위한 건의문	전춘식 의원외 13인	2005. 7.25	제132회	제3차	2005. 7.25	원안채택

6. 의견 청취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6	6			
제113회 정례회	1	1			
제115회 임시회	1	1			
제128회 임시회	1	1			
제132회 임시회	1	1			
제134회 정례회	2	2			

나. 의견 청취안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면급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군 수	02. 2.21	제113회	제6차	2002. 3. 8	원안의결
고창군(읍) 관리계획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	03. 6.16	제115회	제2차	2003. 6.30	원안의결
고창군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04.11. 6	제128회	제2차	2003.11.23	원안의결
고창(고창읍)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	05. 4. 7	제132회	제2차	2005. 4.18	원안의결
고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의견청취안	〃	05. 4. 9	제134회	제3차	2005. 7.25	원안의결
고창읍성남지구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	〃	05. 7. 4	제134회	제3차	05. 7.25	원안의결

다. 기 타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 수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읍소도읍 육성계획제안서	군 수	02. 2.26	제113회	제6차	2002. 3. 8	원안채택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	〃	03. 5.22	제115회	제2차	2003. 6.30	원안채택
하전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안	〃	03.10.27	제118회	제5차	03.11.21	원안채택
고창군(고창읍)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	04. 5.29	제121회	제5차	04. 7.26	원안채택
고창군관리계획결정안	〃	05. 5.31	제133회	제2차	05. 6.10	원안채택

7.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현황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인원	처 리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8회 임시회	2002.8.21 ~ 8. 23. (3일간)	위원장:최석기 간 사:박영구 위 원:정종구 김남규 심재규 정원환 박병옥 이재정 이귀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194,447,409천원 – 일반회계 : 178,936,752천원 – 특별회계 : 15,510,657천원
200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9회 정례회	2002.9.6 ~9.13 (7일간)	위원장:김상필 간 사:전춘식 위 원:정종구 김남규 박현규 최인규 이재정 이귀섭 박영구	○도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미흡등 35건 적출, 시정 및 개선 요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9회 정례회	2002.9.5 (1일간)	위원장:최석기 간 사:박영구 위 원:정종구 김남규 심재규 정원환 박병옥 이재정 이귀섭	○2001년도 결산승인안 – 보조금지급절차 소홀등 49건 지적 성실한 시정조치로 원안대로 승인 ○2001 예비비 – 예 산 액 : 7,912,263천원 – 지 출 액 : 3,349,999천원 – 잔 액 : 4,562,264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인원	처 리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1회 정례회	2002.12.13 ~12.21 (9일간)	위원장:박현규 간 사:이재정 위 원:김상필 정종구 김남규 심재규 정원환 최인규 이귀섭	○2000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안 · 예산액 : 5,241,751천원 · 지출액 : 1,120,996천원 · 잔 액 : 4,120,755천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04,895,822천원 – 일반회계 : 188,249,955천원 – 특별회계 : 16,690,867천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총 액 : 181,102,362천원 – 일반회계 : 171,518,574천원 – 특별회계 : 9,583,788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5회 임시회	2003. 6.25 ~ 6.23 (3일간)	위원장:이재정 간 사:정종구 위 원:김남규 박현규 정원환 이귀섭 박영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199,392,978천원 – 일반회계 : 188,275,894천원 – 특별회계 : 11,117,084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6회 정례회	2003. 7.11 (1일간)	위원장:심재규 간 사:김남규 위 원:김상필 정종구 박현규 정원환 이재정 이귀섭 박영구	○2002년도 결산승인안 – 예측가능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편성등 52건 시정조치 ○2002년도 예비비 – 총 액 : 5,825,704천원 – 일반회계 : 4,884,381천원 – 특별회계 : 941,323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인원	처 리 내 용
200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6회 정례회	2003. 7.16 ~ 7.22 (7일간)	위원장:김남규 간 사:박영구 위 원:김상필 정종구 박현규 심재규 정원환 이재정 이귀섭	○ 보조금 집행 부적정등 31건 적출, 시정 및 개선 요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9회 정례회	2003.12.12 ~ 12.19 (8일간)	위원장:전춘식 간 사:이귀섭 위 원:정종구 김남규 최석기 박현규 심재규 박병옥 박영구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15,761,758천원 – 일반회계 : 204,752,620천원 – 특별회계 : 11,009,138천원 ○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총 액 : 198,705,638천원 – 일반회계 : 190,310,464천원 – 특별회계 : 8,395,174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4회 정례회	2004. 7.15 (1일간)	위원장:박영구 간 사:김남규 위 원:김상필 정원환 최인규 이재정 이귀섭	○ 2003년도 결산승인안 – 급여관리소홀등 31건 시정조치 ○ 2003년도 예비비 – 총 액 : 4,069,310천원 – 지 출 액 : 2,521,928천원 – 잔 액 : 1,547,382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인원	처 리 내 용
200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4회 정례회	2004. 7.15 ~ 7.23 (6일간)	위원장:박영구 간 사:정원환 위 원:정종구 전춘식 박현규 심재규 최인규	○ 예산편성 편견재제, 군민체육대회 종목 재검토등 30건 시정요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5회 정례회	2004. 7.29 ~ 7.31 (3일간)	위원장:이귀섭 간 사:김남규 위 원:김상필 정원환 최인규 이재정 박영구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20,397,627천원 – 일반회계 : 210,527,263천원 – 특별회계 : 9,870,263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9회 정례회	2004.12.13 ~12.20 (8일간)	위원장:심재규 간 사:박영구 위 원:정종구 김남규 박현규 정원환 박병옥 이재정 이귀섭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22,647,746천원 – 일반회계 : 212,650,740천원 – 특별회계 : 9,997,006천원 ○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총 액 : 215,923,332천원 – 일반회계 : 206,105,683천원 – 특별회계 : 9,817,649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3회 임시회	2005. 6. 9 (1일간)	위원장:박영구 간 사:이귀섭 위 원:정종구 전춘식 박현규 박병옥 이재정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60,746,216천원 – 일반회계 : 249,138,451천원 – 특별회계 : 11,607,765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인원	처 리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4회 정례회	2005. 7.12 (1일간)	위원장:박영구 간 사:이귀섭 위 원:정종구 전춘식 박현규 박병옥 이재정	○ 2004년도 결산승인안 – 하수종말처리장 및 찻집관로 유지관리비 시설비편성등 31건 시정조치 ○ 2004년도 예비비 – 총 액 : 4,694,375천원 – 지 출 액 : 1,108,748천원 – 잔 액 : 3,585,627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7회 임시회	2005.11. 8 ~ 11. 9 (2일간)	위원장:심재규 간 사:박영구 위 원:김남규 전춘식 박병옥 이재정 이귀섭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68,086,886천원 – 일반회계 : 256,442,721천원 – 특별회계 : 11,644,165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2005.12.12 ~ 12.20 (9일간)	위원장:정종구 간 사:이귀섭 위 원:김남규 전춘식 심재규 정원환 박병옥 최인규 박영구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70,309,352천원 – 일반회계 : 258,649,478천원 – 특별회계 : 11,659,874천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총 액 : 251,787,081천원 – 일반회계 : 236,445,451천원 – 특별회계 : 15,341,630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인원	처 리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2회 임시회	2006. 3.30 (1일간)	위원장:박영구 간 사:이귀섭 위 원:정종구 김남규 심재규 전춘식 이재정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 액 : 278,085,137천원 – 일반회계 : 262,733,207천원 – 특별회계 : 15,351,930천원

8.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

본군은 2만5천여 ha의 농경지를 보유한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군민 대다수가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이어 칠레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1만여 ha의 광활한 야산개발지의 대체소득 품목으로 낙농사업을 권장하여 현재 116호 7,643두를 사육하고 있고, 착유두수도 3,430두로 하루에 원유85톤를 생산 년간 192억원의 조수입을 가져와 안정된 농촌생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유가 과잉생산 적체되어 정부에서는 감산정책으로 낙농진흥회의 일일잉여량 810톤의 약 51%인 410톤을 폐업 및 감축을 추진하므로서 낙농진흥회에 97%가 가입되어 있는 본군의 낙농가들의 좌절과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낙농진흥회에 전 낙농가 가입 실패에 따른 원유 수급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책임, 축협과 농협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축협산하 유업체 폐쇄로 인한 원유 잉여발생과 서울우유의 낙농진흥회 탈퇴에서 발생한 원유 잉여량에 대한 정부의 대처미흡, 그리고 낙농진흥회원으로 하여금 잉여 전량을 감산토록한 정부의 우유수급 안정대책, 원유감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지 않은 낙농진흥회원들의 책임에 비중을 따지고 책임 전가로 국정의 분열과 소모가 계속되고, 낙농진흥회 가입 등 정부 우유수급 안정대책에 호응하였던 낙농진흥회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본 의회에서는 정부와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숙고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낙농진흥회를 해체 또는 전 낙농가를 낙농진흥회 가입하여 낙농가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전 낙농가의 우유생산량 통제와 전 유업체의 납유량을 조절하는 등 전국을 총괄 관리하는 선진국형 우유 수급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 낙농가를 대상으로 감산 목표량 달성기간을 3년 이상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폐업 보상제를 전체 및 부분폐업 등 다면적으로 시행하며, 감산량에 대하여도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하여 낙농가와 정부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우유 수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잉여 우유에 대하여는 꾸준한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초·중·고 전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무료 또는 보조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우유를 보급하기 바랍니다.

2003. 6. 23.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한국 식품연구원』 고창군 유치 건의문

국가적 균형 발전과 지역 국책사업 특성에 적합한 토지공사 외 12개 공공기관 전북 유치를 고창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 의회는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기관 배치 방법에서 다각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보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내로 집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감하나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이전 허용(기본협약 제7항)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한국 식품 연구원"의 고창군 유치를 본 의회에서는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25,000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74km의 서해 연안에 접하고 있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농어업 소득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이어 칠레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전북에 배치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농군으로서 농.임.축.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한국 식품연구원"의 고창 유치는 우리고창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책의 기대효과보다는 자기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시.군의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군은 정부가 천명한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이전 허용(기본협약 제7항)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면 "한국 식품연구원"의 고창이전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한국식품 연구원"의 고창군 유치를 강력히 건의 드리며 다음과 같이 유치 당위성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고창군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지역특화사업 특구로 지정된 복분자의 본고장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주류, 음료류, 떡류, 한과류, 장류(고추장, 분말 청국장) 등 복분자를 이용한 식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유명한 고창 수박과 풍천장어 등 많은 특산물이 있는 만큼 "한국식품 연구원"의 이전시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2. 고창군은 한식연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상하(구 매일뉴질랜드 치즈)등 대규모 식품관련 기업들과 전라북도 수산시험장연구소, 전라북도 수박 시험장, 고창군 복분자 시험연구소 등이 식품의 생산적인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그 상승효과는 배가가 될 것이다.

3. 고창군을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15분 거리의 호남고속도로는 수도권 및 행정 복합도시와 전주,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근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설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고창군과 대의기관인 의회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고창군은 임직원들의 주거시설 해결을 위해 250여 세대의 주공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그리고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고창읍성 등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것이며, 또한 판소리 등 문화생활을 통해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운 직장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2005년 7월 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한국 농업 전문학교』 고창군 유치 건의문

국가적 균형 발전과 지역 국책사업 특성에 적합한 토지공사 외 12개 공공기관 전북 유치를 고창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 의회는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기관 배치 방법에서 다각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보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내로 집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감하나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이전 허용(기본협약 제7항)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한국 식품 연구원"의 고창군 유치를 본 의회에서는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25,000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74km의 서해 연안에 접하고 있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농어업 소득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이어 칠레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전북에 배치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 농업전문학교"의 우리군 유치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계화,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환경의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계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우리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고창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책의 기대효과 보다는 자기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시.군의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군은 정부가 천명한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이전 허용(기본협약 제7항)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면 "한국 농업 전문학교"의 고창이전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한국 농업 전문학교"의 고창군 유치를 강력히 건의 드리며 다음과 같이 유치 당위성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고창군은 전국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74km의 해안선과 전국 최대 야산 개간지로 전국 최대의 복분자, 수박, 인삼 등을 생산하여 한국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온 농업발전클러스터 구성 최적지로서 현장 교육 및 실습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학생모집과 농민교육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체계가 용이하다.

2. 복분자 산업 및 경관농업이 지역특화사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고창군은 과거 식량증산농업에서 경관체험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복지농촌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학생과 농민 후계자들이 밴치마킹하는 선도 지역이다.

3. 고창군을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15분 거리의 호남고속도로는 수도권 및 행정 복합도시와 전주,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근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설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고창군과 대의기관인 의회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고창군은 임직원들의 주거시설 해결을 위해 250여 세대의 주공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그리고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고창읍성 등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것이며, 또한 판소리 등 문화생활을 통해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운 직장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2005년 7월 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TV 난시청 지역 해소 촉구 결의문

본 군은 非山非野의 지형지세를 가진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26,000가구 7만여 인구가 방송과 문화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미래 농촌을 일구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위성방송시대 개막과 더불어 인터넷가입자 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명실 공히 정보통신 최강국이 되었다고 하나 본 군은 그동안 귀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삶의 일부분이 된 TV시청조차 자유롭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년간 8억여 원의 시청료를 납부 하면서도 별도 5억여 원의 유선방송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이념은 물론 21세기 방송을 주도한다는 귀사의 이념에 비추어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본 의회는 날로 증폭되는 군민의 원성과 TV시청료의 본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의회의 이름으로 촉구 결의합니다.

2002. 12. 2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결의문

지난 6월 13일 꿈 많은 소녀 신효순, 심미선양이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다가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협정에서 있을 수도 없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적용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놓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여론이 들끓자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가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강대국의 횡포에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피로 지켜온 주권국가이다.

주권국가에서 자국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재판권을 가해자의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요 현행 국제법과 최소한의 인간양심에 비추어 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방적 횡포로 간주하며 향후 우리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과 점차 확산되는 반미감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1966년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주둔군의 입장으로 체결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개정하라.

Ⅰ.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Ⅰ. 인권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 정부는 본말이 전도된 금번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02. 12. 2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동호골프장 개발계획과 관련한 건의문

우리 고창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채 미래 관광메카를 지향하고 있으며 유비무환의 상징인 고창읍성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어느 지역보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지니고 있는 고장입니다. 조선조 말기에는 탐관오리의 학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의 고장이요 냉전시대에는 반공의 일선에서 그들의 직. 간접인 침략에 당당하게 맞서왔던 고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군사시설로 인한 자유권과 재산권 침해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이로 인한 욕구분출을 스스로 자제해온 것은 애국애족으로 무장된 고창군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귀(부)대에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고 확실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지방화시대는 현실로 다가 왔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제도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은 곧 잘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창군은 풍부한 문화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열악한 자치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하나가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사와 동호해수욕장을 잇는 동호골프장 건립이며 이 골프장은 우리 고창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 문제이며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민.관.군의 화합과 향후 굳건한 협력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지역 현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제119회 정례회를 맞아 전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동호 골프장 예정지는 토지 활용의 효율성이 낮은 황무지로서 개발되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창관광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첩경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호 골프장은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관광객의 욕구 충족과 함께 문화관광의 시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선운산과 동호해수욕장을 잇는 중요한 벨트를 형성할 것입니다.

1. 동호 골프장은 과거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과 주둔부대와 지역주민의 협력관계 유지로 전략. 전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향후 상호 선린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 12. 20.

고 창 군 의 회 의 원 일동

식량 주권 수호 성명서(우리 쌀 지키기 운동)

5천년 유구한 역사와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왔던 농업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농업 선진국들의 농산물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여 농민의 소득 감소 및 농촌의 인구 급감으로 농촌이 피폐되어 지고 있다.

특히, 우리군은 25,000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74km의 서해 연안에 접하고 있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농어업 소득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 하다.

또한, 우리 국민의 주식 이었던 쌀이 도시화 · 서구화가 되면서 식단이 다양하게 바뀌어, 쌀 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때 1994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거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5년부터 쌀 시장은 개방될 예정이며, 한 ·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금년 4.1일부터 발효되어 포도, 복숭아 등 과수 농가들까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경이다.

이에 우리는 쌀 재협상에서 이해상관 없이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함을 밝히고, 차후 식량기근에 대처 할 뿐만 아니라 쌀을 국가 안보 차원과 우리 민족혼이 담긴 정신적 지주임을 자각하고 우리 쌀 지키기 식량 주권 수호에 앞장 설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은 열악한 환경과 농가부채 가구당 2,700만원, 추곡수매가 전년대비 4% 인하로 우리 농민들에게 더 한층 의욕을 상실케 하여 정다운 이웃들은 하나 둘 고향을 떠나면서 우리 농촌의 희망은 이제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는 공산품의 수출이 막혀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식의 단순 논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은 식량 목표치를 법제화 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나라들의 노하우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금 돌아와 삶의 터전을 이루고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살기 좋은 복지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7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성명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쌀의 추가개방과 정부수매가 인하를 절대 반대 하고, 소비자 물가상승에 비례하는 수매가 책정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안보적 차원의 식량 비축과 자급자족을 위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방법과 거국적인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쌀 소비량을 촉진하며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앞장서 강구하라.

3. 정부는 직불제도 확대, 환경농업에 대한 확대지원, 농업 재해보험 확충, 전업농 영농규모 재편, 귀농 보조금 제도 신설 등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인구 20%이상이 고령화인 시대에 걸 맞는 농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4. 각종농업 지원사업은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특성에 합당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준하는 적정한 사업비를 차등 지원토록 하라.

2004. 9. 10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일동

전북도지역에 핵 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문

전북도는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청정하다고 생각한다.

방대한 서해안의 갯벌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 변산반도와 국립공원 내장산, 김제평야의 널따란 들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갑오동학농민전쟁의 주무대였으며 현대사의 우여와 곡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개발소외 · 발전소외라는 지역차별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지켜낸 환경의 전북도이다.

또한, 본도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이 증명하듯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60여점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동학농민 혁명의 기수인 전봉준장군의 생가와 기포지가 있고, 근대민족사의 큰 족적을 남긴 인촌 김성수 · 근촌 백관수 선생의 생가, 시성으로 일컫는 미당 서정주님의 생각와 문학관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의 산실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핵폐기장 선정을 주도해온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인 과학적 지질과 환경조사 등은 물론 주변 문화여건 등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고창지역 주민을 상대로 여론몰이만으로 급급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급기야 웅군융성의 기대와 함께 다른 도보다 단결된 도민의 힘을 보여주던 지역주민간 갈등만 깊어가고 사회 통합력마저 균열되고 있음이 깊은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의 원활한 전력수급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보장적 장치도 없는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전북도에 설치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며, 자치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잔존에서 비롯된 행위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대하여 전북도의회의장단 의원 일동은 단호히 거부하며 아래와 같이 거부사항을 결의한다.

1. 본도의 지형적 · 지리적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하려는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1.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핵의 노출에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농수산물만을 주로 생산하는 본도에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와 전라북도 농어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1. 본도는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고창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당연히 핵폐기장 유치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1.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핵폐기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국토의 자연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줄수 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밀조사하여 추진하고 산자부와 (주)한수원의 일방적인 본도 고창군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3. . .

전라북도의회 의장단 일동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우리 고창군은 25,000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74km의 서해 연안에 접하고 있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농어업 소득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이어 칠레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쌀값은 폭락하고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나 농어촌의 생기를 불어넣을만한 대안이 뚜렷이 없는 가운데 2005년 12월 3일부터 20일이 넘게 내린 250cm가 넘는 사상유래가 없는 폭설은 군민의 생존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여 우리군민에게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과 실의에 잠겨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재해 복구비로는 재해 당사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 지금의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서는 완전한 피해복구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범정부적인 특별지원방안이 강구되어 실의에 잠겨있는 수많은 피해 농어가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는 물론,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리는 7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폭설피해 주민의 구호와 피해지역에 대한 완전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복구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국고에서 부담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농.축.수산물의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보상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무허가 · 무신고 농 · 축 · 수산 등 시설물과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05. 12. 23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핵폐기물처리장 · 양성자가속기사업장 유치반대 성명서

정부의 2003년 2월 4일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의 한곳으로 우리군 해리면 광승리가 지정 발표되므로서 7만여 대다수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치 찬반논리로 인하여 군민들을 분열되게한 정부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가 대상지역의 거센 반발로 어렵게 되자, 지난 4월 21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설치한다는 물질적 유혹으로 판단의 척도를 흐리게 하는 정부의 방침은 가증스럽기 조차하며,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대가의 지역개발자금 3천억원의 미끼와 1천3백여원의 양성자 가속기사업 유치에서 발생되는 지역발전과 많은 종사자 유입으로 획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모색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근거(법)와 지원 방법의 제시는 물론 당해지역인 우리군과는 책임있는 당국자(기관)의 접촉도 없이 언론매체을 통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학교수등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선진국에서도 검증하지 못한 안전성을 기만 오도하며, 도백인 지사를 앞세워 본 군을 전북 발전의 반 대세적 이단으로 압박하고 있음은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 작태가 과연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격분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군민 대다수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조상들의 얼이 살아숨쉬며, 빼어난 문화유산과 광활하고 기름진 옥토를 보유하여 먹거리가 풍부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청정의 고장에서 조상들의 체취를 만끽하며 대대손손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유치의 대가로 지역개발을 앞당긴다 하여도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결코 있을수도 없다.

본 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이름으로 핵폐기물처리장 ·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은 선진국가의 첨단과학기술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연구실적도 없는 전북대 교수 등 지식인들을 동원 안전성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

–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폐기장은 중저준위 핵폐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이며,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분열되는 방사능의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서 수억년이며, 플루톤늄 239의 경우 2만4천년, 넵투늄의 경우 210만년, 요드의 경우 1570만년 으로 워낙 관리기간 자체가 길어 예측조차 불가능하며 방사성 물질에 단 몇초라도 인간이나 자연환경이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의 장애와 수일 또는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등 각종 암의 발생과 더구나 우리몸에 축적되고 생식기에 작용해서 유산과 사산 ·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짐은 물론 그 독성은 자손대대로 물려지는 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연구실적도 없는 전북대 교수 등 지식인들을 동원 안전성을 확신하다고 주장하게 하여 안전성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

전북대 교수등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은 연구실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이 제공한 날조된 자료에 의한 것이며, 만약 전북대 교수들이 핵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노벨상감이다.

핵폐기물 독성은 영구적임에도 핵폐기물처리장 운영기간은 30년으로 계획한 발상은 위험천만한 핵정책이며, 선진국가의 첨단과학으로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정부와 한수원은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주민 들을 대덕 핵연구단지와 일본 로까쇼무라, 프랑스 로브, 영국 드릭 등 콘크리트 내구연한도 지나지않은 처리장을 각본에 의하여 견학 시킨 후 안전성을 오도하고 있으나, 서방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탈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은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의 안전성에 확신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선진 서방국가에서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속에 묻어두는 방법도 완전한 방수가 되지않아 지하수를 따라 방사성물질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밝혀졌고, 암염층, 화강암지층, 우주공간, 빙하, 바다에서 처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나, 누구도 안전성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은 세계 어디에도 건설된 곳이 없으며, 수백년 수억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시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 할 방법도 없고, 그시간 동안 관리할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 할수 있으니 믿으라고만 하는데 미국의 반웰 핵폐기장이나, 영국의 셀라필드 핵시설 주변에서 암과 백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몇군데에만 건설되어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에서도 방사성 물질 누출로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은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주민들을 대덕 핵연구단지와 일본 로까쇼무라, 프랑스 로브, 영국 드릭 등 콘크리트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처리장을 각본에 의하여 견학시킨 후 안전성을 오도하고 있으나, 서방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탈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은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의 안전성에 확신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과 교수들을 동원하여 안전성을 주장하며 그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을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

1. 선진 서방국가들은 탈핵선언과 핵발전소등 핵관련 시설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개발 충당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한국의 핵산업계는 반 역사적이고 반 인류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 탈핵선언은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이 5월 7일 원자력발전소 전면폐기 선언으로 이는 핵발전에 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불신과 전세계에 반영하는 것이며, IAEA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지구상에 건설중인 핵발전소는 총34개이며, 이중 1기를 제외한 33기 모두가 아시아와 동유럽지역 11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7개국은 건설이 확정된지 평균 18년의 세월이 지나 실제로 건설된다고 보기 어려운 핵발전소들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겨우 4개국에서 신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핵발전 산업은 전세계적인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의 핵산업계는 반역사적이고 반인류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1.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사업 유치에 대한 6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6천억원의 지역지원금, 6만명의 인구 유입효과는 수치적 허구성이다. 만약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된다면 지가폭락 등 상상할 수 없는 군민들의 피해가 자명하며, 대다수 군민들은 생명의 씨를 담보로 하는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대가의 지역개발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 핵폐기물처리장 시설 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으며, 현행 근거법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6천억원의 지역지원금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볼 때 핵폐기물처리장 시설비가 과연 30조원이 소요되는지 이해할수 없고,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이전하겠다는 한수원 본사와 연수원 부속 연구원 그리고 한수원 자회사인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병원의 임직원은 모두 1만5천명 정도로 여기에 4인가족 기준으로 환산해서 6만명의 인구유입효과가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한수원의 임직원은 6천6백여명으로서 실제 이전대상인 본사는 고작 5백 57명에 불과하며, 또한 관련기관의 본사 임직원도 많아야 1천여명 수준으로 교육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직원 및 가족을 포함하여도 겨우 6천2백여명에 불과하며, 양성자 가속기에 필요한 인력도 8백60명정도로 따라서 모든 유입인원을 추산하여도 1만명도 어림없다고 볼때 6천억원의 지역지원금과 6만명의 인구유입 그리고 6조원의 경제적 효과는 허구적인 수치일 뿐이며, 만약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된다면 지가 폭락 등 상상할 수 없는 군민들의 피해가 자명하며, 대다수 군민들은 생명의 씨를 담보로 하는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대가의 지역개발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1.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여론몰이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은 지방화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고창군민들의 의지와 자존심를 묵살하고 있으며, 오로지 선택의 권한은 고창군민에게 있다.

– 핵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선진국가들의 탈핵화 추세에서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근거와 안전성을 제시한 바도 없이 언론매체와 전북대등 도내 교수들을 동원하여 입증되지 않은 핵폐기물처리장이 안전시설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도지사로 하여금 도단위 여론몰이와 수용분위기로 유도하게 하여 본 군을 전북 발전의 반 대세적 이단으로 압박하고 있음은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시대 망상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도지사와 지성인의 양심을 저버린 전북대 교수들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오로지 선택의 권한은 고창군민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2003. 5. 19.

고창군의회의원 일동

호남고속철도 정읍 정차역 신설 건의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추진되는 호남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전남 · 북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익산~광주 구간의 중간지점인 정읍에 정차역 신설이 되도록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하오며 다음과 같이 유치 당위성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정읍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은

첫째, 정읍, 고창, 부안, 순창, 장성, 영광, 담양 등 전남 · 북 지역 7개 시군 50만명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철도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복분자와 수박 등 7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 · 공 · 수산물을 수송하는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이며

둘째, 정읍역권 반경 50㎞ 이내 선운사, 고창읍성, 고창 고인돌군,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과 내장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불갑사, 강천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아 년간 52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유동하는 관광권역 교통 중심지이며

셋째, 국책사업인 부창대교 건립사업, 자연 생태경관 관광산업,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영상 테마파크사업 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발전이 소외된 전북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표본이라 사료되며

넷째,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간 평균거리는 50㎞이지만 호남 고속철도의 경우 익산과 광주 구간 거리가 100㎞를 넘어 그 중간 지점인 정읍 정차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정읍역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으로서 신설 당위성과 경제성 · 접근성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대안이라 할 수 있어 우리 고창군의회는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3. 7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제4절 군정질문 및 답변



1. 제109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상필 의 원	○ 본 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장학재단 육성사업의 기금조성이 당초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장학기금 확보상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목표에 차질을 가져온 이유와 금후대책은? ○ 기금액이 20억원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타지역 출신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한 이유와 방지할 방안은? ○ 고창읍 읍내리 회관 건립을 지역별로 건립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방안은? ○ 교통유발 대형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활용이 저조한데 활용계획은 있는지?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한지나 농지를 년차적으로 매수하여 공공주차장 설치 계획은? ○ 읍성주변 토지매입과 주변 정리로 세계적인 축제와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 읍성이 한눈에 보이고, 조명시설로 야간풍경 관람 등 체계적인 읍성주변 관광권역화 사업 계획은?	이강수 군 수	○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 중 12억 6천8백만원을 조성 현재 11억 5천 1백만원이 남아있음. ○ 98년부터 2001년까지 291명에게 지급되었으며 기능대학생 외지인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학생유치 차원으로 생각하나 모든 결정은 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정이다. 질문내용을 이사회에 충실히 전달하겠음 ○ 고창읍 서부리 노인복지센타 건립은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비를 지원 받아 서부리에 건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음.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 우체국 주변에 3,300평에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 기계식 주차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 계도 및 홀 · 짝수제 정착 등을 유도하겠음. ○ 읍성주변의 외곽 토지매입 후 지장목 제거, 잔디식재,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 조명시설 및 문화공간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읍성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는 문화해설사를 고용 홍보토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소류지 준설시 토취장 선정이 상류 또는 소류지 인근으로 되어 있어 우기 시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제한된 토목직으로 실시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까지 예산 반영의향은? ○ 부실공사 방지와 철저한 감독을 위하여 시설 부대비에서 감독 보조요원을 일시 사용할 의향은? ○ 여름철 주민자체 방역을 실시하나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읍 · 면 마을까지 방역을 위하여 방역차량 확보 또는 방역예산 반영계획은?	이강수 군 수	○ 준설사업은 사토장 승낙이 가능한 지역부터 준설하였으나 재 매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사토장을 선정토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 토목직 공무원만으로 설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종 사업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겠으며, ○ 감독보조인원 일시 사용도 적극 검토하겠음. ○ 여름철 마을권 방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는 방역소독인부임을 읍면예산에 반영하여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약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심재규 의 원	○ 읍성이 선운산, 고인돌유적지를 묶는 효율적인 관광대책이 필요한 때에 읍성의 상징성이라 할 수 있는 모양성내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데 관리 소홀로 노송이 많이 고사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고창농악 전수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소유 건물 부지를 고창군소유로 매수하여 부대 시설을 신축 및 개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은?		○ 노송 보호를 위하여 2001년부터 연차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과수술 2주, 수형조절 291주를 실시하고 영양주사를 투여하였음. 또한 10월중에 지장목을 제거하고 성 외곽 지장목은 문화재정과 협의 정비할 계획임. ○ 농악전수관은 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비를 못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폐교 관리계획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한 후 농악인구의 저변확대를 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심재규 의 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 방안과 경지정리 지구중 용배수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한 현대화 시설사업계획은?	이강수 군 수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227개 지구 1,309ha 중 9개지구 53ha만 시행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이 감소추세다.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20-30% 상향하여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
	○ 특수사업으로 오리농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배부터 도정까지 기술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술지도 실적 및 내용은?		○ 진지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을 초청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대책이 중요한데 브랜드화 방안은?		○ 일부 농협의 수매참여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홈페이지에 등록 적극 홍보하겠음.
정원환 의 원	○ 온천은 겨울철에 많이 찾는 산업으로 눈으로 인하여 교통두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고창발전과 석정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양고살재 터널화 방안은?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나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10월중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향후 경제성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임.
	○ 목포, 인천을 잇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우리군의 관광 진주라 할 수 있는 선운산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선운산관광 프로젝트 마련 용의는?		○ 고창-아산, 흥덕-선운사 간 4차선과 신운 우회도로 그리고 생태숲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7,000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기반을 구축하겠음.
	○ 선운산 상사화 군락지를 확대 조성하여 꽃 무릇 축제 개최로 관광수익 확대 방안은?		○ 꽃무릇은 현재 10,000평이 가시권에 확보되어 있다. 이를 더욱 확대 축제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병옥 의 원	○ 고증없이 건립한 전봉준 장군 생가를 철거해야 한다는 동학농민기념사업회가 군에 건의한다는 신문보도에 대한 배경과 생가를 철거하고 생가터에 표적물 설치와 재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영광원전 5,6호기 보상에 따른 고창 범위대와 한수원 협의 내용 중 군산수산 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용역내용 중간보고 사항을 자사에 불리한 내용이라 하여 용역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은? ○ 통합보건소라는 테두리 안에 의약 분업 지역으로 규제되어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근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으로 한 사람도 찾지 않는 유명무실한 보건진료소로 전락한 것에 대한 대책과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지?	이강수 군 수	○ 당초 충분한 고증자료를 확보치 못해 죽림리 일대의 건축형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건립하였으나 규모가 너무 크고 화려하여 역사적 가치가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심의결과에 의해 건축물을 개축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복원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임. ○ 영광원전 5.6호기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한수원이 미비사항을 지적 보완요구 중이고, 어민단체는 조사결과에 이의없이 승복하라고 대립 중에 있으므로 행정도 관련부처와 정치권 원전과 한수원과도 접촉 중이다.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심원은 2001. 7. 1 전국적으로 실시된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의원이나 약국 중 하나만 설치될 경우 자체투약 및 처방이 가능하나 희망자가 없다. ○ 향후 약품투여가 가능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9.16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겠다.
이귀섭 의 원	○ 추곡수매 지원자금 확보계획 및 대안은? ○ 고창군 농산물 품질보증과 고가판매촉진을 위한 군수, 군의원, 농협장 등 지역 기관장들의 대도시 판촉홍보 활동 계획과 의향은?		○ 정부와 농협의 정책추이를 관망 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브랜드화는 우선 고품질 쌀을 선정 포장디자인 용역중임. 타 작물에 대해서도 2003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대도시 판촉 활동을 위해 11월 중 관계기관과 합동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과거 주민들이 마을진입로와 안길포장을 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 덧씌우기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를 증액 시행할 의향은? ○ 갈곡천 상류의 토사퇴적과 갈대 등으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어 농경지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준설 및 정비사업 계획은?	이강수 군 수	○ 이 사업은 2001년도 2억원 2002년도 2억원을 투입 노후, 파손, 마모된 안길과 진입로를 재포장하겠음. ○ 갈곡천은 총 14Km중 수해복구사업으로 7.9Km에 73억 1천 3백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6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에 정비를 요청할 계획임.
이재정 의 원	○ 예산서 부기에 매월 880부씩 공급하는 농어민신문 보급자 선정기준과 현 보급부수의 몇 % 정도가 신문을 읽고 있는지, 또한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야산개발지의 전천 후 영농을 위한 물 공급 등 준공검사 실시방법과 밭기반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은? ○ 집수탱크와 배관공사 일부 부실시공에 따른 누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농지개량계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직 재정비 및 지도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신문 구독자는 읍. 면장이 후계농업인, 전업농. 영농회장 등을 대상으로 도의 보급계획에 의해 선정하였고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음. ○ 신문의 다양한 정보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비점은 점차 보완할 계획임. ○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단지에 우선 시행하고 관정은 도에서 발주,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한 후 면이나 군. 또는 주민이 인수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금후 용수수요가 적은 곳은 개발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작로를 개발할 계획이며 채수량 부족 관정은 2개소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재정 의 원	○ 본 군은 많은 야산개발지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새 소득작물 육성사업 실적과 군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개발추진 작물 현황은? 급부상하는 복분자 소득사업이 인근시군 지역마저 엄청난 생산으로 문제가 예상되는데 복분자 수매대책과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소득향상을 위해 비가림 하우스와 유기농법을 보급하겠으며 인심재배 농가와 수출농산물을 육성하고 75ha에 대한 복분자 비가림 재배를 지원할 것임. 또한 복분자를 이용한 고추장, 쨈, 기능성 식품개발과 대도시 소비자와 연계 생과 등 수출방안을 모색하겠음. 복분자의 품종 개량과 특허출원 등 딸기와 잎을 이용한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음.
박영구 의 원	○ 6.13 지방선거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 농어촌 경제살리기 – 4년제 대학 설립 –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문제 해결 –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화 –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21개 분야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 공약사업은 5개분야 31개 사업으로 각 실.과소에서 1차 검토를 거친 후 세부계획을 수립 계획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하겠음. ○ 장기발전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해 시.군 계획을 작성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계획의 기본골격이 우리 군과 달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남.
	○ 기존 고창군 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추진내용과 앞으로 기존 발전계획에 의해 추진할 사업은? ○ 앞으로 계획할 장기 발전계획에 기본 방안은?		○ 기존 곰소대교건설, 양고살재 터널, 화훼계열화, 흥덕 농공단지를 제외한 유스호스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공설운동장, 농업용수개발, 도로망확충, 고인돌공원조성 등은 순조롭게 추진 전망됨으로서 희망찬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될 것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부안면 죽도(내죽도) 20여 세대는 자체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유류대의 부담과 잦은 정전사고로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한전의 전기공급이나 항구적인 전기공급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견해?	이강수 군 수	○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50호 이상의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토록 되어있으나 2001. 4. 30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3년도에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추경에 발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하겠음.

2. 제111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현규 의 원	○ 고창군 공무원 644명 중 여성공무원은 180명으로 27%에 달하고 있으나 별정직과 보건소 직원을 제외하면 7%밖에 되지 않는다. ○ 향후 여성공무원의 충원과 우대방안은?	이강수 군 수	○ 90년대 이후 여성이 본격적으로 진출 경력이 짧아 관리직 진출이 늦을 뿐이지 불평등한 인사는 아니다. ○ 내년부터는 신규임용 30%를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군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
	○ 농악 전수관을 건립하는 등 농악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설 농악단을 창단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 현재 50명으로 농악보존회가 발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설농악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보존회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향후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검토하겠음. ○ 농악보존회에서 10개반을 운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중학교까지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군수 공약사업인 중국대학 유치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된다 해도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라리 국악전문초등학교 설립으로 특성화 교육에 힘쓸 용의는?		○ 중국 대학은 분명 제 공약사업입니다만 학점인증. 교수숙소. 기숙사 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학생모집에도 우려가 있어 많은 군비를 투입해야 할지 강력한 추진을 못하고 있다.
	○ 관내 전지역이 TV난시청 지역으로 시청료와 유선방송 사용료 연간 26억원이 넘는 돈이 유출되고 있으며, 대낮 포르노에 가까운 영화가 여과 없이 방영되어 청소년 문제를 야기함.		○ 고창읍과 무장면에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TV 시청에 어려움이 있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현규 의 원	○ 고창은 공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난시청 지역임에도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된 TV시청료도 문제이지만 한국방송공사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협의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현재 9개마을 540여 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KBS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 기술진과 협의 난시청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 군유지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과 고발 건수를 밝혀주시고 향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은?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1건에 1,818,000원이고 군유지는 5건에 967,000원이며, 고발 건수는 없음. ○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후 대부계약토록 하고 폐천부지는 연고자의 신청을 받아 매각하고 있으나 가능한 매각을 억제하고 있음.
김남규 의 원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시설과 기물이 노후되어 있는데도 군비 3,600만원만 지원되고 되고 있는 실정인바 군비지원 확대 계획과 방안은?		○ 공공도서관은 도서구입비 3,600만원 외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에서 투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창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5억. 양여금 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빠른 시일내 최첨단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 우리 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상품 판매소 등 소득사업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선운사, 고인돌군, 고창읍성, 무장읍성 등에 특산품판매장을 확충하고 이를 경유할 수 있도록 예정코스를 정하여 소득을 증대할 용의는?		○ 고인돌휴게소. 읍성. 선운산에 특산물판매소가 있다. 그러나 고창과 무장읍성 안에 민속촌을 조성 먹거리 장터는 고증을 거쳐 수입보다는 원형 그대로의 복원을 우선하겠다. 관광지답사 코스는 9개 코스를 정하고 체험장 등을 만들어 주민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우리 군은 전통예술에 비하여 현대인의 취향을 담은 야외 공연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모양성 외곽 잡목을 제거하고 야간조명을 설치 밤의 볼거리를 만들어 이곳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고창읍성 복원에 사업비 3억원 투입 사유토지 5,023㎡를 매입하고 성외곽 조명시설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설치할 계획이며 구 우체국 부지에 대형주차장이 완공되면 현 주차장에 야외공연장을 건립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이 부족함 상수도 사업이 완료된 곳 중 몇개 마을에 설치되었으며, 향후 상수도 사업 시행시 소화전 시설 병행 계획은?		○ 소화전 시설은 광역상수도가 공급중인 126개 마을 1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가설치하고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 시 마을마다 1개소씩 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겠음.
전춘식 의 원	○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1,368ha의 쌀 생산특화시범단지와 15ha의 오리농법 사업은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2개 사업 시행결과 효과 그리고 생산된 쌀의 처리방법 및 2003년 계획은?		○ 친환경농법에 대한 인식 제고로 80kg당 2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2003년에는 4-5개지역에 약 1400ha를 조성하고 협의체를 구성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음. 그러나 생산된 벼를 한 곳에 집약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면별로 분산됨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나 2004년부터는 협의체를 이용 집약 판매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복분자가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산업체 난립은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금년 농산유통공사가 선정한 Best5에 전남 복분자주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타지역 복분자 재배면적의 확산으로 과잉생산에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년 1개 공장에 기술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품질향상과 서울 지하철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고, 또 25억원을 투입 고품질을 도모하고 과잉생산에 대비 냉동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쨈, 음료 등 품질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유와 같은 유제품 생산에 업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전춘식 의 원	○ 영광원전 온배수에 따른 어민의 대체 소득과 대체자원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피해보상이 어민에게만 이루어지고 우리 군에 대한 보상은 없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이강수 군 수	○ 500ha의 인공어초와 5건 180ha에 대해 대체어장을 계획하였으나 모두 불가 통보됨. 그러나 93년부터 넙치외 5종을 방류하고 올해도 대하 800만 마리를 방류하였음. 또한 광역 해양조사 용역이 2004년 끝나면 군 명의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어장을 계획 중임.
	○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어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구시포 -두어리간 해안관광도로 20억 투입 3㎞ 포장사업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8개노선 32km에 대하여 1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말씀하신 2개소의 편입용지는 10억원을 투입 매입중에 있음. 구시포-두어리간 3.2km는 금년 내 착공 2004년 완공할 계획임.
이귀섭 의 원	○ 금년 말 인구 7만명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중소기업의 유치가 시급한 실정임. 인근 정읍군 30여 업체 김제는 70개 업체가 유치된 상태에서 인구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중장기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금년 매일뉴질랜드 치즈공장을 유치키로 결정하였으나 고용인력. 물류비용. 금융 등을 이유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소기업육성지원. 지방세감면 등을 통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혐오시설 유해시설을 배제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나 양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 모양성제 등 각종 행사시 제전위원회가 상인에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아 결국 음식값의 폭리를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켜 관광객유치 목적에 반하고 있는데 군수의 근절 대책은?		○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비 마련을 위해 임대료를 비싸게 받다보니 음식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 내년부터는 행사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 지원하고 바가지 요금 단속과 외지인 임대를 배제하고, 되도록 1개 읍면에 1개동을 배정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한 나라의 경제를 가름하는 잣대는 치산치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 바 산림벌목 후 수종갱신시 경제수종 식재 후 잡목과 칡덩굴로 산림의 사후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칡덩쿨 제거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산주의 무관심과 칡의 생육 특성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다는 아니지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도로의 확포장은 주민통행과 경제성을 감안해야 하난 신림 소재지 – 송촌리 간 도로는 버스는 물론 5개리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아직 확포장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은?		○ 총 피해는 209건에 19,484,000,000원이고 복구비용은 20,412,000,000이며 이중 농어가 특별 위로금 8천3백만원, 이재민위로금 1억6천만원, 이재민 장기구호비 1천 6백만원은 추석전에 지급하였으며, 농가생계지원 무상양곡대도 303농가에 1억8천만원(1,207가마)을 지급하였다.
	○ 태풍 루사로 인한 국 · 도비 지원사업 내역과 피해조사 잘못으로 제외된 사업별 내역과 사후대책 그리고 피해보상 및 복구사업 마무리 기간은?		○ 주택은 47동 중 46동을 복구하였으며 기타 농작물이나 시설물도 보조금 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임.
	○ 군민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현 거주민 또는 직장생활자로 한정하고 대회관련 읍면 지원비 증액, 농번기를 피한 대회개최, 대회기간 동안 터미널과 공설운동장 간 특별 버스 운행 계획은?		○ 선수 선발문제와 대회개최 시기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제로 상정 검토하겠다. ○ 읍면 지원금은 200만원을 증액 700만원으로 하겠으며 버스 운행은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지난 태풍피해 보상에서 유독 사과 45농가가 한푼의 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과수 농가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과 정보보조 59%를 제외한 나머지 41%를 부담 못하는 과수 농가의 실정을 감안 방풍망 설치자금 지원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과수농가에 대해 이재민 장기구호,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농약대 등 직 · 간접적으로 4억원을 지원했고 2001년부터는 매년 5ha씩 군비 80,000천원을 피해 우심지역에 방풍망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향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부담은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 군수 관사의 공무원보육시설은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향후 군수 관사로 환원할 때의 예산낭비와 현 17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은 의무이며 그 외는 권고사항이다. 관사는 내부만 개보수하고 대상은 공무원자녀로 하되 여유가 있으면 저소득층 및 일반자녀로 입소토록 하겠다. 일반 보육시설 운영난은 일반시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군수의 관사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유치원은 교육 기관의 일부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며 이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
	○ 부대창교는 본 군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한 실정이며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부창대교는 필수적인 사업이며 2001. 8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 국가사업이 가능토록 했으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가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을 책정 받았다. 앞으로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체육회 이사회의 의제로 상정 검토하겠다.
	○ 군민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현 거주민 또는 직장생활자로 한정하고 대회관련 읍면 지원비 증액, 농번기를 피한 대회개최, 대회기간 동안 터미널과 공설운동장 간 특별 버스 운행 계획은?		○ 읍면 지원금은 200만원을 증액 700만원으로 하겠으며 버스 운행은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지난 군정질문에서 주장한 꽃무릇 축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제 모든 축제는 먹거리 장터를 방불케하는 요란스러움을 지양하고 소재와 테마를 개발하는 한편 계절에 맞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선운산에 물이 없으므로 해리면 수락이나 평지마을에 지하수를 개발 청룡산을 넘기는 방안에 대한 견해?	이강수 군 수	○ 축제가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 정의원의 제안이나 다른 의원들의 제안을 수렴하겠으나 수박. 고추 축제는 생산시기가 상이하여 모양성 축제와 연합하기는 어렵다. 국화와 상사화 증식으로 가을철 볼거리를 만들고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 선운산 용수확보는 종합계획수립 시 검토하겠으며 청룡산 용수는 경제성, 친환경성 등을 볼 때 문제점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과 용역결과를 참고 하겠음.
	○ 농촌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생산 · 도정 판매를 책임질 수 있는 정예화농민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미지를 제고한 후 인터넷 판매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스테비아 쌀, 게르마늄 쌀 등 친환경 고품질 쌀 개발에 노력할 것이며 정예농업인. 인터넷판매망구축, RPC별 단일품종 생산등은 군정에 반영 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음.
	○ 3~8월에 심어지는 작목 선택을 못하여 휴경지가 되고 있는 야산 개발지는 얼마가 되는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낙농업에 소요되는 옥수수 사료작물 권장하는 것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휴경 야산개발지는 53ha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담근 먹이를 생산 판매하자는 대안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농가의 의향과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양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창 IC는 우리 군의 농토만 내줄 뿐 소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양고살재 터널화만이 지역결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감안 이에 대한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고창- 장성간 고속도로 연결도로는 지역소득과 직접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지역홍보나 물류센터 건설 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양고살재 터널화는 고창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수혜군인 장성군과 협의하고 도로관리청에 타당성과 기본조사를 건의하겠음.
박병옥 의 원	○ 하전마을 227세대가 바다와의 거리를 3~5m를 두고 있어 사리나 조금 때 해일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하전마을 앞바다 일부를 매립하여 해일 피해를 막고 마을 농기계 및 주차시설로 활용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이는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함으로 타당성 승인을 받은 후 매립하여 해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대하 양식장 흰점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96%에 이른 바 인근 영광의 39%에 비해서도 엄청난 피해다. 이것은 적절한 행정지도와 원인분석이 미흡한 결과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 양식장 60개소 185ha에 크로로칼키 68톤을 지원 수산물관리소와 운인분석을 하고 있으며, 토질개선, 어장소독, 미생물사업 전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겠다. 안티 바이러스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과 토질개선만이 최선이며 클로로칼키 투입이 최상이 아니다.
김상필 의 원	○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 경쟁력 있는 소득전략 발굴과 브랜드화로 직거래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쇼핑몰을 육성 유통문제를 해결하고 직불제를 밭작물까지 확충하는 문제. 지원액 상향조정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상필 의 원	○ 보다 원활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도시외곽순환도로 월곡택지-노동저수지-호동-내동-고수 농공단지를 잇는 도로개설방안 • 현재 우회도로는 이미 시가지도로화 되었으므로 석교- 학전 - 덕산을 잇는 제2 우회도로 개설방안 • 성강주유소 - 5일 시장 - 천주교를 잇는 남북 관통로가 필요하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 보상금이 많아지므로 2003년 우선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 개설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월곡택지 - 고수농공단지 도로개설과 제2우회도로. 남북 관통로 개설은 2003년도 고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의원님과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내년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검토하겠음.
	○ 산림자원에 대한 수종갱신과 소득원 개발사업은?		○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병충해피해지, 불량임지, 벌기령 도달 임지 등에 대해 2000년까지 산림녹화 또는 경제림위주로 녹화하였으며, 그 이후는 약용수. 유실수 단기소득 작목으로 산주의 희망에 따라 수종을 전환하겠음.
	○ 사업의 객관성 있는 평가와 상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 대부분의 사업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받아 실과소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사업은 투융 심사를 실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상필 의 원	○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방안?	이강수 군 수	○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은 본인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기존교육 이외에 내년부터는 미래포럼을 실시 저명인사를 월 2회 정도 초빙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음.
	○ 원전 온배수에 대비한 칠산 앞바다 살리기 방안은?		○ 500ha의 인공어초와 5건 180ha에 대해 대체어장을 계획하였으나 모두 불가 통보됨. 그러나 93년부터 넙치외 5종을 방류하고 올해도 대하 800만 마리를 방류하였음. 또한 광역 해양조사 용역이 2004년 끝나면 군 명의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어장을 계획 중임.
	○ TV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은?		○ 고창읍과 무장면에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TV 시청에 어려움이 있다. ○ 현재 9개마을 540여 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KBS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 기술진과 협의 난시청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최인규 의 원	○ 1.2단계 농어촌구조사업, 육림사업의 육성, 복분자 비축자금, 황금어장 복원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300억원 이상의 농어촌 육성자금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농어촌육성자금 25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재정형편을 보아 우선적으로 확보 지원하겠음. 우선 내부의견을 조율한 후 향후 조례로 기금확대, 이자감면, 대출액 상향조정 등의 문제를 담아 상정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의 원	○ 농인이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고 향후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은 군 예산의 4%에 불과하며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전담 부서 시설과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 복지대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노인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힘쓰겠으며 노인 전담부서 등의 신설은 조직개편 시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여가프로그램은 노인회와 협의하여 보급하는 등 군 특수시책 개발로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내년 6월 중에 이뤄질 것임.
	○ 성과급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대기업 경영논리를 공직사회에 도입하여 많은 폐단이 노출되고 있다고 본다. 지급방법과 대상 그리고 추진 중 도출된 장단점은? ○ 향후 본 제도의 폐지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5급은 목표관리제, 6급이하는 상급자의 평가에 의한 근무실적 60%, 다면평가 40%로 평가하고 질고 양. 적시성. 업무개선도 등을 고려 지급하고 있음. 이 제도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복분자시험장에 3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품질이 저하되고 전통식품 Best5에서 탈락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음은 행정의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수의 향후 대책은?		○ 금년 1개 공장에 기술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품질향상과 서울 지하철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 또 25억원을 투입 고품질을 도모하고 과잉생산에 대비 냉동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쨈, 음료 등 품질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유와 같은 유제품 생산에 업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 인구 유입책으로 외지 공무원들의 고창 출퇴근 유도와 장학기금을 활용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유능 교사를 초빙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우리군의 1일 4-5명의 자연감소를 출생률이 따르지 못하고 교육, 정부의 영농정책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 기관단체. 건설업체 등의 현 거주민의 전입을 촉구 240명을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육성문제는 이사회에 상정 논의해 보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 의 원	○ 도깨비 도로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될 것이라는데 부푼 기대를 가졌던 군민이 허탈해 하고 있다. 무책임한 사업결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군수 의견은?	이강수 군 수	○ 도깨비도로는 우회도로 개설에 250억이 투입되고 새 도로개설시 착시현상이 유지될지의 불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온천지구 중장기 계획과 연계 보류하였음. 향후 사업 선정시 전문가의 면밀한 타당성을 검토 신중히 결정하겠음.
	○ 현재 실시중인 5급 공무원 복수직 배치제도를 지양하고 유능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플관리제 도입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의 50%를 넘는 직위에는 행정직 및 다른 직의 복수직렬, 1개 직위에 2인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한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 직렬로 하게 되었음. 따라서 풀 관리제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으며 저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 당초 흥덕IC로 된 서해안고속도로 IC명칭이 선운산IC로 된 과정과 군수의 견해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치 못한데 대하여 양해를 바람. 군에서도 명칭 변경을 위하여 도로공사에 여러차례 변경요구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흥덕 주민의 여론을 감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음.
이재정 의 원	○ 장기발전기획단 자문위원에 수산업분야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음. 우리군 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재검토 또는 보강 용의는?		○ 장기발전기획단의 수산분야는 해양수산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 수립되는 학술용역 시에는 수산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이미 자문이 끝난 상태라 이제 수산전문가를 포함시킨다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재정 의 원	○ 사업부서 특히 토목직 인원보강이 절실한데도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 계장을 담당으로 하였으나 실제 실무에 임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6과 7담당을 통폐합하고 전체인력 21.6%를 감축하였지만 토목직은 10%, 건축직은 1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정부의 읍면기능 전환방침에 따라 면의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하나 이를 전담하는 팀이나 조직을 구성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음. 6급 계장에 대한 실무업무 부여는 이에 대한 장단점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음.
	○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공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진다면 활성화가 예견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가로등 전기요금. 상수도를 값싼 공업용수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으며 업체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 애로청취와 정보를 교환하고 생산품에 대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겠음. 입주희망업체 또한 직접방문 상담하겠음.
	○ 우리군 관광지는 위치만 표시되었을 뿐 도로망 표기가 미흡하다. 세세한 도로망을 표기한 관광지도 발급과 우리 군의 관문에 고창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한데 설치의향은?		○ 종합관광 안내도는 현 고속도로 휴게소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선운산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인물 6,000부와 기존화보로 홍보하겠다. 금후 입체감 있는 홍보물을 제작 편의를 제공하고 IC 등 관문에 캐릭터 설치를 검토하겠음.

3. 제11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상필 의 원	○ 무공해 고당도 수박 등의 개발과 시설하우스로 출하시기 조정	이강수 군 수	○ 공지매 수박 25ha. 스테비아 수박 60ha. 친환경 수박 등 34ha 친환경 수박 확대 생산 중임.
	○ 고춧가루로 고추장 가공공장 설치		○ 고추가루 공장은 현재 부안농협에서 생산 판매중이나 고추장은 순창의 유명세에 밀려 사업성 검토중임
	○ 복분자의 차별화 방안		○ 비가림 하우스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발효주와 증류주 생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작목반의 구성과 지도육성 방안		○ 2001년 고추, 수박작목반 현 스테비아작목. 공지매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분자는 13개 작목반 1,400명이 연구하고 있음. 재정형편을 보아 기금확보 등 지원에 노력하겠음.
	○ 목표액 20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비 외에 기탁금 확보방안이 어려워 보이는데 동조례 제3조에 의거 군비 출연금 확대로 목표액 조기 달성할 용의는?		○ 당초 20억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IMF 등 사회적 어려움과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제한에 따른 어려움으로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국을 신설하여 모금하고 군비 10억을 출연한 후 부족하면 군비 출연을 적극 검토하겠음.
	○ 의회 매입승인 전 대금 지불, 주차장으로서 토지형태 부적합, 매입가격 과다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주차장이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가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될 실정이다 담당공무원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은?		○ 이 문제는 민선2기에서도 누차 논의되었으나 당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수목이 식재된 예정지가 잡종지인 현 부지보다 여건이 불리 매입한 것으로 안다. 또한 매입대금은 토지주의 개인적 시급성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급했으며 향후 유사사례 없도록 면밀히 검토 시행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1단계 사업비 42조원 등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농촌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군에 투입된 농림사업비는 총 얼마며, 사업 군별로 성공률과 향후 사후관리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94년부터 5,416억이 경지정리. 농기계. 비닐하우스 생산시설에 투입되었다. 경지정리 84%, 기계화율 99%, 저온저장고 1,761평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나 이농과 농정 포기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작목체계 개선으로 소득등대를 이끌어 내겠음.
	○ 생산, 판매, 유통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의 요구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현재 추진 중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농 · 축 · 수산분야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유통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채석장의 기간 연장이나 확장허가시 관리 소홀로 자연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어느 한곳의 적지를 정하여 개인 또는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검토할 용의는?		○ 채석장은 특성상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무조건 불허할 수 없다. 신규 또는 확장 허가 시 관광지, 도로변, 주민피해 등을 고려 명확한 지역은 원천 봉쇄하겠으며 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불가능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경영수익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방장산 개발은 석정온천과 연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삼림욕 · 등반로 개설, 행글라이드장, 쉼터 전망대 설치 개발에 대한 견해는?		○ 방장산개발은 석정온천과 연계해 개발을 구상하였으나 개발보다는 보존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등산로만 정비할 계획이며 패러행글라이더장은 국유림으로 산림청 서부지방 관리청과 협의 중이며 시간을 가지고 구상해보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소형 산간답은 경지정리에서 소외되고 준농림지로 지정되어 직불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비를 투입 이곳에 대한 논두렁 바로잡기라도 시행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ha당 15백만원이 소요되고 현 군 재정형편상 추진이 어려우나 향후 재정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검토하겠다.
	○ 내장산 톨게이트에서 바로 귀향하지 않고 고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읍시와 협조 요소요소에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 적절한 지적으로 이 문제는 8월중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에 상정 설치하겠음.
	○ 영교 소하천에 토사유입으로 주변 농경지 매몰 및 침수 빈발 이에 대한 준설용의는?		○ 우리 군 소하천 정비는 118개소의 24%만 정비된 상태다. 올해도 시급한 4개소에 11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나 영교 소하천은 현지답사 후 중장기 계획에 포함 정비토록 하겠음.
심재규 의 원	○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는 밭작물 작부체계가 농민의 자율에 맡겨있음. 향후 행정이 연구하고 홍보하여 작부체계를 체계화하고 인삼과 복분자의 이후 작목 선택은?		○ 작부체계가 수박과 고추에서 인삼과 복분자로 이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설복숭아 유기농 포도, 관엽류 재배를 확대하고 인삼 후작으로 녹비작물을 심어 토양을 개량하겠으며 조경수, 가시오가피, 참빗살나무 등을 시험 재배토록 적극 홍보하겠음.
	○ 농어촌버스의 적자가 늘어나고 정읍버스의 고창진입으로 인구유출과 재정적자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할 용의는?		○ 시내버스는 고창읍을 중심으로 80노선 357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정읍시와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1일 19회 운행되고 있다. 대형버스의 중.소형버스 전환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금년 5대를 중.소형 버스로 교체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심재규 의 원	○ 밀식과 잡목의 번창으로 노송이 죽어가고 잡목으로 성곽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조명시설의 보완으로 유명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노송은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금년에도 노후 소나무. 수간주사와 가지제거 작업을 추진 중이며 고사목과 리기다소나무 등 잡목제거는 읍성. 내외곽 산책로 정비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주변로 정비 또한 8월중 설계용역 정비하겠음.
	○ 효율적인 토양개량 사업을 위하여 필지별 토양특성을 전산화하고 특성에 맞는 토양개량제 투입 용의는?		○ 들녘별 토양검증을 실시 소요량을 판단 공급하고 있으며 읍면상담소에 간이 토양 검증기를 구입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소요량을 처방 적정량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전산화는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호남농업시험장과 협의중임.
	○ 경지정리 시 단비를 적게 투입 토사유출과 붕괴로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획일화된 경지정리사업비로 현대화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매년 군비를 투입 현대화율을 높이고 있다. 금년에도 17억 4천 9백만원을 투입했으나 군비의 한계가 있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상수도 확대로 기존의 정수장과 배수장이 흉물스러운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폐지하거나 철거 또는 농업용수로 전환하고 있음.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의회의 회의 장면을 케이블 TV를 통해 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의회소식은 매월 발행되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 의회란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회의장 중계방송은 의장의 권한사항으로 예산요구가 있을시 적극 반영하겠음.
	○ 14개 읍 · 면 체육관 건설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소외 읍면의 갈등 해소 방안은?		○ 성송면체육관은 특별교부세 3억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왕이면 다목적이용 시설로 또 고창읍과 가까운 곳에 지어 전지훈련 선수에게 제공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음면 체육관은 주민여론을 수렴 적절한 규모로 신축하겠으며 또 체육관이 필요한 읍면에는 국비를 확보 점차적으로 신축하겠다.
	○ 청청 테마파크 문제점? · 사업계획에 대표자 이름만 있고 참여농가가 누락 · 대표자 이각수씨와 군수와의 관계와 92%의 특혜 · 사업계획서 도면이 나타난 땅의 소유주 · 이 사업의 추진 이유		○ 농촌경관과 전통문화를 매개로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며 당초 도비 37.5%, 군비 62.5% 100% 보조사업이다. 선정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 한국관광공사가 10대 관광지로 뽑은 청보리밭만이 신청되어 선정되었다. TV등 주방용품은 마을회관에 지원되고 참여 농가의 명단이 없는 것은 구역 내 농가수만 기재한 것이고 토지 소유자도 농장 주변을 지도상에 표기한 것이지 구체적 지번별 조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각수씨 또한 사업신청서상 대표일 뿐인데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지난 1년간 인터넷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	이강수 군 수	○ 70개소의 인터넷정보화 사업은 66.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번기 개소와 주민들이 대장작성을 꺼려 누락분이 있기는 하지만 회선사용 내역을 보면 12,718회 접속 16,682 시간으로 볼 때 많은 이용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개선방안을 듣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 마을별 홈페이지 작성 등 전자상거래 판매체계도 갖춰 나갈 생각이다.
	○ 선운산관리에 관한 질문? •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상사화 추제의 프로그램을 군민에게 홍보 • 대형주차장이 상가를 거치도록 이동하는 문제 • 주차장에 번호를 부여하고 입구 과속 방지턱을 나무를 제작하는 문제 • 매표소 앞 상추를 꽃으로 대체 • 선운산에 모양성을 홍보하는 안내 입간판 설치문제 • 양고살재 4차선 터널화 추진과정을 상세히 밝혀달라.		○ 금년은 별도의 상사화 제보다 수산물축제 시 일부 테마행사를 추진중이다. 주차장 번호부여 목제방지턱, 주차장확포장 문제는 반영하겠으나 대형주차장 이전문제는 어려움이 있어 생태 숲 조성사업 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매표소 앞 상추는 이미 제거하였고 모양성을 부각시키는 관광안내판 비교 검토 하겠으며 양고살재 터널화는 국토연구원에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남규 의 원	○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삼, 복분자, 녹차 등을 욕탕재료로 활용 외죽도나 동호에 해수탕을 건립할 용의는 또한 부창대교 건설 이후 외죽도에 선착장과 횟집단지, 쾌속보트, 전망대설치 등 해양관광종합개발을 할 용의는?		○ 경영수익사업은 어려운 지방재정상 필요하나 신중해야 한다. 제안하신 해양종합개발 사업은 진행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장기발전계획에 반영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우리 군이 보유한 관광시설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동승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탁 또는 직영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셔틀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군이 직접 운영 시 민간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관내 여행사의 참여를 검토해보겠음.
	○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마을을 산촌종합개발과 연계추진하고 공가를 정비 콘도식 분양과 동시 무공해 야채류 판매로 소득증대 방안은?		○ 테마마을은 산촌종합개발에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는 임야면적 70%가 넘는 읍면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유사사업인 어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시 이 문제를 적극 반영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
	○ 우리 군에도 날씨가 따뜻하여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동초등학교 부지. 오리방죽을 이용한 전지훈련장 개설 용의는?		○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동초등학교 부지를 보조경기장으로 만들어 상시 전훈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오리방죽과 백양저수지도 매립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적인 축제문화를 도입 행사 내용에 부합된 특산물의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는 테마축제로 개선할 용의는?		○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년중 개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작물은 차별성이 없어 별도의 축제가 어려우며 축제의 전반에 걸쳐 주민여론과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재정 의 원	○ 조직진단결과에 의하면 업무와 기능개선이 적어 보이는데 진단 이후 토목직 야간근무는 얼마나 줄었으며 향후 업무확대가 예상되는 상수도 담당업무 분리계획은?		○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의 배치는 읍면 기능전환지침에 맞지 않아 대안으로 6급1명과 하위직 1명으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목직 업무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역과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 또한 상.하수도 담당 분리와 상.하수도 사업소도 검토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재정 의 원	○ 면 규모가 제일 적은 성송면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투자한 것은 지역실정을 고려한 투자인가 향후 면 단위 체육관 신축계획과 공음면 체육관의 규모는?	이강수 군 수	○ 성송면 체육관은 특별교부세 3억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왕이면 다목적이용 시설로 또 고창읍과 가까운 곳에 지어 전지훈련 선수에게 제공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음면 체육관은 주민여론을 수렴 적절한 규모로 신축하겠으며 또 체육관이 필요한 읍면에는 국비를 확보 점차적으로 신축하겠다.
	○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품질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용의는? ○ 특산물 지정현황과 향후 품질인증제 도입방안은? ○ 최근 3년간 일반품질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개인과 업소수와 지원금액은?		○ 농산물뿐만 아니라 먹거리에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으며 최근 3년간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13개 품목에 48농가이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저온저장고 등 4억 5천만원을 지원함. ○ 향후 조성중인 어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말가족농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
	○ 특화작목, 특산물, 문화유적지와 해안선을 연계한 코스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행정지원은 면마다 소득 작목이 중첩되고 피해 시 책임소재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특화작목을 육성재배하고 품질인증, 브랜드화에 노력한다면 사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
박영구 의 원	○ 내수면 조성사업의 확대로 토종어종을 확대할 용의는?		○ 이를 위해 관내 저수지에 빙어란 200만립과 붕어 1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재첩.참게. 자라. 쏘가리. 동자게를 놓아기르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95년 궁산저수지를 본 군과 삼양사간 계약체결한 이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고창 농조로 소유권을 변경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당시 삼양사가 저수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됨으로서 95. 6. 21. 20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거 당시 농지개량조합에 포괄 승계토록 하였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13호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안면 정주권사업에 소재지 우회도로 폭 수정과 인도 미설치 일부구간 측구 미설치 등이 주민과의 협의 없이 추진한 이유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방지책은?		○ 정주권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거쳐 실시하였으며 노폭이 8m로 협소하여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과속방지턱과 교통안전시설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 인촌생가 진입로 옹벽공사가 주민들의 허위 진정서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7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하고도 석축이 아닌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로 시설하여 예산을 낭비한 군수의 견해는?		○ 설계변경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농경지면이 성토부분 비탈면으로 지반이 약하여 강우시 법면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예방조치였다.
	○ 원전으로 연안어업이 사라지고 축제식 야식이 성행했는데 그나마도 남은 축제양식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 우리 군의 주 양식품종인 대하의 대량폐사 등에 대체방안이 없어 고민이다. 군에서는 고창 수산기술관리소 도의 수산시험연구소와 협의 경제성어종 시험 양식과 EM(유용미생물군)을 이용 수질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심원면 2개소에 민간자본을 투입 돌돔.복어.대하.꽃게.기타 어류에 대한 복합양식을 시험하는 등 축제식 양식장 활용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음.

4. 제119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전춘식 의 원	○ 경지정리 후 야산개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곧잘 하자가 발생 민원이 비등해지고 소류지의 제방이나 여수토 등이 노후되어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방의 잡목제거나 그라우팅 시행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경지정리 용배수로는 총 1,121km로 30%에 이르고 있다. 향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82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도 연간 30억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317개소에 대한 소류지는 연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억 3천을 투입 15개소를 보수하였다. 지속적인 소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농촌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농촌공동화 현상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차산업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3차산업 유치에 전력하여 우리군의 1차산업 인력을 3차산업으로 흡수하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이 병존하는 미래 고창을 만들겠다.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너무 획일적이다. 주 5일 근무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의향은?		○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 노래, 한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보겠다.
박현규 의 원	○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에서 다년간 연차적 보상을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수산당국의 노력과 무면허. 무신고어업에 대한 보상 그리고 본군의 행정지원 결과와 향후 방안은?		○ 어선어업에 대한 70억원. 천해양식업에 대한 230억원 등 총 300억이 지원되고 보상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는 2005년 5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해서도 13.2Km 내에 한하여 보상을 원칙으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전력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현규 의 원	○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정, 사회복지, 환경위생, 산업경제 등에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함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사무관 보직은 기관별 정책기준,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직렬, 소요연수, 경력 등을 감안 되도록 전문직이 배치될 수 노력하겠음.
	○ 급속한 노령화사회에 대비 노인회관이나 경노당보다 실버타운을 건립할 의향은?		○ 현재 555개 행정리 중 34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면서 연료비.간식비.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내년도부터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찜질, 지압, 마사지, 안마를 주 기능으로 한 롤링 베드를 보급할 예정이며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실버타운 조성은 어렵다.
	○ 수입개방으로 수산기반도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대책은?		○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93년부터 10년간 5억7천만원을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해 9백만원을 투자하여 대하, 꽃게, 넙치, 백한 등을 방류하고 2004년도에는 백합종패 넙치치어 등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 실내체육관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전국대회를 치뤘다. 약간의 보강만 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 공감하는 사항이나 신축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현 시설을 보완하고 공설운동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활용 전국대회 유치를 검토해보겠음.
박영구 의 원	○ 지난 군정질문에서 농업재해보험금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지원성과와 향후 대책은?		○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2개 품목으로 가입을 목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타 작물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쌀, 비가림하우스, 인삼 및 복분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규모와 성과 그리고 향후 농정방향과 지원계획은?	이강수 군 수	○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141ha에 4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44%를 1품종 1사일로 보관을 하고 내년에는 1,000ha를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가림하우스는 매년 20억 정도를 투입 103ha를 설치하였으며 인삼재배는 24.4ha에 4억 9천을 투자하였으며 매년 4억을 투자 20ha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분자 특화단지는 25ha에 17억 5천만원을 내년에도 10억원을 지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 사리부설에도 5억을 투자하겠다.
	○ 재해 피해조사 시 읍면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피해보상에 비합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피해조사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보고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면밀히 조사토록 하여 지원에 누락분이 없도록 하겠다.
	○ 농민, 농협. 행정이 참여한 농정발전위원회 구성 용의는?		○ 농림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있는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었음으로 본회의 발전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하겠음.
	○ 95억이 투입된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떤 방법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이며 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군 투융자심사를 받는 이유는?		○ 500평 규모의 건립계획이 집합시스템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72억으로 증액되었다. 향후 다기능경매장을 추가할 경우 23억이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23억 2천을 확보했으며 2004년도 45억 등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2003 투융자지침에 따르면 의존재원이 수반되지 않고 자체재원이 증액될 경우 당초 심사기관에서 심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황토쌀 북한지원 경위 그리고 군정소식지 왜곡보도의 책임과 정정보도 의향은?	이강수 군 수	○ 2003. 7월 KBS 노래자랑 평양공연 시 1억정도의 황토쌀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군정소식지에 보도하였으나 협의 중에 무산되었음. 우리 쌀의 홍보의욕으로 일어난 일이니 양해를 바란다.
박병옥 의 원	○ 관광지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가지고 이미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선운산은 9개 수종이 난립하고 있다. 동백으로 통일할 의향은?		○ 동백은 음수로 수고가 낮고 생장속도가 느려 가로수로 적합지 않으며 타 수종으로 단일화 문제는 비용과 생장기간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임. ○ 현재 가설중인 4차선 도로를 단일 수종인 단풍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95억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이중 80억원이 군비인데 군비 조달 방안은?		○ 500평 규모의 건립계획이 집합시스템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72억으로 증액되었다. ○ 향후 다기능경매장을 추가할 경우 23억이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23억 2천을 확보했으며 2004년도 45억 등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겠음.
	○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이행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컨대 전봉준장군 생가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은?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대부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겠음. 특히 전봉준 생가는 금년 2천만원으로 주차장. 내년 1억원으로 진입로 포장. 2005년 5억2천으로 전시관. 생가터잔디. 표시주 동상 등을 설치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 의 원	○ 올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군비 지원이 30억이고 이러한 관행은 매년 계속될 터인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현재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농협유통체계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유통을 활성화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강구해나갈 것임.
	○ 경지정리 단비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토취장 시설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 토취장은 우선 국공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겠으며 용.배수로는 1년에 1억 4천을 투입 2회 준설할 계획임.
	○ 6급공무원 승진발령 시 소위 Big6로 불리는 직위에 편중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인사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직위공모제이지 이들에게 특혜가 간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어느 자리에서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토록 할 생각임.
	○ 체육관이 고창군 전체 발전을 외면하고 남부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 특정목적사업비로 충당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남부에 치중된 것 같다. 면단위 체육관은 상하, 대산, 성송 3개소이나 대산은 마사회기금, 상하는 원전지원사업비, 성송은 교부세 및 군비지원으로 지었다. ○ 내년도 공음면도 교부세 3억과 군비로 신축할 예정이며 향후 군비 축소와 대상지선정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임.
	○ 고창천에 설치된 분수는 오히려 하수오염을 가주시키고 있는데 철거 용의는?		○ 그동안 퇴사적체 및 민원으로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설 등 시설보완에 철저를 기할 것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 의 원	○ 흥덕면에 유치계획이었던 각종 사업무산과 유치 시 행정에 역할을 믿었던 흥덕면민의 허탈감에 행정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그동안 한승항공 등 여러 항공회사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으나 의지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 그러나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 향후 흥덕 면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앙일보와 인터뷰는 없었다.
정원환 의 원	○ 청정테마파크가 당초의 계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한데 감사하며 향후 연속성이 유지되고 인근주민의 이익창출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자금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 제안하신 내용은 사업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음. 사업계획 변경은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특혜성시비 때문이 아니다.
	○ 고창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사업소의 분산을 조장하고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제2청사 신축 계획을 재고하고 예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겸비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 이전 신축이라면 당연히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해야겠지만 금번 공사는 엘리베이터 등 시설보완을 위한 증축공사다. 또 군재정이 넉넉하여 멋진 행정타운을 지었으면 좋겠지만 300억원의 예산확보가 어렵다. ○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설계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고 현 청사를 도서관 등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시설의 중복과 고가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할 때 입주단체가 있을지 숙고해야 할 문제다.
	○ 농산물유통센터 등 대형사업의 군비조달 방안은?		○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국비,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비 투자계획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각종 축제를 기 조사된 여론에 따라 통폐합 내지 축소하고 우리의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축제를 통합하여 단기간에 외지인이 고창을 방문하는 것보다 연중 꾸준히 우리 군을 방문해야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양성제는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문화관광부 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 받도록 노력하겠다.

5. 제12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기획감사실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적 기능 역할 방안모색	이강수 군 수	○ 기획감사실은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균특예산 전라북도 최고확보, 농촌종합마을사업 70억 확보, 지자체 채무운용실태 전국최우수, 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 보건복지부분 최우수단체상, 부패방지시범기관선정 등 각종 행정실적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소속공무원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병충해(연작)로 인한 2003년도 밭작물 피해액수 2004년도 피해예상액은?		○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3년도에는 고추, 노지수박등 조소득의 70%인 409억원이며 금년에는 고추 27%, 수박40%의 역병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어 긴급 예비비 포함 2억5천3백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비가림하우스 설치 신청 면적과 신청면적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 추진(해결)방안에 대한 군수 생각은?		○ 비가림 하우스 농기희망 면적은 448ha로 404억원 정도 소요되어 군 재정상 일시 지원은 어렵고 농가 안정적 소득기반을 위해 작년에는 38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53억7천4백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도 87,6ha를 요구하였고 매년 70ha이상 비가림하우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의 원	○ 대형사업 다발로 인하여 군비 부족으로 소득창출 예산을 확보치 못하는데 다발형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시기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강수 군 수	○ 군청사 증축, 농산물유통센터,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이 모두가 군비투자율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 근무환경 증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 마다 앞 다투어 유치하려는 사업으로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 유치활동의 성과이며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소득창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고 확보된 국비 예산은 타 용도 사용은 불가하고 미사용 시 반납해야 하므로 재검토 시기 조정은 어려움.
	○ 제2청사 문제에 대해 추진과정과 청사신축에 대한 시급성, 주차대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군청사 증축은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본 사업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이상 사무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등과 사무실부족으로 분산되어 있는 일부 실과소를 찾는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공무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증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15대정도 주차공간 확보와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키 위해 직원차량은 고창고로 주차토록 유도
이재정의 원	○ 복분자 산업 시스템과 시험장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과 복분자 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시스템구축과 연구인력 증원과 연구분야에 투자할 계획은?		○ 현재의 인력이나 장비로는 연구활동에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연구활동만 하고 있음. ○ 가급적 연구활동사업은 대학이나 연구소등에 의뢰 공동으로 추진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재정 의 원	○ 복분자 산업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복분자 시험장장을 5급으로 승격하고 군수 직속기구로 두어 특화사업으로 승화 시키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복분자 시험장장을 5급으로 하고 군수 직속기구로 두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5급 공무원을 시험장장으로 임명하기위해서는 6급 4인 이상의 정원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복분자시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5급상당) 산하에 있는 복분자 담당으로 기구를 개편하여 5급 시험장장장과 직속으로 두기는 어려운 실정임.
	○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를 관광명소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 섣불리 개발하는 것보다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의 파괴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환경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실시하여 자연환경이 보존된 관광지로 개발해 가도록 노력
	○ 우수한 농특산물을 읍면별 내지는 작목반별로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브랜드화 시키고 집중 육성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과 군수의 견해는?		○ 의원님 생각과 동일하며 읍면별 품목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은 수박이나, 복분자등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 힘들고 품목별 작목반, 영농법인으로 육성할 계획임.
	○ 우리고창 복분자주와 정읍, 순창등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의 차이점과 우리지역에 특성 있는 복분자주 생산에 대한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 타지역의 복분자주는 희석식 리큐류주이고 군 관내업체의 복분자주는 발효주로써 품질 및 약리면에서도 우리복분자주가 월등히 우수함 ○ 지역특성에 맞고 자부할 수 있는 복분자 와인 복분자 원액을 이용한 발효주, 증류주 생산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농촌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가가 농기계 구입시 보조금 지원 할 생각은?	이강수 군 수	○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비로 소형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논두렁 조성기 40대, 관리기 14대 상토제조겸 콩 자동탈곡기 20대를 지원하였음 ○ 대형농기계도 농민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원하지 못함을 이해
	○ 정부의 농림사업대하여 향후 10년동안 지원에 따른 우리군의 장단기 계획 및 대응전략이 수립되었는지?		○ 농림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강화를 위해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업, 농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균특회계사업으로 대부분이 119조에 포함되어있음 ○ 앞으로 복분자 관광빌리지, 인삼산업 확충, 농촌종합마을 등 우리지역에 맞게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 석정온천개발에 대한 2004년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복안을 무엇인가?		○ 89년 4월 온천발견 신고후 95년 기반조성공사를 착수 사업시행중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2001년 8월 청산형 법정관리를 관할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2003년 마무리 한후 금년 1월 토지소유권 이전 및 대물변제가 완료되어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이강수 군 수	○ 앞으로 고창군 소유인 휴양촌 부지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우선 투자토록 유도하고, 롯데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9만 4천명에 종합온천장, 관광 호텔, 콘도, 스포츠타운 등 민간보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관광지 투자설명회에 참가하여 투자토록 홍보 등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고창읍 월곡리 신림 반룡간 군도 23호선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완공시킬 의지는?		○ 당 구간은 2008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미 포함되어 있어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군 재정형편상 단 기간에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마을 안길, 진입로, 광장 등 훼손된 포장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일부 실시하였는데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덧씌우기 사업 시행 계획은?		○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34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으나 금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이 시급한곳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포괄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임.
	○ 읍면의 농민상담소, 보건진료소의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군민에게 불편과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과수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책은 없는지?	이강수 군 수	○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농가가 부담하는 30%중 10%를 보조토록 하여 군비 1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임. 또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사업외 4개분야 7백 25억원을 농림부에 요청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과수 기반정비 및 규모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상포 지역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촌체험마을로 적합한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어촌체험마을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 상포 어촌계 지역은 천연의 갯벌이 발달된 지역으로 바지락, 가무락 등 어민소득증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해양수산부에 자율관리 어업육성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천된 상태로 2년간 정부지원을 받는 우수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 해안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상암~후포간 관광사업도로는 총연장 7.1km로 기반시설사업으로 8개 로선에 4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국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전체대비 17%인 2개 로선이 투자되었음. ○ 내죽도 연육도로 사업은 125억을 투자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실시할 계획임.

6. 제129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행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고라리 공설묘지 사업은 부적합한 사업시행이 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예산낭비 사업시행 방제 대책과 책임행정구현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고창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수해복구 사업은 전북대학교 시설용역결과 5가지 공법 중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성토공법을 배제하고, 사면의 안정성 등 예산이 절감되는 계단식 옹벽과 앙카 공법을 시행하였으며, 무장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북향으로 조성된 묘기는 매장 기피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운영시 타 공설묘지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묘를 살려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주요사업 추진이나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시 의회와 상의 행정력 소모방지와 선진자치의 초석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 주요사업이나, 예산편성시 다양한 경로로 의회에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예산 확보 순기에 맞추거나 시급을 요할 때 불가피 사전 협이 없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한 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 무장읍성 복원 및 주변 연계사업 개발의지는?		○ 2005년에는 4억 2천 9백만원으로 사유지 매입과 성곽보수, 간벌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곽보수 정비와 관아건물 10동에 복원을 위한 2십 7억 3천 1백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와 무장읍성과 연계한 전통 한옥촌 지정에 대하여 전문가등의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별도 예산확보는?	이강수 군 수	○ 문화재 긴급보수에 따른 시급을 요할 때는 pool 예산이나 예비비 등으로 보수 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의 지원없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박현규 의 원	○ 수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은?		○ 2005년도에는 원시자연이 살아있는 광활한 심원 하전 갯벌을 중심으로 전 해안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수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 해양관광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음.
	○ 축제 전담팀 구성은?		○ 현행과 전담부서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 후 신설 방안을 검토 해 보겠음.
	○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은?		○ 축산법 개정으로 문전거래를 허용한 후에는 가축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가축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전국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전국대회 유치(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의향은?		○ 군 단위 실내 체육관 건립에 동감하며 현 체육관의 내구연한등 현재는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방안을 강구하겠음.
이귀섭 의 원	○ 부창대교의 향후 시행 계획은?		○ 2005년 9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중앙관련 부서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생산과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 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농업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동 이익을 향유토록 추진하겠음.
	○ 석정온천 조성(개발) 방안은?		○ 6월에 서울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와 지난 7월 한국관광공사에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홍보 및 롯데건설,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등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내경기가 호전되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석정온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박영구 의 원	○ 부안면 선운리 국화단지 편의 시설확충 및 경관농업단지로 지정 요청할 의향은?		○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경관농업단지 지정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친일 및 친 독재 군부에 대한 행정 때문에 지역정서와 지역여건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 축구 전지훈련 보조경기장 조성		○ 금년 1월에 1억 7천 여 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경기장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비를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음.
	○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대책은?		○ 양여금 삭감액 2십 3억 3천 7백만원은 2005년도 군비로 확보하여 추진 계획이며, 시급한 노선은 군비를 확보하여 건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전춘식 의 원	○ 영광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우리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응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여러 차례 영광군을 방문하여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에서 법적 대응은 어렵고 피해지역(상하면) 주민과 연대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하면 주민들에게 적극대응 토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구시포 1종항 조속 완공 추진방안 및 2005년도 사업비는?		○ 2005년도 사업비는 20억으로 연육도로 60m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산촌 · 어촌 · 농촌 체험지를 농어촌 종합 체험관광지 구축은?		○ 주5일 근무제, 자연 지향의 가치관 5도 2촌 시대 생활 등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도 경관농업지구 조성, 체험마을 조성, 도농 교류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임.
정종구 의 원	○ 쌀 산업에 대한 특단에 대책과 농산물 도난방지 책은?		○ 스테비아 쌀, 고아미 쌀, 오리농법 쌀등 기능성 고품질 쌀을 생산, 농가와 행정 모두가 한 차원 높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 CCTV 설치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제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동리국악당 500석, 청소년수련관 250석을 이어 650석 예술회관을 지으려 하는데 활용방안은?		○ 창극과 연극, 뮤지컬등 국내 유명 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대중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유치하여 많은 외지인 및 군민들이 찾아오는 공연장으로 특화하여 운영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병옥 의 원	○ 게이트볼 장 전기료, 수도료 등을 지원할 의향은?	이강수 군 수	○ 읍면의 게이트볼 장 1년 소요예산 1백 5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음.
	○ 머물고 갈 수 있는 선운사를 위하여 선운산 개발 계획은?		○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천혜자원으로 활용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며, 화장실 건립 시는 관광지의 특성에 맞도록 건립토록 하겠음.
	○ 복분자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사업체를 통합과 복분자주 명성화 방안은?		○ 복분자주 공장 통합은 사기업체로 군에서 직접 관여 할 수 없으며,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고창복분자주가 전국에 판매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상의 방안을 마련하겠음.
	○ 산물 수매시 수분함량에 따라 농가에게 정확히 지급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방안은?		○ 정부추곡수매 지침에 수분 감량분 만큼 차감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화에 따라 비용, 노력, 시간을 편리함으로 많은 농가가 이용 하는 만큼 농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수분측정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RPC 대표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음.
이재정 의 원	○ 농공단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입주 조건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율을 인하할 의향은?		○ 입주 조건은 타 시군과 별다른 차이는 없으며,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 보전율은 3%이고 융자 한도액이 1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 한도액과 이차 보전율을 상향 조정은 검토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재정 의 원	○ 복분자시험장 연구소 승격은?	이강수 군 수	○ 복분자 시험장은 현재의 인력이나 연구활동에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연구 활동만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소 승격을 추진하여 복분자 메카로서 입지를 구축하겠음.
	○ 고창군 시가지 불법 주차 대책은?		○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고창문화센터 건립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군청과 읍사무소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 점진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음.
정원환 의 원	○ 대형 사업 발주 시 주민공청회 실시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도 않아 주민여론이 반영되지를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 군민 전체를 상대로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농산물 유통센터는 기본설계 시 농민단체 대표들과 수차례 설명을 가졌고 예술회관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바 있고, 군청사 증축은 1997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민선3기 군수로 취임 후 의회와 협의 추진하였음.
	○ 고창군의회의 독립성 보장 부분과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편성에서 비민주적이고 비의회적인 처사로 생각하며 이에 재발방지 대책은?		○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별도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의회에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고창을 살릴 수 있는 뉴딜 정책은?	이강수 군 수	○ 관광산업 육성과 복분자 빌리지 조성사업 고창읍 소도읍 육성,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구시포 어항, 골프장 건설, 신규농공단지 조성, 내죽도 개발,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해안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이루겠음.
	○ 노인회관 건립시 3개면에 1개씩 준 노인회관을 건립해야한다고 생각되는바 군수의 견해는?		○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인구가 밀집되고 타 면민이 모두 활용하기 편리한 고창읍에 우선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실비전문 요양시설 등을 건립하여 사회복지 종합 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 양고살재 터널화 사업 추진의향은?		○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노선은 현재 진행중인 노선으로 확정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사업으로 양고살재 터널공사로 추가하거나 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됨.
	○ 노인회관 건립시 3개면에 1개씩 준 노인회관을 건립해야한다고 생각되는바 군수의 견해는?		○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인구가 밀집되고 타 면민이 모두 활용하기 편리한 고창읍에 우선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실비전문 요양시설 등을 건립하여 사회복지 종합 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의 원	○ 군정 소식지 발행에 따른 예산이 3억 3천 8백 7만 9천원으로 과 증액 된 이유는?	이강수 군 수	○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들이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 군정 소식지 요청이 많아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보내주고자 군정 소식지 확대 발간하는 사항임.
	○ 고창읍, 석정온천 등에 대단위 국화를 식재하여 관광객 유치 할 계획은?		○ 고창읍성 주변 및 공유지에 국화 식재는 검토해 보겠습니만. 석정온천 부지 국화 단지 조성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토지주와 상의를 해보겠으며, 고창군의 소유땅이 약 1만 2천여평 정도로 그것도 한 단지로 되어있지 않고 휴향촌부지, 온천공부지, 가압장부지 등 나누워져 있어 군유지만 가지고 단지조성이 어려워 석정온천 국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시켜 특화할 수 있는지 많은 의견이 필요하여 의원님과 따로 논의 했으면 함.
	○ 추모의 집 선정 과정은?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방안 심의결과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 고창 노인 사랑회와 재단법인 영모묘원이 응모 무기명 투표결과 노인사랑회 9, 영모묘원 0표로 사단법인 노인사랑회가 수탁자로 결정되어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04년 수의계약 발주사항은?		○ 1천만원 이상 169건에 31억 1천 7백만원이며, 1천만원 이하는 260건에 36억 6천 4백만원으로 이중 수의계약 발주한 공사는 19건에 3억 7천 3백만원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고창의 노래 제작 과정은?	이강수 군 수	○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문화유산, 명승지등을 소재로 가사를 공모하여 노래를 만들어 우리 고장의 인지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5천원만의 보조금으로 가사를 접수하여 17편이 접수되어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당선작 3편과 가작 3편을 지난 10월 26일 확정 발표하고 11월21일 제2회 고인돌 마라톤대회 식전행사시 가수 현숙, 최진희등 연예인이 8,000여명의 전국 마라토너와 많은 군민이 모인 가운데 고창노래를 발표하였음.
	○ 공음면 선동리 과다 투자로 인한 민심 이반 대책은?		○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는 경관지구로서 대규모 면적과 주변여건이 좋아 개발하게 되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개발 소외를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투자 농민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최인규 의 원	○ 사무관 승진시험 50% 시험실시 방안과 기존 인사 관행인 빅6 위주의 승진을 탈피 5급 ○ 승진에 대한 객관적 의지는?		○ 금년 1월부터 승진의결과 일반승진시험을 5할씩 병행실시하고 5급 승진은 특정 직위에 있는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승진은 배수에 든 승진 후보자 중에서 고 순위자 및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업무실적, 경력, 청렴도, 군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진토록 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 의 원	○ 각종 축제를 시기별, 품목별, 연중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은?	이강수 군 수	○ 연중 테마별 축제 개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최방안을 강구하겠음.
	○ 지역경제과 및 허가담당 신설 추진 방안은?		○ 과 단위 행정기구 설치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역경제과 신설은 어려우며, 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으며, ○ 허가담당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음.
	○ 복분자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 내년 6월초에 복분자 축제를 개최하고, 복분자 산업특구 지정과, 관광 빌리지 조성, 복분자 프라자, 가공 산업단지 조성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복분자 술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복분자 엑스포 개최는 여건이 성숙되면 개최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팀 운영은?		○ 지난 5월 10일 농공단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단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농공단지 추진 사업이 본격화 되면 사업추진에 맞는 조직으로 보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 의 원	○ 예술회관 건립시 최첨단 및 예술성을 가미하여 예술회관 다운 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이강수 군 수	○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으므로 예술적 가치가 가미된 예술회관을 건립키 위해 전문가는 물론 군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건물로 설계하여 건립하고 소요 사업비중 65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3억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등 14억의 국 · 도비를 확보하는 등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제13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심재규 의 원	○ 관내 용배수로 현대화율을 33%에서 50%선까지 높일 의향은?	이강수 군 수	○ 현대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1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농업용수를 보관하는 소류지 준설사업을 확대할 의향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시 나오는 준설토를 사전 계획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전체 소류지 317개소 중 50개소에 대해 준설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며, 준설토는 사전에 사토장을 정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토양개량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임.
	○ 대산면 상금리와 성송면 암치리 중간에 위치한 고산산성 개발과 상금리 고인돌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할 의향은 없는지?		○ 전문가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하여 문화재 지정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상금리 고인돌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는 현재 남부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에 있으므로 관광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구해 나가겠음.
	○ 성송면 대신제 축구 보조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연약지반과 토지형태가 경기장 규격에 미달되어 우선 운동장 부지로 조성.활용하고, 추가부지 매입과 지리적 여건 등을 보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심재규 의 원	○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겹쳐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일원화 의향은 있으신지?	이강수 군 수	○ 과단위 신설이나 통합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도내에서는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이 일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다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군 관내 야산 개발지에 식재된 인삼 경작지가 5년 후에는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이후 야산 개발지에 대한 작부체계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 야산개발지 작부체계는 고창을 대표하던 수박, 땅콩에서 복분자와 인삼 등의 식재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현재 경작하는 작목 외에 고구마, 늙은 호박 등 새로운 소득 작목과 조사료, 조경 등 친환경적이고 소득이 높은 대체작목을 많이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작목체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농촌지역이 고령화 되면서 노인들이 농어촌버스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버tm 노선 재조정과 소형화 방안은?		○ 도로상황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대한고속과 협의,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대형버스의 중소형 버스로의 전환은 현재 32%가 중형버스로 교체되어 운행 중이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박영구 의 원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혁신 도시 미 신청 사유는?		○ 유치 추진단과 민.관 합동 유치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와 학국식품연구원 등 유치를 위해 재경, 재전 향우회, 공우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는 접근성 및 산업연관성, 산.학.연.관의 연계가능성 등 여건 불비로 신청이 배제되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안면 선운리 국화단지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과 경관농업단지 지정은?	이강수 군 수	○ 상반된 지역 정서와 분분한 의견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한 편의시설 확충은 검토해 보겠으며, 경관농업단지 지정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내죽도 연육도로 개설사업이 부진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과 향후 추진 계획은?		○ 총 1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2년 기본조사 설계를 시작으로 2003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금년도 예산은 총 2억으로 연육도로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임.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 부안면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투자한 예산과 앞으로 수산업 종합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은?		○ 19억으로 축제식 양식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대량 폐사되던 대하 양식을 농어와 감성돔으로 어종 전환을 유도하여 일부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어종 개발 등 수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음. 또한 선운리 숙박시설과 식사시설은 선운사, 어촌체험관광마을 등과 연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이귀섭 의 원	○ 올해 신규로 심어진 복분자 면적이 428ha에 이릅니다. 내년도엔 복분자 공급이 과잉현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 장기적으로 복분자 가공제품 공장 유치와 음료수, 차, 환 등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복분자 생과 연중 판매체계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석정온천 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이 온천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466명의 토지주와 각 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토지주들과의 의견일치와 민간지주의 재산을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5대 채권자와 지주 등과 개별 접촉으로 민간 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석정온천 지구를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관광 레저형 거점단지로 개발할 계획임.
	○ 흥덕, 부안, 성내, 신림면에 대한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북부권 개발에 단기 사업예산 투입 계획은?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투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원전 철탑으로 인해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미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철탑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벌여야 하며, 또한 원전사업에 있어 원전고로가 있는 영광군은 85%, 우리군은 15%를 지원하도록 되여 있는 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한수원에 지중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회신만 하고 있음.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원자력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원전주변지역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과 협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회, 사회단체와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이재정 의 원	○ 인기 연예인을 섭외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를 임명하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우리고장 출신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기 개그맨 김지선씨를 금년, 제32회 고창모양성제시 문화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우리군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재정 의 원	○ 고창을 대표하는 관광지 선운산 도립공원에 송창식이 부른 선운사 노래비를 세우는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노래비가 건립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과 가수 개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립 방안을 강구해 보겠음.
	○ 이제 소비지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농협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유기농법인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지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은?		○ 2005년도 특화단지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맞춤형 친환경 인증 쌀을 생산토록 하고 있으며, RPC가 통합되면 고창쌀을 단일 브랜드화하여 홍보와 판매 전략을 수립, 고창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분자 관련 다양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관광 빌리지 사업에 대기업이나 전문 생산가공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방안은?		○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향식 사업신청에 의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외부기업 유치나 자본 영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흥덕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음.
정원환 의 원	○ 지난달 통과된 추경예산 가운데 증액된 일부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었는지 밝혀 주시오?		○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음.
	○ 고창읍 상가 가운데 124곳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기 부양 대책은?		○ 인구증가 방안의 일환으로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과 공무원가족 전입, 각급 기관 및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방안도 강구 중에 있음. 또한,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운동과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전개, 군 발주 사업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외부업체가 지역내 대다수 사업을 발주 받고 하청업마저도 외부업체가 수주 한다고 하는데 중대형 사업의 발주현황과 그 하청업의 현황을 답하여 주시고 특히 고창군 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몇 %나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람.	이강수 군 수	○ 선운산 생태숲 조성공사 등 6건으로 선운산 생태숲 조성공사만이 의무 하도급 공사로 전주에 있는 업체와 토공부분 하도급을 체결 시공 중에 있으며 의무하도급 공사가 아닌 나머지 5건의 공사 중(4건은 원도급자 시공)학천~무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관내에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공 중에 있음. 또한 고창군 건설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005년도 입찰에 의하여 발주한 58건 중 31건으로 53.4%임.
	○ 공공도서관 신축 예정지가 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관광지역에 있습니다. ○ 신축지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그간 주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각종 방음공사, 정보화시설 등 최상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고창읍성과 야간경관조명이 완료되면 주변과 조화된 최적의 도서관이 되리라 생각함.
	○ 군정소식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출향인사 및 향우회 회원들이 고향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 군정 소식지 요청이 많아 보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향을 떠나 멀리서 생활하고 있는 출향인에게 고향소식을 전해 줌으로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사업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청보리밭 축제장 주변에 최근 인삼 경작과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인삼 총 재배 면적과 인근 비가림 하우스 증설 면적을 답하여 주시고 경관농업 유해 요소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인삼 재배면적은 4만 3천평으로 경관농업특구 지정 이전에 재배하였거나 2005년도에 재배한 곳도 이미 지정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곳임. 또한, 비가림 하우스 4,030평은 '94년 이전에 그리고 1,000평은 경관농업특구지정 이전에 설치 되었으며, 200평은 특구 지정이후 청보리밭 축제장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증설되었음. 경관농업 유해요소에 대하여는 특구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에 대해 행정에서 침해할 수는 없으나, 경관농업지구 관리를 위해 인삼과 비가림 하우스 등의 설치를 자제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 고창, 부안, 영광 통합시 거점도시 우위 방안은?		○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거론의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행정구역 개편시 중심도시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농산물유통센터 수박 선별장이 현실성을 고려치 않은 설치로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 이용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대처 방안은?		○ 대도시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상품 출하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고 있음. 앞으로, 유통센터 운영 내실화로 우리군 농산물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고 농가 소득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8. 제138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소류지 준설 추진상황과 준설시 나오는 준설토의 관리대책은?	이강수 군 수	○ 전체 소류지 총 317개소 중 71개소에 대해 준설을 추진하였고, 우선 준설대상은 10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음. ○ 또한, 재 매몰되는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토장을 확보한 경우 준설을 실시하고 있음
	○ 복분자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 지원 대책은?		○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에 61ha 55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에 225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으로 생산기자재,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
	○ 귀중한 문화재의 적기 보수를 위해 소규모 문화재 보수비를 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의향은?		○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없이 순수 군비 편성은 어려움이 있음.
	○ 무장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과 무장읍성과 연계된 토속 음식점, 저잣거리 등 테마관광지 개발계획은?		○ 66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부지매입, 학교이전, 매입 건물 철거, 발굴조사 등에 42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무장읍성과 연계된 하마등, 저잣거리, 아전촌 등 시설복원은 무장읍성 복원사업 후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남규 의 원	○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대책은?	이강수 군 수	○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군에서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고창읍성 경관조명 사업 추진상황과 경관조명과 어울리는 상설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여 관광 명소화할 용의는?		○ 고창읍성 경관조명 사업은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동리국악당, 동리고택, 판소리박물관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야외 공연장 조성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정종구 의 원	○ 농업 현실에 대한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정부에 쌀 생산 조정제 건의와 군비로 계속 추진할 의향은?		○ 경쟁력 있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에 적극 지원하고, 경관농업을 다차산업으로 육성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농정을 전개 하겠으며, 쌀 생산 조정제는 2006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전환계획에 있으며, 전액 군비 부담 사업으로 추진 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2007년부터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음.
	○ 벼 대형건조 저장시설를 농협을 통하여 지원할 의향은?		○ 읍면에 대형 건조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읍면농협에서 신청하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 문수사 진입로인 조산~석정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개설 추진은?		○ 2005년 11월 우선 시급한 1㎞ 구간을 사업 시행토록 전라북도에 건의하였고 2006년도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종구 의 원	○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원인분석 실시 후 해결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이강수 군 수	○ 선형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주 국도유지 사무소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선형개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2004년부터 3개소에 13억 3천 6백만원을 투입 위험도로를 개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전춘식 의 원	○ 구시포 해수욕장 상가등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은?		○ 그간 상가대표단이 구성 활동해 오다가 내부사정으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히 상가대표를 재 선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한수원에 향후 대체 자원개발 대책 요청은?		○ 군 전체어장의 약 40%정도가 금번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대체어장 개발계획으로 일부 한정어업 면허를 추진하고, 해수욕장 피해조사가 끝나면 인공어초 등 대체 자원개발을 요구하겠음.
	○ 비 보험 대리운전 업소의 지도와 단속 대책은?		○ 대리운전업은 운수사업법이나 타 법령에 의거 대리운전 전반에 관한 지도단속 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관련법 제정 등을 도 또는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음.
	○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 지난 10월 제3회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세무직 1명, 수의직 1명, 의무직 1명이 임용등록 중에 있으며,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내에 배치하여 전문직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전춘식 의 원	○ 우리군은 산촌, 어촌, 농촌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볼거리, 먹거리, 옛 정취 등 종합관광계획 마련에 따른 견해와 복안은?	이강수 군 수	○ 녹색농촌체험마을(공음 선산), 아름마을 가꾸기(고창 도산), 어촌체험마을(심원 하전, 만월), 산촌종합개발 사업(고수 은사, 부안 용산)등을 조성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음. 또한 이를 운곡 관광단지 조성,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 지역이 관광 벨트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음.
	○ 벼 육묘공장 설치와 육묘공급 계획은?		○ 쌀 생산 경쟁력은 고품질과 생산비 절감에 있으므로 2006년도에 일부지역에라도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안정대책은?		○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승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제시하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영광군에 촉구하는 등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음.
박현규 의 원	○ 수산업 육성방안은?		○ 군비 5억원을 들여 구시포 권역, 명사십리권역, 동호 외죽도 권역, 심원 수산생태 체험권역, 부안 갯벌생태체험권역, 흥덕 수산물 제조단지권역, 수산물축제 및 갯벌 올림피아드 개발 등 7개 권역에 대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 개발은 지난 7월에 완료된 내수면 5개년 개발계획을 토대로 수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현규 의 원	○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구 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추진 상황을 비롯한 그 밖의 잔디구장 조성계획은?	이강수 군 수	○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전진훈련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국민체육 진흥기금으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밖에도 정부에서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 및 학교운동장의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10년까지 관내 학교 운동장을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영광원전 보상사업 추진사항과 무면허, 무신고 어업 향후 전망은?		○ 우리군 어장 및 구획어업에 대하여 95년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온배수로 인한 45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현재 5호기, 6호기의 광역조사 및 구획어업 피해조사가 종료되어 12월부터 821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은 국회청원을 제출하고 지난 4월29일 한수원 사장과 산자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통하여 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TV 난시청 해소사업의 추진사항과 완전한 해소대책은?		○ 올해 255세대에 위성 수신 장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난시청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도 TV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수시로 조사하여 수신료 면제 등을 건의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현규 의 원	○ 송전철탑 피해 등 영광원전에 대한 군차원의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2003년도부터 철탑,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요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탑, 송전선로 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주민피해 및 지역개발 저해 요인에 대한 보상대책 방안은 개인보상이 끝난 후 군의회와 협의 지역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겠음.
	○ 고창 대중골프장의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결방안과 염전의 피해발생 재발방지 대책은?		○ 환경영향 발생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민의 피해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 골프장내 저류조의 수위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지도하여 염전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박병옥 의 원	○ 복분자 가용주 생산방법과 제조기술을 적극 홍보할 의향은?		○ 복분자 산업 특구 신청시 주세법 규제완화를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가양주 제조판매를 권장할 수 없으나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기술 홍보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농업기술센터의 고수 실증 시범포 적정 직원배치 의향은?		○ 현재 작물 재배시설 11동, 8작목 1,200평, 노지 4,200평에 대하여 1명이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내실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병옥 의 원	○ 선운산도립공원 진입로(신덕신당 앞 ~ 일주문)의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를 단일화 정비방안은?	이강수 군 수	○ 단일수종 변경은 비용과 생장기간 동안의 경관 등을 감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으며,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계절별 경관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도로개설 등 현지여건 변화시 검토해 보겠음.
	○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되는 고창기능대학 개편안에 대한 대책은?		○ 학교 존치를 위해서 도립대학이나, 항공대학 등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기위해 3년간 수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 학과개편, 인사권 등 운영권 전반을 위임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비는 노동부와 전라북도, 고창군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이재정 의 원	○ 복분자 관광빌리지 내에 공장부지 제공 등 대기업을 유치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복분자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흥덕 농공단지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음.
	○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운산 도립공원 내 수박시설지구 확대 계획은?		○ 현재 숙박시설지는 총 13필지로 8필지가 분양되었고, 향후 5필지를 분양 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앞으로 숙박시설지구 확대보다는 분양된 토지 소유자들이 조속히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제2차 정주권 사업 시행여부와 오지개발 사업면과의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강수 군 수	○ 군의 재정여건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안면의 경우 군비 미확보로 2006년도에 시행하게 되었고, 오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정주권 사업 대상으로 변경된 심원면은 기본계획 수립 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6년도 2단계 사업 시행시에는 형평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음.
	○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과 관광객 유치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남부권과 북부권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북부권의 장기적인(2006~2015년)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핵심사업인 황토마루 조성사업, 내륙형 생태조류 공원사업은 전라북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요청을 하였고, 기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 흥덕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과 조성부터 분양 마무리까지 추진상황은?		○ 2006년도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30%이상 진행되면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성 면적은 9만 3천 8백평으로 총 사업비 131억원 중 국비 66억원, 국비융자 19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36억원이 소요되며, 분양면적은 21개 블록 7만 4천평으로 30개업체 정도 입주 가능하며, 참고로, 현재 2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고 1개 업체는 진행 중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귀섭 의 원	○ 농악전수관의 종합적인 세부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금년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가장 시급한 통합형 숙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6년 상반기 기본설계 시에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박영구 의 원	○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사항과 미진한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 농어촌 경제 살리기,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화 등 5대 분야 30개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30개 사업 중 28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부진사업 2개 사업 중 석정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석정온천의 부도로 인한 채권 · 채무 및 소유권 이전관계 등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민간투자가 사실상 어려웠고, 앞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또한, 4년제 대학설립은 기능대학 전환시 도립대학이나 항공대학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
	○ 부창대교 건설 추진상황은?		○ 해리면 동호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연장 14.6km 노선으로 지난 11월에 구동호 선창모텔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중 완료예정으로 있는 기본설계에 우리군의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대죽도, 소죽도 진입로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건의 노력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박영구 의 원	○ 부안면 내죽도 잠수교 개설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이강수 군 수	○ 2002년 기본조사, 2003년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환경부 협의조건인 수치모형 실험과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제4차 도서개발사업에 반영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선운리 국화단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차장시설 확충 등 국화축제를 개발할 용의는?		○ 미당 시문학관 앞 마을인 안현마을을 2006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하여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및 체류형 체험공간으로 마을을 조성,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으며, 주차장등 편익시설도 병행하여 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정원환 의 원	○ 행정타운 구상 청사진은?		○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신축이 검토되고 있어, 청사를 매수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로 활용하기 위해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보건소 신축부지는 사회복지타운 조성과 연계 집단화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종합 행정 타운 구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현재까지 지역의 소득작목인 수박,배,방울토마토,인삼등 5,130여톤 199억 5천만원의 농산물이 출하되었고, 금년에 세척장, 다목적 선별장 등이 시설되고 나면 세척무, 가지, 메론 등이 출하되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로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의 원	○ 관광지구에 공공도서관의 신축에 따른 군민 걱정과 우려 해소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학생들의 편리한 접근성, 문화시설 등 주변시설과 정서를 고려하였으며, 설계당시 주민설명회, 의원간담회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최고의 조건에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방음, 정보화 시설 등 현대적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음.
	○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계할 군수의 설정된 주제는?		○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복분자산업과 경관농업을 특구로 지정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접목한 다차산업으로 육성하여 소득과 연계시키고, 우리지역은 세계문화유산과 천혜의 해양자원, 각종 문화재, 계절별, 테마별 관광 상품이 산재되어 있어, 어느 특정부분의 주제보다는 이를 벨트화시켜 4계절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모양성제 예산이 전년대비 하향된 이유와 본행사장 · 축하쇼 무대는 어떤 자금으로?		○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이 있어 2004년도에 1억원, 2005년도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2004년도보다는 더 지원 하였으며, 모양성축제, 본 행사장 및 축하쇼 무대는 모양성제전회에서 시설한 사항으로 필요시 제전회에서 서면제출토록 협조요청 하겠음.
	○ 고창모양성제와 꽃을 접목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모양성 주변에 구절초를 식재할 의향은?		○ 고창읍성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청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문화재청과 협의 후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국화연구소, 국화주 공장 등 국화 관련사업에 대한 행정의 동참 의지는?	이강수 군 수	○ 국화연구소 설치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지역은 전국 자치단체에 없는 복분자 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이 있는 지역으로 국화연구소 설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국화주 공장건립은 개인 및 업체에서 국화주 등 공장건립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으나, 행정이 앞장서 국화주 공장 설립 등은 어려움.
	○ 주요도로변, 관광지구 국화꽃 식재 재정지원 계획과 국화식재를 위한 석정온천 단지 내 군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 주요 도로변, 관광지구 등에 꽃 식재 등은 종합 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 지원 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 석정온천 단지 내 군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관광단지의 개발 분위기를 선도해야할 군에서 본래의 지정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개발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측근 및 친인척이 아니면 승진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 인사의 기본원칙에 의거 직무 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외압이나 청탁, 친인척 등에 의한 정실인사를 실시한 경우가 전혀 없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정원환 의 원	○ 2002년 7월 이후 채용된 일용직 인원과 인건비 그리고 채용 사유는?	이강수 군 수	○ 24명이며,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점하 조사, 지가조사, 주택 가격 조사 등 업무가 신설되어 충원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현재 54개 분야 86명의 일용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매월 6천 8백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음.
	○ 국화가 시범포에서 증식되었는데 포기한 이유는?		○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에서 2004년도 1만 2천주를 증식 분양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분양 요구자가 없고 단순 국화묘목 생산으로 증식 필요성이 적어 국화증식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 실증시험하고 있음.
최인규 의 원	○ 농어촌 육성기금 조성기금 실적과 추진상황은?		○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36억원이며, 2004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100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협은 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3배를 자금으로 확보하여 군에서 5.25%를 보전하고 농가에서 2%만 부담하는 이율로 농가당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음.
	○ 대단위 야산개발지가 많아 농배수로 토사유입 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 대부분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경지 또는 농로 등에 사토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공유지 또는 개인매립장을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토장 매입도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의 원	○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 평가기준과 행자부와 우리군의 개선방안은?	이강수 군 수	○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에 있어서 행정의 특성상 평가기법의 개발이 어려워 현재도 행정자치부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제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인구 유입대책 추진사항은?		○ 전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하여 전입시키고 있고, 관내 각급학교,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기관단체 모임 등을 이용 협조 요청하고, 촉구 서한문을 보내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흥덕 농공단지 조성, 골프장 조성, (주)상하 본사이전, LBLcope 유치 등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현 선운산IC의 명칭을 흥덕IC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어떤 복안과 취한 조치는?		○ 2003년 12월『흥덕 · 선운산』복수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면 간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군에서 부담하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단일명칭 설정 기준 위배를 이유로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타지역 요금소의 명칭변경 추이를 보면서 적극 대처할 계획임.
	○ 고창 복분자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 고창의 복분자주가 민속주로서 전국 복분자주의 대표적인 술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홍보에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인규 의 원	○ 매일유업 복분자 우유 생산추진 상황은?	이강수 군 수	○ 실험연구는 회사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결정하고 복분자와 관련된 신제품으로 유산균을 포함한 "도마슈노"라는 요구르트를 시판중이며, 2005년도에는 3~4가지 제품을 더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에 180톤을 수매했으며, 2006년도에는 300톤을 수매계획에 있음.
	○ 대단위 야산개발지가 많아 농배수로 토사유입 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 대부분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경지 또는 농로 등에 사토 처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공유지 또는 개인매립장을 활용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토장 매입도 검토하겠음.
	○ 흥덕 비행훈련장 부지 활용방안은?		○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로, 금년의 경우 대한사료 공업주식회사와 골프장 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 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박현규 최인규 의 원	○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군단위 실내체육관 건립은?		○ 부지면적 9천평, 건축규모 4천평, 수용인원 6천명 정도의 총사업비 19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을 신청하여 지원약속을 받은 상태이고, 지난 5월 도 지방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강수 군 수	○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이 확정되면 부지선정 등 제반사항을 군의회와 협의 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재정 박영구 박현규 의 원	○ 차별화된 쌀 생산과 소비자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은?		○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1,750ha를 조성하여 스테비아, SMB, 왕겨숯 등의 친환경농법 자재와 유기질을 활용 조곡 12,200톤을 생산하였고, ○ 단지별 약정 RPC에서 매입 품종별 별도 보관 관리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 다이어트와 당뇨에 효과가 있는 고아미 2호, 영안벼 등 26ha, 117톤을 생산 "고아미 쌀, 배풍건강 쌀"로 상품화하여 고창쇼핑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 노력하겠음.
최인규 이재정 의 원	○ 흥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은?		○ 읍면에 건립된 체육관은 5개이며, 고창읍,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상하면입니다. 북부권인 흥덕면을 포함한 미 건립된 면단위 체육관 건립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박병옥 이재정 의 원	○ 복분자 과잉생산에 대한 유통대책과 대안은?		○ 우리군 복분자 재배면적은 913ha로 전국의 41%를 점유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4,000톤 생산이 예상되고,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강수 군 수	○ 복분자주 가공공장에서 1,500여톤,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1,000여톤, 자가소비 1,000여톤, 기타 체험행사, 축제 등에 500여톤 등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복분자 가공제품 공장유치와 음료수, 차, 환 등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복분자 축제시 체험행사 전개, 복분자 생과 연중 판매체계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 소비시장 확대에 노력하겠음.

제5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제122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월산제 수해복구사업	○ 저수지내 하상과 사통과의 고저차가 3.0m 이상이어야 함에도 1.0m이내이므로 준설을 통한 3.0m 사수위 확보 요망	○ 공사 추진중으로 하상과 사통의 고저차이의 감안사업을 추진하겠음.
	○ 2004년도 모내기 급수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현지 지역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	○ 월산제 몽리구역 수원대책으로 대형관정1개소, 포강 1개소, 소형관정 1개소를 지원 모내기를 완료하였음
두평지구 보강개발사업	○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미 협의 토지(제당시설)에 대해 행정과 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요망.	○ 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보상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사업 완료년도 2006년도까지는 현재 예산배정 상태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움으로 예산 조기 배정에 노력 강구	○ 예산관련 부처 및 사업담당부처를 방문 협의하여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계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 예산 조기 배정으로 완공 목표 연도를 단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용수 혜택을 조기에 볼 수 있는 방안 강구 ○ 오염되지 않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니 이설도로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인근 선운사와 연계한 관광지 조성 검토.	○ 예산관련 부처를 방문 협조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선운사와 연계한 관광 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십제 주차장	○ 기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도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 병행 검토	○ 현재는 관광객이 많지 않은 상태로 우선적으로 고십제 하단부 좌측부분 부지만 차량이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기층 포설 후 사용토록하고, 우측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사용관리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 유지 후 필요시 조치하겠음.
외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이용률이 많은 농로 포장과 배수지난 지역용수로 시설 민원에 대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잔액을 투입하여 추진 요망. (농로포장 L=330m, 수 로 관 L=450m)	○ 공사추진 중으로 주민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후포, 하연 상습수해지역	○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조기실시 요망	○ 2005년도에 설계지구로 포함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였음.
고창– 장성간 고속도로사업	○ 예산 조기배정으로 당초 2010년 개통 계획을 2006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과 도로공사 합동으로 노력 강구 ○ 공사기간 중 대형차량 통행으로 노면 요철발생 및 파손된 군도21호선(조산저수지 옆) 도로시설물에 대해 기공회사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조치 요망.	○ 정읍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음. ○ 군도21호선(조산저수지–조산교3거리) 750m에 대하여 선형개량 공사를 위하여 용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음.
예전–덕암간 교량설치 공사	○ 교량 날개벽 옆 호안블럭을 추가로 설치하여 세굴 방지	○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시행 설계에 반영 시공토록 하겠음.
청천선도로 확·포장사업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철저 요망	○ 공종마다 품질시험 검사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사현장에서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구시포어항 개발공사	○ 구시포어항 개발 사업이 조기 완공 토록 건의 ○ 어민편익을 위하여 기존 어구 건조 수리장을 확대하여 줄 것	○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 건설로 인한 준설토 발생시 검토하겠음
고창군 추모의 집	○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 ○ 광역상수도 공급방안 강구	○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거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면 및 차수시설 복구공사	○ 당초 법면 복원을 위하여 옹벽설치나 성토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피토를 제거하여 안식각을 유지하는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 면이 재붕괴되지 않고 안정이 되도록 할 것.	○ 매립장 외곽도로 사면복구공사에 적용된 Ground Anchor 공법에 대하여 항구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면복구 보안책을 마련, 예산절감 및 사면이 재붕괴되지 않도록 검토 추진하겠음.
대산 소방파출소 건립공사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철저요망	○ 고창소방서 공사부서로 하여금 현장감독과 감리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천연기념물 제183호 대산 중산 이팝나무	○ 외지 관광객들의 많은 왕래를 대비하여 목교마을 입구에서 이팝나무까지 협소한 진입도로 확포장 요망.	○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 포장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무장읍성 정비사업	○ 2005년도 예산확보 방안 강구	○ 2005년도 무장읍성 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 건물지 발굴조사, 성곽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2,212백만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청(2004.4.16)에 지원요구
고창 농악전수관	○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농악 전수관을 신축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신축을 위한 사업비 총 15억원 중 국비확보에 대하여는 2005년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3억원 지원요구 부지매입비는 군비확보 추진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조성사업 (스테비아 작목반)	○ 스테비아를 자급자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에 지원 방안 강구.	○ 관내 스테비아 작목 재배 현황은 일부지역(성내면)에서 54농가, 6.5ha의 규모로 평균소득은 반당 비가림재배 2,092천원, 노지재배 1,804천원정도로 타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으로 계약 재배 면적 한정 수매로 일부 농가의 확대계약 수매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료생산비가 kg당 3,200원선으로 수입가격 kg당 1,000원 보다 높아 경쟁력이 떨어짐. 소득차액 지원시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답(畓)보다는 토질이 좋은 황토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계도 요망.	○ 고품질 황토수박 생산을 위하여 2004년도에 황토수박비가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17.6ha에 1,376백만원을 투입하여 고창 황토수박의 명성과 품질을 유지코자 지속적인 지원 및 홍보 추진 중임.

2. 제132회 임시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 사업시공과 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현지 여건에 맞는 적합한 실시설계와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 완벽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완료하여 이용기반 마련. – 성송면장 :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수립 중
문수사입구 천연기념물 보존사업	○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한 단풍나무군락 접점지역에 무단 형질변경으로 단풍나무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망.	○ 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한 단풍나무군 락지역에 무단 형질변경으로 단풍나무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문화관광과-4244(2005.4.29) 자로 문수사와 고수면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지시함.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 이주 미결정 주민(5가구) 조속 추진완료 요망	○ 고창읍 죽림리 매산마을 이주가구 36세대 중 31세대 매입하여 86%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 보상된 5세대 주민들의 재감정평가 요구에 따른 '05. 5월중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이주단지조성사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으 협의하여 고인돌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 전시관 동편 배수로(구)를 하천 제방 쪽으로 직강시설방안 강구	○ 집중호우시 고창천의 계획 홍수위에 비해 주변 농경지들의 지반고가 낮아 침수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사업부지와 주변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수계획을 재검토하여 농경지 침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전체적인 공정이 부진한 상태인바 연차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요망	○ '05. 3. 2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표토제거등 순성토 반입을 위한 행정절차(개발 행위 등)를 추진하고 있으며,'05. 5월에 순성토반입이 될 경우 전체공정 및 연차별계획에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실비노인 전문요양 시설건립	○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는바 조속 이행 바람. ○ 사업장 주변 농로 포장방안 강구.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2005.4.21)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종합사회 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사업	○ 대단위 공고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 장소가 결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을 지정받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는 수용추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 입안단계에 의회와 협의 추진하여 사업비확보과정에서 상호 불협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형사업을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	○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의 편입토지 · 지장물 · 실농보상금은 5월 4일 확정하여 7월 20일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임. ○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의회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 체험관광객유치 연결방안 강구	○ 녹색농촌체험마을인 공음면 선동리 선산 마을은 현재 전라북도 문화관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에 있으며 ○ 금번 사업으로 시행중인 방문자센터, 마을 홈페이지구축 등의 기반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체험관광객 유치를 추진 할 계획임.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	○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재검토요망 – 사업비에 비하여 가시연꽃 군락과 조성 규모가 적음 (약 1ha) – 조성예정지인 중촌제 누수가 극심하고 토질 등 연꽃서식 환경이 부적합 지역임 – 생태숲조성지구내에 가시연꽃등 수생식물 서식지를 조성하여 사업효과가 낮음	○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사업 으로 도내 4개 도립공원 중에서 선정 된 사업으로, 당초 예정지인 도솔재의 경우 접근성 등 사업효과가 좋지 않아 현재 추진 중인 소류지는 사업면적은 적으나 생태숲과 연계 등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현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 사업대상인 소류지는 농경지가 없어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경관이 정비되지 않아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가시연꽃의 식생 및 누수관계는 진흙반입 및 방수처리로 적정 처리할 것이며 ○ 본 사업비 580백만원중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비 300백만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기금을 사용 할 것이며 ○ 군비 280백만원은 도립공원내 등산로 중 유실이 심한 측구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자연석 측구)으로 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붙임 : 조성계획도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암치석산 개발사업	○ 암치마을 조망에 있는 석산 전면우측의 임야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암치마을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암치마을 조망권에 있는 하단부등을 존치(완충지역)하면서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암치마을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경관농업 특구사업	○ 청보리밭 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	○ '05년 제2회 고창청보리밭축제는 민속기능사를 양성하여 체험행사를 강화하고 ○ "초록휴가시대의 농촌관광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을 개최하는 등 축제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음. ○ 내년도에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살려가는 내실화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청보리밭 관련 음악방송시설 설치요망	○ 청보리밭 관련 음악방송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스피커 시설을 활용하여 청보리밭 이미 지에 걸맞은 가곡 '보리밭' 등을 관광객이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경관농업 특구사업	○ 경관지구내의 인삼식재는 경관특구지정 취지에 반함으로 대책강구요망 ○ 보리 경관작물로 선정요망	○ 경관지구내 식재된 인삼시설은 '04.12.30일 지역특화발전특구(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식재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농지임. ○ 청보리 경관을 저해하는 인삼시설 설치를 자제하도록 현재 특구내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 또한, 경관농업 참여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관농업직불제 시범사업(63ha, 메밀) 선정을 추진하고 있음.
		○ 청보리가 경관작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 현재 확정된 '05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대상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으로 보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금후 경관농업특구내에 재배되는 보리에 대하여는 정부약정수매 물량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할 계획임.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사업	○ 청정테마파크사업계획을 수차에 걸쳐 변경함으로써 당초 214백만원 주민부담을 184백만원으로 경감시킴으로써 특혜시비 우려와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황토방 민박시설 등을 착수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규명 요망.	**1.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조성사업 자담율 변경 내역** □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사업 보조 지침 ○ 공동사업 : 보조율 100% ○ 개별사업 : 보조율 70%, 자담 30% ○ 최종 자담율 : 32.4% □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승인 ○ 승 인 일 : 2004.3.24 ○ 사 업 비 : 1,014,286천원 (도비300,000, 군비500,000, 자담214,286) ○ 사 업 량 : 13개 사업 (공동6, 개별7) □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승인(1차) ○ 승 인 일 : 2004. 11. 19 ○ 사 업 비 : 1,000,000천원 (도비300,000, 군비500,000, 자담200,000) ○ 사 업 량 : 13개사업 (공동8, 개별5) ○ 변경사유 : 개별사업이 공동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부담감소 14,286천원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사업		□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승인(2차) ○ 승 인 일 : 2005. 1. 12. ○ 사 업 비 : 984,750천원 (도비300,000, 군비500,000, 자담184,750) ○ 기준지원율 : 보조 70%, 자담 30% ○ 변경사유 【청정채소단지 사업량 증가】 – 사업량 : 당초 6,000평 변경 6,667평 ※ 사업단가 조정 : 33,300원/평 30,000원/평 【복분자생산단지 지원율 변경】 – 기승인 : 보조 52% 70,000천원 자담 48% 65,250천원 – 변 경 : 보조 58% 70,000천원 자담 42% 50,000천원 ※ 사업자 부담이 자담율(30%)보 다 높고 우리군 평당 시설단가가 30,000원으로 자부담 15,250천원 감 조정 **2. 황토민박집 사업변경으로 예산낭비** □ 개별사업 착공 시는 설계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하나 황토민박집 개별사업자인 선동리 김공진씨가 설계승인 없이 착공하여 현지 확인 후 공사 중지 시키고 설계 승인 후 현재 공사가 절차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승인전 시설한 기초공사 및 벽채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업변경 및 예산낭비는 없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흥덕농공단지 조성사업	○ 문화재 시굴조사를 조속 시행하여 사업 조기 추진방안 강구 요망	○ 문화재 발굴(시굴)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계획 – 대 상 : 134필지/82명 – 관내 거주자 대상 설명회 개최(2005. 4. 20(수) 14:00 오태마을) • 시굴조사 계획 설명 및 협조 당부 •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14명) ○ 시굴조사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계획 – 시굴조사 면적 : 49,371평 – 추가 소요 예산액 : 171,764천원 (1회 추경 예산확보)
고창천하도 준설사업	○ 계획 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장소단법면이 견실하여야 함으로 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고창천 하도준설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경지정리 (덕흥지구)	○ 농촌인구의 고령화, 기계화에 따른 경지정리 현대화율 부족에 따른 방안 강구 ○ 사업완료와 동시에 영농철인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물 정지 작업 준비를 철저	○ 추후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현대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영농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 철저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선운산 생태숲 조성공사	○ 유스호스텔 및 야영장 쪽의 계획차도를 내방객 보행로로 활용하고, 현재의 차도를 그대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선운사 사찰 방문객들이 상가와 생태숲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요망	○ 선운산 생태숲 조성지 양쪽 도로는 생태숲 조성에 포함된 계획이 없으며, 선운사 사찰을 방문할 때 생태숲조성지내 산책로를 통하여 경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
상금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 부족예산(276백만원) 조기확보 방안 강구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포함
대신제 배수로 정비사업	○ 상류쪽에서 소류지로 유입된 토사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므로 대신제 하류 800m 구간 개거설치 요망	○ 사업비 50백만원을 추경예산 요구
용두배수 개선사업	○ 구역내 장호마을 부근 침수지역 대책강구	○ 용두배수개선사업 지구내 배수로확장 및 배수갑문 확장으로 장호마을 부근 침수지역이 해소되도록 시행하였으나 완전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 시행 하도록 하겠음.
경지정리 (학동지구)	○ 학동 경지정리지구의 용배수로 현대화율 제고 요망	○ 추후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현대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고부천 상류수해 상습지구	○ 상류부 무림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하류병목으로 인한 옥제앞뜰의 침수 대책과 옥제마을 진입로의 국도 22호선과의 교차 개선방안 강구 요망	○ 고부천수해상습지구는 2006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중앙에 예산 요구하였음.
와촌천 수해복구 사업	○ 사업장 하류지역의 병목현상으로 수해발생이 우려되는바 해소방안	○ 현 사업구간은 2004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 된 것으로 병목현상 구간은 금후 하천개수공사 등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
갈곡천 수해복구 사업	○ 하천단면 부족 지역의 파라펫트설치로 예산낭비 우려	○ 파라펫트 설치 지역은 지난해 국지성 호우로 하천을 월류하여 가옥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하천 단면을 확보하여야 하나 민가가 근접해 있어 하천을 확장하기가 지난하여 파라펫트 설치로 하천 단면을 확보하였음
	○ 숭상 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예상	○ 철재 인도교를 이용하는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중임.
	○ 사업장내 발생한 자연석을 현지에 유용방안 검토	○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자연석은 하천 곡선부 제방, 석축, 호안 등 하천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복분자산업 특구사업	○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500-1000ha)에 따른 과잉생산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방안 강구	○ 지리적표시 등록과 연계 고창 복분자 명품화에 주력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타지역과 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 생과 판매 및 주스 등 관련제품의 다양한 개발로 대량 수요처(가공업체)를 확보,육성 발전시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음
	○ 균특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 · 군비 미확보된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속비로 예산 편성 요망	○ 2005년도 복분자 지원사업 미확보분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관광빌리지사업은 국비(균특)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예산편성이전에 재정투융자 심의 절차 미이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절차이행요망	○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생산단지 조성사업 :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완료 (2005.4.22) ○ 기능성 차환공장사업,복분자 고급원료 생산 단지조성 : 군재정투융자심사완료 (2005.4.22) ○ 금후 심의사업에 대해서는 예선편성 전 투 · 융자 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음

3. 제136회 임시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인접 산림지의 산책로 시설방안 강구 (산림 경계 이용)	○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인접 산림지의 산책로는 자연스레 조성된 오솔길이며 조성부지 외 지역의 사유지로서, 추후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문수사 축대공사	○ 문화재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확보된 도비 190백만원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선운레이크 골프장조성	○ 당초 허가된(18홀) 사업중 준공에 미비된 사업(대중골프장, 저류조)이 완공된 후 시범라운딩을 하여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세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 바람	○ 환경피해(수질오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대산 재래시장 정비사업	○ 비가림 시설(처마)의 가각부분이 너무나 첨예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완화대책 강구 요망	○ 2005. 10. 13일 첨예한 비가림 시설(처마) 가각 부분을 일부 절단하고 곡선으로 마무리 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조치 하였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고창군 농악전수관 정비사업	○ 학천초등학교 리모델링 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 ○ 농악전수관의 전체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절차 이행 ○ 현재 확보된 예산의 집행은 전체시설 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후 시행 ○ 전체적인 시설계획 수립은 고창농악보존회와 현재 운영중인 타지역 농악전수관 견학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 · 설정 후 사업시행 ⇒ 리모델링과 신축 검토
고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 집중호우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 염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예측지 못한 환경영향 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피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집중호우로 인한 염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수해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음.
임도시설 사업(상하)	○ 임도 구조상 노폭이 협소하고 종횡으로 굴곡이 심하여 비상시 차량교행이 지난함으로 교행부지 확보 및 시설 요망	○ 차량교행 및 차돌림 시설 2개소 추가 완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자활근로 사업장 (동해원 복분자단지 묘목장)	○ 사업장 운영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와 자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강구 (소.돼지 사육사업 및 복분자 재배 확대사업 등)	○ 2005년도 복합영농사업단의 주요추진 실적 – 복분자 2,200평 식재 – 닭 600수, 염수 12수 사육 – 무.배추 1,000평 – 총수익금 15,324천원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복분자 재배단지 200평 확보하여 복분자재배사업 확대 추진 – 닭. 염소사육의 경험축적과소, 돼지 사육기술 교육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 2006년 복분자 수확으로 수익금 발생하여 2007년 자활공동체로 전환
수산물 위판장 건립공사	○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 책정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보조금 정산 요망	○ 수산물위판장 시설은 222백만원 (국비 66 융자 66 자담 90)에 건평 200평 시설하여 평당 110만원 정도 소요 되었으며 ○ 2005년 3월에 착공, 2005년 6월 22일 준공하여 현재 정산 완료된 상태임, ○ 금년내 수산물 위판장 개장 계획임으로 수산물 수급 및 공급 조절기능 구축 · 활성화를 위해 지도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동호 해수욕장 해안사방공사 (해리)	○ 해당화 식재부분 황토분 유출로 천단 콘크리트 및 축대 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강대책 강구 요망 ○ 노거수 사이 후보목 식수계획 부적정	○ 순비기덩굴로 대체 식재하여 조기피복 녹화 ○ 노거수 자생지 바깥부분 공한지 및 천단부분 화단에 식재할 계획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	○ 포전과 선별출하의 물류비용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여 선별출하의 이점에 대한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포전과 선별출하의 물류비용 차이 – 파렛트 출하시 (5톤/1차당) • 센터 선별출하 : 429,000원 • 포 전 출 하 : 369,500원 – 포전 (관행) 출하시 : 390,280원 ※ 부여 파렛트 선별출하 : 429,500원 ○ 파렛트 선별출하의 이점 – 품질균일화.상품성 제고로 시장호평 – 수취가격 포전출하보다 20%높음 ○ 홍보방법 – '05년 사업 평가회 – '06년 사업계획 설명회 – 작목반 순회간담회, 농가재배기술교육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	○ 농가의 생산량 및 출하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소득제고를 위한 출하시기 조절 – 성내 스테비아수박 : 5월중 – 나머지 지역 : 6월부터 출하 ※ 현행 출하 성수기 : 6월~8월 ○ 유통센터 출하 고창수박공동출하 조직 정비 – 정예화된 회원농가 대상 고품질 재배기술교육, 계획출하 유도 및 출하량 조절 고창수박 브랜드 형성
	○ 배선별장 환풍시스템의 개선대책을 검토시행 바람	○ 대미배 수출작업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겠음
조미김 가공시설 사업	○ 사업비 과다책정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조미김 가공시설은 500백만원(군 250 자담 250)에 건평 148평 시설하여 평당 200만원으로 시설비가 적용되어 ○ 2005년 6월 착공하여 건물기초 및 빔 · 판넬 설치 완료로 현 공정 70%로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고 준공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어촌종합 개발사업	○ 대부분의 시설이 투자에 비하여 활용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	○ 해당어촌계 및 시설운영자들에 대한영업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 2001년도 부지매입후에 방치되었을 뿐아니라 개인 비닐하우스가 설치됨으로써 또 다른 보상 시비가 우려되므로 ○ 우선 부지 경계 확보와 지장물 정리 및 관리방안 강구	○ 주차장 부지에 개인 하우스등 1동(상하면 자룡리 구시포 박점희)이 무단으로 시설되고, 농작물(콩)이 식재되어 있어 농작물 수확후 2006년 3월중 하우스 시설 철거조치 하겠음 ○ 부지경계는 예산성립후 경계를 확보하고 동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공사	○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기존노선의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마명마을 뒷산을 관통하는 노선등으로 변경하는 등 조속한 대책 수립 요망	○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형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결정
대산 우회도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 급경사와 노폭이 협소하여 인명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바 2005년 월동기 이전에 해소요망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외원교차로 사업추진 촉구 및 방문 협의계획임. ○ 편입토지소유자 사전 승낙서 징취(성송면)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강남-학전간 군도 확.포장공사	○ 아산-무장간 지방도에 조속 접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경주 요망	○ 지방도에 접속되도록 예산확보 노력
남창-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주민 통행 및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 해소 요망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
옥제 진입로 교차로 개선사업	○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은 국도와 교차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가 판단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조속 시행요망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차로시설 타당성 검토 의뢰한 바, - 금성식당 교차로의 교통신호기를 작동하여 인근 편월리, 외옥리, 월봉리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 내옥마을에서 금성식당으로 확.포장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통보됨. - 국도22호 제하사거리 정읍방향으로 유턴시설 공사시행 요청.
임리-송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 예산확보시행 요망	○ 확보된 사업비 200백만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해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교량 및 제방계획고와 기존 농로 고저차로접속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바 ○ 충분한 부지확보로 주민 불편해소 요망	○ 교량 진입로와 기존농로 진입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부지확보 및 농로 확장계획
덕산선 백관수생가 진입로 확.포장공사	○ 성내-고부간 운행하는 버수노선으로 노폭이 협소하므로 ○ 근대사의 인물 근촌 백관수선생 생가 방문객과 인근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 예산 확보 시행 요망	○ 버스통행불편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적극 노력
벽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 예산확보 시행요망	○ 확보된 사업비 200백만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음.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	○ 저류지 및 배수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요망	○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갑문 3개소 저류지 3개소, 배수로 7조/6.27km 시행계획으로 2005년 12월 사업착공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각종 시설이 완공 후에는 사유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 매입하여 공유화 요망	○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매입중에 있으며 시설완공시 주민의견 수렴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석교밭기반 정비사업	○ 각종 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민 협의 이후 시행요망	○ 주민 설명회을 개최하여 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음.
석정온천 개발사업	○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후 민자 실적이 전무함으로 고창군 소유 12천여평에 대한 군비투자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타 기업 및 개인 토지 소유자의 투자유도 요망	○ 석정온천 관광단지내 고창군 소유 토지는 온천공부지 6공 16평, 가압장부지 188평, 기계유희시설 부지 8,757평, 휴양촌 부지 3,498평 등 총 12,459평임 ○ 상기와 같이 개별적인 토지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토지용도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온천공과 가압장부지는 온천이용과 관련한 시설부지이며, 기계유희시설과 휴양촌부지는 단지내 개발활성화 이후에 투자비 회수가능등 사전개발에 따른 군비투자시 투자대비 효과저감 대책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특히 기계유희시설은 공유지분설(지분율 4.4%)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선행후 개발하여야 함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석정온천 개발사업	○ 석정온천 개발추진단 구성 운영 –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 전체 토지소유자 토론회 개최 개발방안 모색	○ 전체 토지소유자 토론회 개최는, 석정온천 토지주조합이 단지내 토지 환지업무와 토지주 의견수렴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석정온천개발(주) 부도 이후 공식적으로 관광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나, 온천단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채권자 협의회(이백수등 146명)에서 2004. 3. 29일 전 법정관리인과 롯데건설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허위보고 및 배임혐의로 고발하여, 1심 수사결과 혐의 없음 후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계류중으로 현 상태에서 전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개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 되며, ○ 현재 진행중인 수사 종결후 전체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정온천개발을 주도할 민간 협의체 설립을 건의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석정온천 개발사업	○ 석 정 온 천 개 발 추 진 단 구 성 운영 –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 전체 토지소유자 토론회 개최 개발방안 모색	○ 석정온천 개발추진단의 구성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토지주 조합(조합장 : 은희정)과 롯데, 대우, 토지공사, 아세아 파이낸스 등 4대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추진, 검토하겠음
월산천 수해복구사업	○ 하천개수사업은 유로, 구배, 하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한 공종을 선택 시공하여야 하는데 당해지역은 하폭이 협소하고 커브와 구배가 심한 위치에 식생호안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제방 법면이 세굴 및 유실되었으므로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견실한 시행요망	○ 수해가 우려되는 곡선구간에는 옹벽을 설치토록 하였고 구배가 심한지역에 대하여는 물막이를 설치하여 유속이 감소되도록 조치하였음.
무장 보건지소	○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한방 진료과 신설과 운영에 대하여 검토바람	○ 한방진료 신설 시에는 우선적으로 진료공간 확보와 공중보건한의사의 배치가 이루워져야 되므로 현 실정으로는 한방과 신설이 어려우며 ○ 차후, 보건지소 신축 등으로 진료공간을 확보한 후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 받아 한방과가 신설되도록 검토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고수)	○ 사업규모에 비하여 운영관리 인력(정규직1명)이 극히 부족하여 대농민 기술 보급이 지난하므로 ○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소요인력을 종합판단 실증시범포 관리에 필요한 인력보강(정규직 1명, 보조직 2명 증원)	○ 현재 관리 인력으로는 지도사 1명, 보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재배작물을 축소하여 심도있고, 집중적인 시험사업 추진과 신규작목 실증시험 및 대농민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06년 인건비 미계상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확보 인력보강 계획
공설운동장 전광판	○ 공설운동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관리 자격자를 겸직 발령하여 운영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람.	○ 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력배치 등)에 의하면 무대공연장 객석 500석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무대 음향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설운동장은 공연시설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무대음향 전문자격소지자 배치는 어려우나 공설운동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음향2급 자격증을 갖춘 동리국악당에 근무하는 김연섭을 문체사업소-284(2005.10.20)호에 의거 지방기능7급(전기) 공설운동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관리 겸직 업무 분장 지정하였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수영장운영 상황	○ 매표소 관리 근무원 증원(1명) 방안 강구	○ 2005.10.14군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사업소에 보충된 직원 1명을 충원조치 – 당초근무인원 : 1명 – 현 근무 인원 : 2명
	○ 수영장 지도사, 인명구조원 자격자(1명) 증원 방안 강구	○ 늘어나는 수영장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강습지도를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 확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요청하였으며, 수영지도사 겸임 인명구조원자격자 1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도 협조 공문 요청하였음.
마을 오수처리 시설공사 (부안)	○ 기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정을 단축하는 방안 강구 요망	○ 2005. 10. 19일 착공하여 처리장 구조물설치 완료로 현 공정 20%이며, 2006. 5. 22일까지 완료 예정임

4. 제141회 임시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불응을 사유로 개인묘지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 설계함으로서 사업장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아 주민의 비난여론이 우려되는바, 지구내의 사유 묘지 이장 조속 추진 요망	○ 묘지주와 수차례 접촉 협의하였으나 절대이장불가 입장이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이에 금후 적극 설득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전봉준 생가복원 및 관리계획	○ 복원생가는 고증 없는 건물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 생가 터의 확실한 경계를 설정하여 역사적 장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현 복원건물은 이전하여 관리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철저한 고증으로 당시의 생가를 복원하거나, 생가 터를 복원할 계획임 ○ 동학유적지정비 기본용역을 통해 생가터의 확실한 경계를 설정하는 등 동학농민관련유적지의 중.장기정비계획 수립으로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임
조미김 산지가공시설	○ 준공후 가동실적 전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 촉구	○ 가공제조업 승인제품 포장지 제작 완료하여 현재 판매용 제품 제작 등 정상 운영되고 있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오베이골 탐방로 개설공사	○ 고인돌을 기점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 현재의 용역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인돌 주변이 훼손되지 않고 관광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물 재점검 요망	○ 탐방로 구간내 동양최대의 고인돌(300여톤)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며, 고인돌유적 방문 관광객에게 신속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정보이용이 가능한 관광안내소를 신축중에 있음(2006. 5월준공)
무장읍성 정비 추진현황	○ 2003년 무장읍성 남문을 해체보수 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후 시행함으로서 원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낭비이므로 ○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무장남문은 읍성축성당시(1417) 초창된 후 1581~1821까지 8회에 걸쳐 중창과 재건이 이루어 졌으며 근래에 와서는 1984년부터 부분 보수하여 오다가 2003년도에 건물의 훼손이 극심하여 긴급 해체 및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은 무장읍성내에 학교가 있어 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2004년도에 학교 건물을 철거한 후 학교 철거지와 운동장 및 성지주변을 발굴조사하게 되었으며, 그 외 지역은 금년도에 추가 발굴조사 하여 결과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수산물 위판장 건립	○ 판매장시설 일부 페인트 훼손 등 부실부분 노출 및 판매장의 칸막이 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비용에 따른 입점자 지연	○ 수협과 입점자간의 위판장 입주 협의(03.28)결과 수협측에서 칸막이 설치지원 결정되었으며, 칸막이 설치공사시판매장시설 페인트 등 보수계획이며 ○ 4월중 2차 협의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입점자들이 판매장 입주 및 부대시설 하여 운영활성화 되로록 수협과 군이 상호 공조하여 적극추진
와촌 경지정리지구 마무리사업	○ 7개 읍면에 다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 및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 완료시 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음.
남고창 IC 설치공사	○ 주민의 편익증진에 장 · 단점을 세부 보완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 촉구	○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하여 추진하겠음
선동권역 종합개발 사업	○ 장기적인 사업으로 세부사항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	○ 점검 분석하여 사업추진 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송라선 확 · 포장 공사	○ 7.0km구간 중 4.3km의 잔여구간 예산 조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공사 추진하겠음
지방도 737호선 (생근~고부)	○ 지속적인 건의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 요망	○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음
용교천 정비사업	○ 상습적인 침수 및 동림제 상류의 토사 매몰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바 ○ 우선 퇴적부분 준설로 주민피해 보호요망	○ 장비임차 사업으로 퇴적부분 준설 작업을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음.
환산선 확 · 포장 공사	○ 마을안길을 관통하는 노선이므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 잔여구간(약700m) 예산(약 850백만원) 조기 확보 요망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구시포 ~두어리간 도로개설 공사	○ 다양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견실시공으로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	○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석정온천 개발사업	○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 후 민자 개발 실적이 전무하므로 군자체로 개발추진단 구성운영 및 고창군 소유 토지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바 ○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	○ 공공 시설투자 및 환지처분 완료로 단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지주의 투자 활동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민간투자 분위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단, 개발의 제약요건으로 기존 개발계획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하여, 기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및 지정용도로만 개발 가능하며 단지내 대규모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방안등 강구됨)
성송 체육관앞 운동장부지	○ 체육관 부근 9,000여㎡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설치 방안 강구 요망	○ 예산확보 방안 및 부지확보 등 축구장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흥덕 농공단지 조성사업	○ 문화재 발굴 조사를 조속 완료하고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문화재 발굴 조사 시 구역배분 후 조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조사 완료 예정 – 용역기간 : 2006. 4. ~ 2006. 8. – 용역금액 : 504,512,000원 ○ 연내 토지보상 및 각종 용역 마무리를 통해 2007년 착공 및 완공, 분양예정 – 사업기간 : 2004. 6. ~ 2007. 12. – 조성면적 : 315,666㎡(95,489평) – 사 업 비 : 135억원

제6절 민원 처리



1. 민원 처리 상황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원사항	처리내용
진정	2003.3	김태순	·아산~무장간 4차선도로 예정노선 재검토 요구	·아산 ~ 무장간 4차선 도로 선형이 마을이 인접하여 계획한 노선 재검토를 요구	·아산 ~ 무장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진달 함.
진정	2003.6	박순식	·인접대지와의 지적경계로 인해 발생된 민원	·교촌리 281-19번지에 신축된 건물이 규정에 맞지 않고, 또한 교촌리 283-8번지 주변 284-4번지와 283-13번지의 건축물 일부가 귀 민원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민원.	·교촌리 281-19번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창군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임으로 규정에 적합한 건물이며,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침범 사항은 이해관계인과 군청직원의 입회하에 지적경계측량을 하여 침범행위가 명확히 밝혀지면 철거토록 집행부와 법대로 집행하겠음.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원사항	처리내용
건의	2005.2	김용은	• 미영아파트 진입로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 도로에서 미영아파트까지 진입로에 차량들의 불법주차로인하여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바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하여 도로에서 미영아파트 입구까지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1m 정도의 보도를 설치해줄 것을 요망	• 미영아파트에서 상원아파트간 보도(경계시설물등) 설치는 현지도로가 협소하여 별도의 인도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에게 통보 함
건의	2005.3	김부진	• 보조금 감시활동에 대하여	• 혈세로 지원되는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에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됨	•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 · 의결하고 있으며 군의회와 외부 초빙인사가 참여하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 지고 있음.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히 감시하여 단체보조금이 특정인의 사유화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원사항	처리내용
건의	2005.5	박용연 외 942명	• 원전센터유치 부지조사 건의관련 검	• 우리지역이 영광원전주변에 위치한 관계로 그 피해가 지대한 바, 대안으로 원전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찬반의 주민의견이 교차되어 주민갈등만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부지를 조사하여 적지로 판명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원전센터유치 부지조사 건의 관련에 대하여 고창군의회는 2003년 5월 19일, 2003년 6월 9일자로 각각의 성명서에서 천명한데로 핵폐기물 처리장유치 반대에 변함이 없지만, 원전수거물 관리 시설유치지역 지원등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원규모, 시기, 방법 등 군민이 납득할 수준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회신함.

제1절 해외 의정연수 보고



Ⅰ. 지방자치 선진국 견학

1. 연수목적

○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사례 견학

○ 선진외국의 지역문화 탐방 및 주요시설 체험

2. 방문개요

○ 기　　간 : 2005. 3. 14 ~ 3. 23(7박 10일)

○ 연수국가 : 호주, 뉴질랜드

○ 주요방문지 – 호　　주 : 시드니, 버우드구 시청

– 뉴질랜드 : 남섬, 북성, 로토루아 시청

○ 연수인원 : 총11명(의원7, 직원4)

– 단 장 : 김남규 운영위원장

– 의 원 : 정종구, 성호익, 전춘식, 박현규, 이귀섭, 박영구

– 직 원 : 의사과장, 류영록, 김영술, 김남종

3. 연수동기 및 배경

○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외국의 지방자치와 선진문물을 탐방하고 주요시설을 견학

○ 급변하는 세계변화를 몸소 체험하므로서 지방자치에 맞는 의원 마인드의 안목 배양

4. 주요 연수내용

○ 해외 연수팀은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사례를 견학하고 선진외국의 지역문화 탐방 및 주요시설 체험을 위해 호주(시드니)와 뉴질랜드에 발길을 옮겨 놓았다.

○ 우리 일행이 방문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2세를 헌법상의 국가 수뇌이지만 실제 정부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인물로 두고 있는 영국에 뿌리를 둔 형제 국가로서 모든 사회복지 정책이나 국가 기반시설 등이 엇비슷하였다.

가. 호주 시드니

먼저 도착한 곳은 절제의 미학이 가꿔낸 '아침의 도시'라 불리우는 호주 시드니, 우리 일행은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시드니에서의 2박 3일 공식방문 첫 일정인 시드니 버우드구 시청장과의 만남을 위해 시청으로 향했다.

시드니는 호주의 6개 주 가운데 하나인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주도로써 인구는 400만명으로 호주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 하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세계 각지의 관광객은 인구보다 많은 400만~500만명에 이르며, 이로인해 벌어들이는 돈은 50억달러에 이른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버우드구 시청에 도착 하였다.

1. 버우드구 시청장과의 만남

우리 일행이 공식방문 첫 일정으로 시드니 버우드구 시청을 방문한 것은

호주라는 나라를 구석구석 둘러보기 전에 이 나라를 먼저 알기 위함이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회복지 및 도시기간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다.

우리가 만난 DAVID WETLY시장은 처음 만남부터 우리 일행을 놀라게 하였다. 수행비서도 없이 불쑥 나타나더니 손수 물병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시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다.

DAVID WETLY시장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시장직을 수행하기위해 1년간 휴직한 상태였고, 자기를 비롯한 모든 호주인들은 평등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직장에서의 직위, 나이, 성별은 무시하고 모두 친구라고 설명 하였다.

버우드구에는 7명의 의원이 있으며, 4년에 한번씩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한다고 하였으며, 시장은 의원들이 그들중에 한명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은 1년간 시장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시장의 설명에 의하면, 버우드구는 인구 3만에 년간 3,000만불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로서 재정확충은 재산세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의 년간 예산집행은 주로 도서관, 공원관리, 쓰레기처리, 음식물 검사(식당, 커피숍 등), 동물원, 하수도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쓰레기는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 시장은 소각장은 없으며, 전부 시에서 하청을 주어 매립하고 있다고 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여러 질문이 있었으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

방정부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다며 각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 **연방정부**

- 복지(의료, 교육, 노인, 장애인등)를 위한 주요 재원
- 여러 주에 걸쳐 펼치는 국가적 캠페인에 대한 조정(민주적 시위, 아동 보호, 금연, 에이즈 예방과 같은 공공의료 캠페인 등)
- 사회보장, 연금 및 실업 프로그램,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원주민 개발 및 이민 등에 대한 책임
- 민영화 및 '상호책임'의 우선 정책

♠ **주정부**

- 호주의 사회서비스와 사회정책의 주요 집행
- 병원, 공공의료, 학교, 아동서비스, 아동보호,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운영

♠ **지역정부**

-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춤(주차 및 오락시설, 지역 예술 선도, 아동서비스(유아 포함), 노인지원서비스, 도서관, 교육지원, 위생, 지역교통, 도로, 환경보호 등

2.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는 도시

현지에서 살고 있는 가이드와 버우드구 시청장의 말에 의하면 호주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최선진국의 대열에 속한다며, 그 예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간병인 수당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연방정부는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가 많이들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

서 국가가 전액 보조하여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주치의)의사를 선택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비는 고등학교까지는 전액 무료이고 대학교도 일부부만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그것 또한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졸업 후 갚는다고 하니 학부모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으며, 노후생활은 65세 이상이 되면 1인당 노령연금을 700달러 내외로 지급하며, 자기소유가 아닌 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월 250달러씩의 주택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이곳 사람들의 돈 걱정, 자식 교육걱정이 없는 여유로움과 오후 5시만 되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개인시간을 갖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3.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시드니는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블루 마운틴 같은 관광명소가 여행객의 마음을 끄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바다와 육지, 자연의 선물과 인공의 흔적, 현대식 마천루와 빅토리아풍의 고색창연한 건물들, 즐비한 빌딩 숲과 짙푸른 녹지 등 언뜻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조화에 있는 듯 하다.

시드니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녹지면적이 넓고 전철, 페리 등 무공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해 400만명의 인구에다 그 인구만큼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대도시답지 않게 공기가 맑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주차권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단속하는 경찰이 없지만 모든 차량이 정확하게 요금을 치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느 음식점으로 가도 흡연과 술 취한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렇듯 시드니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자연의 선물 덕분인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자양분을 주고받게 도시를 가꿔온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

마지막 날 304m의 시드니 타워에서 내려다보니 푸른 잔디, 공원, 숲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은 빨간 지붕의 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우리가 평상시 동경하는 전원도시의 꿈속에 한순간 빠져 들었다.

Ⅱ. 뉴질랜드(남섬, 북섬)

1. 무공해 청정국가

우리일행은 호주 시드니 방문을 마치고 인구 406만명에 면적 우리나라 2.7배의 뉴질랜드로 향했다. 뉴질랜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이스트 쳐치와 오클랜드 공항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이다. 누구든 식품을 갖고 들어가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은 승객들에 대한 검역이 철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일행이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불쾌감과 지체되는 시간에 의해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지만 '무공해 청정국가'를 지향하는 뉴질랜드 당국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절차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다보니 장시간을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도로 양 옆으로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울 같은 호수와 드넓은 초원에서 양떼가 풀을 뜯고 그 사이로 듬성듬성 전원주택이 보인다.

눈 씻고 찾아봐도 공장 굴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2차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책 때문이다. 공산품은 비싸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의 원칙이라고 한다.

2. 로토루아 시청 방문

호주에서처럼 뉴질랜드에서도 이곳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기위해 로토루아 시청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는 ANTA WHARTON 의원이 우리일행을 반가이 맞아 주었는데 로토루아에는 12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은 의원들 중에 주민의 총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마을에 이장과 같은 일을 하는 65명의 주민이 뽑은 대표가 있어 이들로부터 주민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ANTA WHARTON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로토루아는 인구 6만에 년간 5,000만불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나 농산물 검역같은 큰 정책은 연방정부에서 하고 지방정부인 로토루아 시청에서는 도서관, 음악관 등 문화시설과, 교육, 도로관리 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ANTA WHARTON 의원은 미술관, 박물관등 공공성이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영화 시켜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호수가 많고 사육하는 가축이 많은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환경정책의 핵심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가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시 당국은 목장마다 빗물로 정화할 수 있을 만큼의 가축만 기르도록 수를 제한한다. 연중 내리는 빗물이 가축의 분비물을 분해하고, 그것이 다시 풀을 기르는 거름으로 쓰이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초원에는 양 3,900만 마리, 소 520만 마리, 사슴 600만 마리

가 자라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어느 곳에서도 축사를 볼 수없다는 점이다. 가축들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밤이 되면 풀밭에 쓰러져 잔다. 유일하게 축사에서 자라는 가축이 닭인데, 닭똥은 화훼농가에서 거름으로 쓴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보급률과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는 외딴집이 많아 상수도 보급률은 90%이나 물이 풍부해 나머지 10%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은 정규직 400명, 비정규직 200명 정도로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우리고창과 비슷하였다.

3. 여권이 강한 나라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여권이 강한 나라다.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도입한 나라답게 현재 총리를 비롯해 야당 당수, 대법원장, 총독이 모두 여성이다.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도 세계 최고다. 한 예로 여성이 임신하면 출산 때까지 병원비를 제공한다. 또한 부부가 3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전 재산의 80%이상이 여성의 소유라고 하니 대한민국 남성들도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청정 농산물의 나라

뉴질랜드하면 청정국가, 청정농산물이다.

우리일행은 청정농산물 유통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오클랜드에 있는 윌콕스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았다. 윌콕스 농산물 유통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영농조합법인처럼 일반주민이 투자 할 수 있었으며, 이익에 따른 배당금을 주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유통센터에 들어온 농산물은 철저한 분류와 세척, 포장을 하고 있었으며, 품질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도매와

소매로 나누어 경매를 실시하는데, 경매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매자의 인적사항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경매된 물품이 유통센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유통센터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농수산부에서 파견된 검역관의 승인을 받는 일이다. 농산물에 인체 유해성분(농약 성분 등)과 병충해 등이 없는지 철저한 검역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가 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개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모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검역관의 검역을 마친 농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Ⅲ. 느낀 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어진 여건이 서로 달라 무조건 호주, 뉴질랜드 정책이 좋고 또한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어진 지리적 여건을 잘 이용하여 청정국가라는 관광 상품화를 시켜놓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춰 지키고 보존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가히 본받을 만 하며, 날로 고령화, 핵가족화, 개인화 되는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가족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호주, 뉴질랜드의 복지정책을 통해 재인식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도 고령화, 핵가족화, 개인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정책을 유념해야 할 것임.

또한, 두 나라에서는 국민소득 20,000불이 넘는 선진국으로서 의회의 비

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컸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생각이 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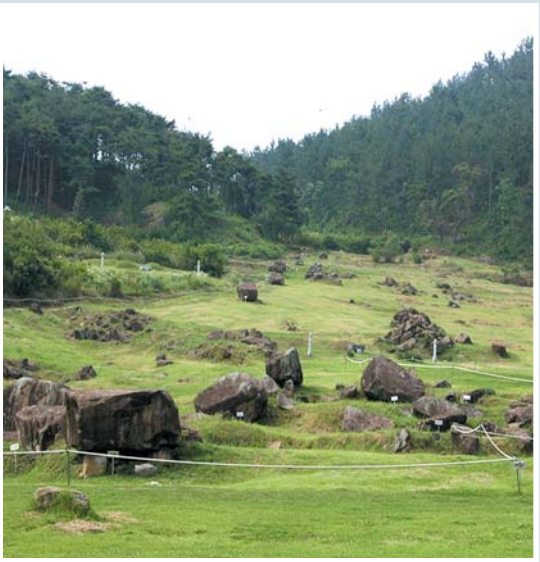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나라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고창에서도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듯이 전 세계인의 문화와 습관을 파악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 상품과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인위적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군과 고창읍성,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창군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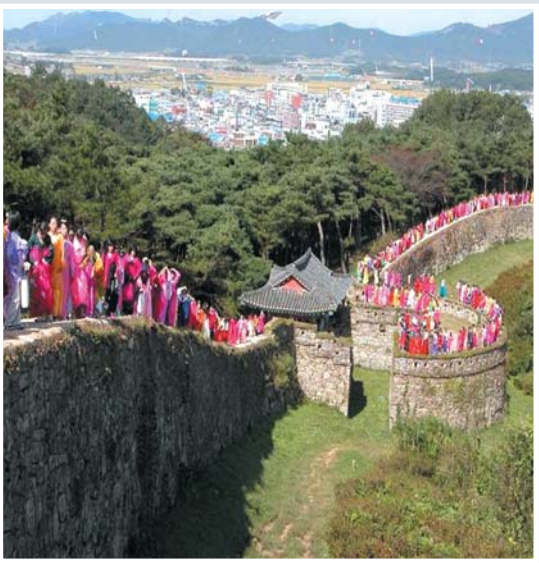




선 운 사



고창고인돌유적



고창읍성



무장읍성



문수사



해수욕장(동호,구시포)



학원농장(청보리밭)



하전/만돌어촌체험마을



고창모양성제



청보리밭축제



복분자축제



수박축제



고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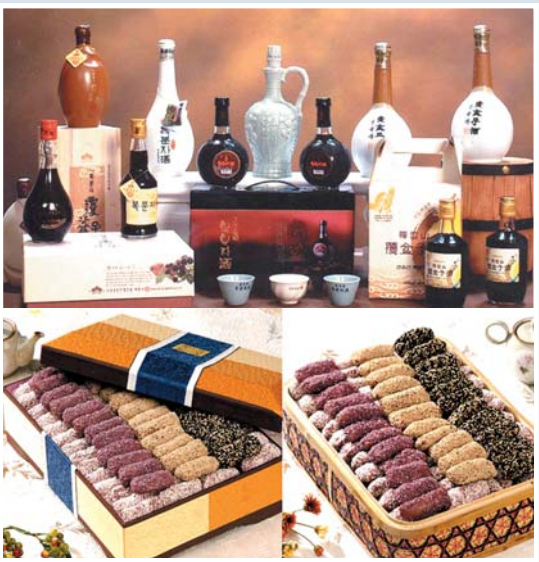
수산물출제



고인돌마라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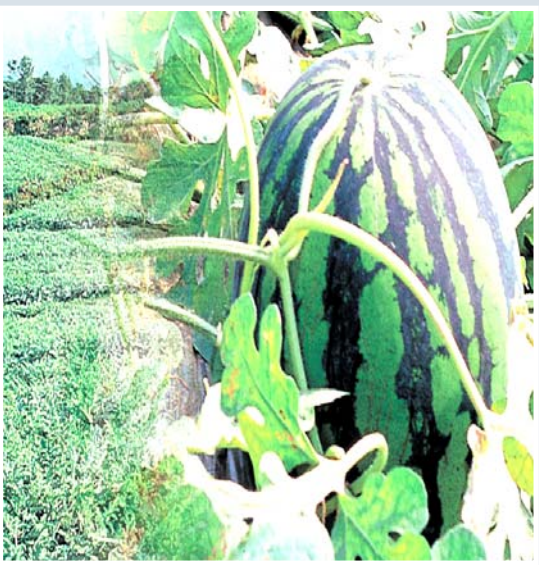
오거리당산제



복 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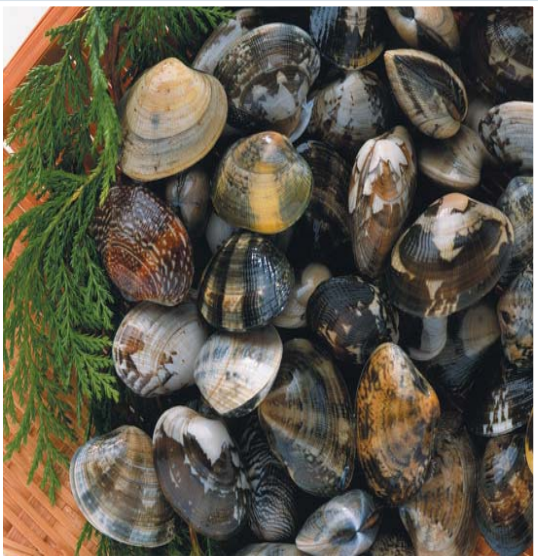
풍천장어



고창수박



해풍고추



바 지 락



작 설 차



황 토 쌀



땅 콩